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2-10

국 가 통 계 승 인 번 호

제 117108 호



#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양장애인권익옹호기관



# Contents

---

|                     |        |
|---------------------|--------|
| 주요 용어 설명 .....      | 27     |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 35     |
| 주요 현황 .....         | 43     |
| <br>제1장 서론 .....    | <br>53 |
| 1. 발간목적 .....       | 55     |
| 2. 법적근거 .....       | 56     |
| 3. 자료수집 및 분석 .....  | 56     |
| 4. 주요 분석항목 .....    | 56     |



## 제2장 신고접수 현황 ..... 59

|                       |    |
|-----------------------|----|
| 1. 신고접수.....          | 61 |
| 가. 전체 신고접수 .....      | 61 |
| 나. 월별 신고접수 .....      | 63 |
|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 64 |
| 라. 시군구별 신고접수 .....    | 66 |
| 2. 신고접수 방법.....       | 75 |
| 3. 신고접수 경로.....       | 75 |

## 제3장 일반사례 현황 ..... 77

|                           |    |
|---------------------------|----|
| 1. 일반사례 유형.....           | 79 |
|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 | 80 |
| 3. 차별사례 현황.....           | 81 |
| 가. 차별사례 유형 .....          | 81 |
|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        | 82 |

|                             |     |
|-----------------------------|-----|
| <b>제4장 학대의심사례 현황</b>        | 85  |
| <b>1. 신고자</b>               | 87  |
| 가. 신고자 유형                   | 87  |
| 나. 신고의무자 유형                 | 88  |
|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 91  |
| <b>2. 학대조사</b>              | 94  |
| 가. 전체 학대조사                  | 94  |
|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 95  |
| <b>3. 사례판정</b>              | 96  |
| 가. 전체 사례판정                  | 96  |
|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 97  |
| <b>4. 상담 및 지원</b>           | 99  |
| 가. 2021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 99  |
| 나.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 100 |
| 다.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 102 |
| <b>5. 사례종결</b>              | 103 |

|                      |     |
|----------------------|-----|
| <b>제5장 학대사례 분석</b>   | 105 |
| <b>1. 인구사회학적 요인</b>  | 107 |
| 가. 피해장애인             | 107 |
| 1) 성별                | 107 |
| 2) 연령                | 108 |
| 3) 장애유형 및 정도         | 109 |
| 4) 거주형태              | 112 |
|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12 |
| 6) 재학대사례             | 113 |
| 나. 학대행위자             | 114 |
| 1) 성별                | 114 |
| 2) 연령                | 115 |
| 3) 피해장애인과 관계         | 116 |
| 4) 피해장애인과 동거여부       | 118 |
| <b>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b> | 119 |
| 가. 학대 발생장소           | 119 |
| 나.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121 |

|                               |     |
|-------------------------------|-----|
| 3. 장애인학대 유형                   | 122 |
| 가. 장애인학대 유형                   | 122 |
|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22 |
| 2)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24 |
|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 125 |
|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25 |
|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26 |
|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27 |
|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128 |
|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 128 |
|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 130 |
|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 132 |
|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 135 |
| 4. 응급조치                       | 136 |
|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 137 |
|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 137 |
|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 138 |
| 1) 의료지원                       | 138 |
| 2) 심리지원                       | 138 |
| 3) 거주지원                       | 139 |

|                                 |            |
|---------------------------------|------------|
| 4) 사법지원 .....                   | 139        |
| 5) 복지지원 .....                   | 140        |
| 6) 교육지원 .....                   | 140        |
| 7) 중재지원 .....                   | 140        |
| 8) 진정지원 .....                   | 141        |
|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         | 142        |
| <b>6. 사례종결 .....</b>            | <b>144</b> |
| <b>7. 사후 모니터링 .....</b>         | <b>144</b> |
| <b>제6장 특성별 학대사례 분석 결과 .....</b> | <b>147</b> |
| <b>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b>      | <b>149</b> |
|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 150        |
|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        | 151        |
|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 153        |
| 1) 성별 및 연령 .....                | 153        |
| 2) 거주유형 .....                   | 154        |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 154        |
| 4) 재학대사례 .....                  | 154        |

|                                    |     |
|------------------------------------|-----|
|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 155 |
| 1) 성별 .....                        | 155 |
| 2) 피해 발달장애인과 관계 .....              | 156 |
|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             | 158 |
| 1) 학대 발생장소 .....                   | 158 |
|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 160 |
|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                | 161 |
|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 161 |
|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 162 |
|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     | 163 |
|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         | 163 |
|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         | 163 |
|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          | 164 |
|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 관계 ..... | 164 |
|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 166 |
| 1) 응급조치 .....                      | 166 |
|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             | 167 |

|                              |     |
|------------------------------|-----|
| 2. 장애아동 학대사례                 | 168 |
|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 168 |
|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 170 |
| 1) 성별 및 연령                   | 170 |
| 2) 장애유형 및 정도                 | 171 |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72 |
|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 173 |
| 1) 성별                        | 173 |
| 2) 연령                        | 174 |
| 3)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 175 |
|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 176 |
| 1) 학대 발생장소                   | 176 |
|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178 |
|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 178 |
| 1)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78 |
| 2)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80 |
|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 181 |
|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 181 |
|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 181 |
|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 182 |

|                          |            |
|--------------------------|------------|
|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  | 183        |
| 1) 응급조치 .....            | 183        |
|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      | 183        |
| <b>3. 노동력 착취사례 .....</b> | <b>185</b> |
| 가. 피해장애인 .....           | 186        |
| 1) 성별 및 연령 .....         | 186        |
| 2) 장애유형 .....            | 187        |
| 3) 거주유형 .....            | 188        |
|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 188        |
|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      | 189        |
| 1) 성별 .....              | 189        |
| 2) 연령 .....              | 190        |
| 3) 피해장애인과 관계 .....       | 191        |
|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     | 192        |
|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     | 192        |
|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     | 194        |
|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   | 195        |
| 1) 응급조치 .....            | 195        |
|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 | 196        |



|                                        |     |
|----------------------------------------|-----|
|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          | 197 |
|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 197 |
|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                   | 197 |
|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         | 198 |
| 나.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                  | 199 |
| 1) 성별 .....                            | 199 |
| 2) 연령 .....                            | 199 |
| 3) 장애유형 및 정도 .....                     | 200 |
|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           | 201 |
| 라.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       | 203 |
|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            | 204 |
| 바.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 204 |
|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 204 |
|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 206 |
| 사.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 208 |
|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 208 |
|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 209 |
|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 210 |
| 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         | 211 |
| 1) 응급조치 .....                          | 211 |
|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               | 212 |

|                                  |     |
|----------------------------------|-----|
| <b>제7장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b>          | 215 |
| 1. 연도별 신고접수                      | 217 |
|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19 |
|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221 |
| 4. 연도별 학대행위자                     | 223 |
| 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 225 |
| 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 226 |
| 가.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26 |
| 나.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227 |
| 7.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228 |
| 가.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 228 |
| 나.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29 |

|                                         |     |
|-----------------------------------------|-----|
| 8.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                  | 230 |
| 가.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현황 .....               | 230 |
| 나.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 230 |
| 9.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 .....              | 231 |
| 가.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발생현황 .....           | 231 |
| 나.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 232 |
| 10.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 .....                  | 233 |
| <b>부록</b> .....                         | 235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 237 |

## 표 목차

|          |                          |     |
|----------|--------------------------|-----|
| [표 1-1]  | 주요 분석항목                  | 56  |
| [표 2-1]  | 신고접수                     | 62  |
| [표 2-2]  | 월별 신고접수                  | 63  |
| [표 2-3]  |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 64  |
| [표 2-4]  | 시·군·구별 신고접수              | 66  |
| [표 2-5]  | 신고접수 방법                  | 75  |
| [표 2-6]  | 신고접수 경로                  | 75  |
| [표 3-1]  | 일반사례 유형                  | 79  |
| [표 3-2]  |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 80  |
| [표 3-3]  | 차별사례 유형                  | 81  |
| [표 3-4]  | 차별사례 지원결과                | 82  |
| [표 4-1]  | 신고자 유형                   | 87  |
| [표 4-2]  |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 90  |
| [표 4-3]  |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 92  |
| [표 4-4]  |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 93  |
| [표 4-5]  | 전체 학대조사                  | 94  |
| [표 4-6]  |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 95  |
| [표 4-7]  | 전체 사례판정 결과               | 96  |
| [표 4-8]  |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 97  |
| [표 4-9]  | 2021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 99  |
| [표 4-10] |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 100 |
| [표 4-11] |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 102 |

|          |                             |     |
|----------|-----------------------------|-----|
| [표 4-12] | 사례종결                        | 103 |
| [표 5-1]  | 피해장애인 성별                    | 107 |
| [표 5-2]  | 피해장애인 연령                    | 108 |
| [표 5-3]  | 장애인 등록 여부                   | 109 |
| [표 5-4]  |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 110 |
| [표 5-5]  |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 111 |
| [표 5-6]  |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 112 |
| [표 5-7]  |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12 |
| [표 5-8]  | 재학대사례 발생 건수                 | 113 |
| [표 5-9]  | 학대행위자 성별                    | 114 |
| [표 5-10] | 학대행위자 연령                    | 115 |
| [표 5-11]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117 |
| [표 5-12]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 118 |
| [표 5-13]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120 |
| [표 5-14]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121 |
| [표 5-15] |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23 |
| [표 5-16] |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24 |
| [표 5-17] |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25 |
| [표 5-18] |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26 |
| [표 5-19] |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27 |
| [표 5-20] |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128 |
| [표 5-21] |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129 |
| [표 5-22] |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 131 |

|          |                           |     |
|----------|---------------------------|-----|
| [표 5-23] |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 133 |
| [표 5-24] |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 135 |
| [표 5-25] | 응급조치                      | 136 |
| [표 5-26] |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 137 |
| [표 5-27] |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 138 |
| [표 5-28] |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 138 |
| [표 5-29] |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 139 |
| [표 5-30] |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 139 |
| [표 5-31] |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 140 |
| [표 5-32] | 피해장애인 교육지원 유형             | 140 |
| [표 5-33] |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 140 |
| [표 5-34] |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 141 |
| [표 5-35] |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 143 |
| [표 5-36] | 사례종결                      | 144 |
| [표 5-37] | 사후 모니터링                   | 144 |
| [표 6-1]  |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150 |
| [표 6-2]  |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 151 |
| [표 6-3]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 153 |
| [표 6-4]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 154 |
| [표 6-5]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54 |
| [표 6-6]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          | 154 |
| [표 6-7]  |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 155 |
| [표 6-8]  |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57 |
| [표 6-9]  |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 158 |

|          |                                  |     |
|----------|----------------------------------|-----|
| [표 6-10] |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        | 160 |
| [표 6-11]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 161 |
| [표 6-12]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 162 |
| [표 6-13] |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          | 163 |
| [표 6-14] |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          | 163 |
| [표 6-15]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           | 164 |
| [표 6-16] |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 165 |
| [표 6-17]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            | 166 |
| [표 6-18]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           | 167 |
| [표 6-19]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         | 167 |
| [표 6-20] |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         | 169 |
| [표 6-21] |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            | 170 |
| [표 6-22] |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               | 171 |
| [표 6-23] |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               | 172 |
| [표 6-24] |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 172 |
| [표 6-25] |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              | 173 |
| [표 6-26] |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              | 174 |
| [표 6-27] |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        | 175 |
| [표 6-28] |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               | 177 |
| [표 6-29] |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         | 178 |
| [표 6-30] |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 179 |
| [표 6-31] |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 180 |
| [표 6-32] |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           | 181 |
| [표 6-33] |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           | 181 |

|          |                                   |     |
|----------|-----------------------------------|-----|
| [표 6-34] |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   | 182 |
| [표 6-35] |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                | 183 |
| [표 6-36] |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               | 183 |
| [표 6-37] |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             | 184 |
| [표 6-38] | 노동력 착취 발생 .....                   | 185 |
| [표 6-39]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        | 186 |
| [표 6-40]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 187 |
| [표 6-41]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 188 |
| [표 6-42]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 188 |
| [표 6-43] |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               | 189 |
| [표 6-44] |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               | 190 |
| [표 6-45] |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       | 191 |
| [표 6-46] |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                 | 193 |
| [표 6-47] |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                 | 194 |
| [표 6-48]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           | 195 |
| [표 6-49]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          | 196 |
| [표 6-50]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        | 196 |
| [표 6-51]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 197 |
| [표 6-52] |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 198 |
| [표 6-53]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             | 199 |
| [표 6-54]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             | 199 |
| [표 6-55]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 200 |
| [표 6-56]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           | 200 |
| [표 6-57] |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유형 .....               | 202 |



|          |                                |     |
|----------|--------------------------------|-----|
| [표 6-58] |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203 |
| [표 6-59] |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 204 |
| [표 6-60] |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05 |
| [표 6-61] |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206 |
| [표 6-62] |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208 |
| [표 6-63]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209 |
| [표 6-64] |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210 |
| [표 6-65] |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 211 |
| [표 6-66]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 212 |
| [표 6-67]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 213 |
| [표 7-1]  | 연도별 신고접수                       | 218 |
| [표 7-2]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19 |
| [표 7-3]  |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221 |
| [표 7-4]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223 |
| [표 7-5]  |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 225 |
| [표 7-6]  |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26 |
| [표 7-7]  |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227 |
| [표 7-8]  |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 228 |
| [표 7-9]  |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29 |
| [표 7-10] |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현황               | 230 |
| [표 7-11] |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30 |
| [표 7-12] |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발생현황           | 231 |
| [표 7-13] |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32 |
| [표 7-14] | 연도별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 233 |

## 그림 목차

|           |                                |     |
|-----------|--------------------------------|-----|
| [그림 2-1]  | 신고접수 .....                     | 62  |
| [그림 2-2]  | 월별 신고접수 .....                  | 63  |
| [그림 2-3]  |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            | 65  |
| [그림 4-1]  | 신고자 유형 .....                   | 88  |
| [그림 4-2]  |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          | 91  |
| [그림 4-3]  |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         | 92  |
| [그림 4-4]  | 전체 사례판정 결과 .....               | 96  |
| [그림 4-5]  |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         | 98  |
| [그림 4-6]  |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    | 101 |
| [그림 4-7]  |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 | 103 |
| [그림 5-1]  | 피해장애인 성별 .....                 | 107 |
| [그림 5-2]  | 피해장애인 연령 .....                 | 108 |
| [그림 5-3]  | 장애인 등록 여부 .....                | 109 |
| [그림 5-4]  | 피해장애인 주장매유형 .....              | 110 |
| [그림 5-5]  |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               | 111 |
| [그림 5-6]  |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 112 |
| [그림 5-7]  | 학대행위자 성별 .....                 | 114 |
| [그림 5-8]  | 학대행위자 연령 .....                 | 115 |
| [그림 5-9]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   | 116 |
| [그림 5-10]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중분류) .....   | 118 |
| [그림 5-11]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 119 |
| [그림 5-12]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 122 |

|           |                           |     |
|-----------|---------------------------|-----|
| [그림 5-13] |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23 |
| [그림 5-14] |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24 |
| [그림 5-15] |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25 |
| [그림 5-16] |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26 |
| [그림 5-17] |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 130 |
| [그림 5-18] | 응급조치                      | 136 |
| [그림 5-19] |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 137 |
| [그림 5-20] |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 142 |
| [그림 6-1]  |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 153 |
| [그림 6-2]  |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 155 |
| [그림 6-3]  |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56 |
| [그림 6-4]  |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 159 |
| [그림 6-5]  |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 160 |
| [그림 6-6]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61 |
| [그림 6-7]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62 |
| [그림 6-8]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 166 |
| [그림 6-9]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 167 |
| [그림 6-10] |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 170 |
| [그림 6-11] |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 171 |
| [그림 6-12] |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 173 |
| [그림 6-13] |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 174 |
| [그림 6-14] |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 176 |
| [그림 6-15] |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 177 |

|           |                                |     |
|-----------|--------------------------------|-----|
| [그림 6-16] |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79 |
| [그림 6-17] |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80 |
| [그림 6-18] |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 184 |
| [그림 6-19] | 노동력 착취 발생                      | 185 |
| [그림 6-20]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 186 |
| [그림 6-21]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187 |
| [그림 6-22] |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 189 |
| [그림 6-23] |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 190 |
| [그림 6-24] |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의 관계        | 192 |
| [그림 6-25] |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 193 |
| [그림 6-26] |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 194 |
| [그림 6-27]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 196 |
| [그림 6-28] |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05 |
| [그림 6-29] |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207 |
| [그림 6-30] |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209 |
| [그림 6-31]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 212 |
| [그림 7-1]  | 연도별 신고접수                       | 218 |
| [그림 7-2]  |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222 |
| [그림 7-3]  |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26 |
| [그림 7-4]  |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227 |
| [그림 7-5]  |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 228 |
| [그림 7-6]  |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29 |
| [그림 7-7]  |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32 |





# 주요 용어 설명

---





## 주요 용어 설명

### 기본개념

-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15가지 유형으로 나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구분     |                | 장애유형                                   |
|--------|----------------|----------------------------------------|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        | 주요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정신장애                                   |

-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 장애정도: 2019년 7월부터 1~6급의 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구분     | 개념                                                                           |
|--------|------------------------------------------------------------------------------|
|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 정서적 학대 |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 성적 학대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 경제적 착취 |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
| 유기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 방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
- \*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등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 보호의무자: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 재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 ❖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말함.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

## 신고접수

-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포함)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 ❖ 일반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
- ❖ 인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신고 이외의 경로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 ❖ 연계: 타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 이관: 특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기관 간 협의 등으로 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사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이관받은 기관으로 넘어감
-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 비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들을 비신고의무자라고 함. 본인,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함
  - 가족 및 친인척: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
  - 유관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종사자로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신고의무자가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이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아동·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청소년·여성·노숙인·이주민 등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타인: 피해장애인의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 파악 안 됨: 신고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 학대조사: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과정.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응급조치가 동시에 실시됨
-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 사례판정: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절차.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판정

| 구분     | 개념                                                                                          |
|--------|---------------------------------------------------------------------------------------------|
| 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
| 비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
| 잠재위험사례 |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 ❖ 사례회의: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여 사례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논의하여 사례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 ❖ 재학대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종료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되는 사례
-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최초 장애인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
-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

## 피해자 등 지원

- ❖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사례로 판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학대 후유증 감소, 학대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함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말함
  - 심리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 마련에 관한 지원으로 응급보호, 임대주택과 같은 재가에서의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와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거주지원 등이 있음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장애인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 교육지원: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함
  - 중재지원: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지원을 말함
  - 진정지원: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거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는 지원을 말함
  - 상담지원: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교육·중재·진정 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정서적 지지, 진행 경과 안내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상담을 말함
  - 기타지원: 어떤 유형에 포함되기 어려운 지원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수의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칭함
- ❖ 사례종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끝내는 것으로 사례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지원을 실시하지 않음
-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말함
- ❖ 개입종료: 사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함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사례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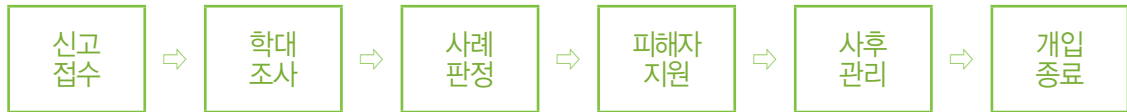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한다.

사례지원의 대상은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학대행위자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라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접수와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사례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에 최우선하여 진행하며, 그 과정은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나 욕구를 우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절차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신고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의 절차로 진행된다.



장애인학대사례 외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 피해자 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신고접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한다. 2021년부터 전화 외에도 문자(SMS),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 신고 등도 가능하다.

### ❖ 학대조사

신고접수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나 질문을 실시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조사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있는 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장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의 분리가 필요한 때에는 쉼터 등에서 보호할 수 있다.

###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 결정 회의인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사례회의에서 판정이 어렵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되면 피해 장애인에게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사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한다.

###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마치면 사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정·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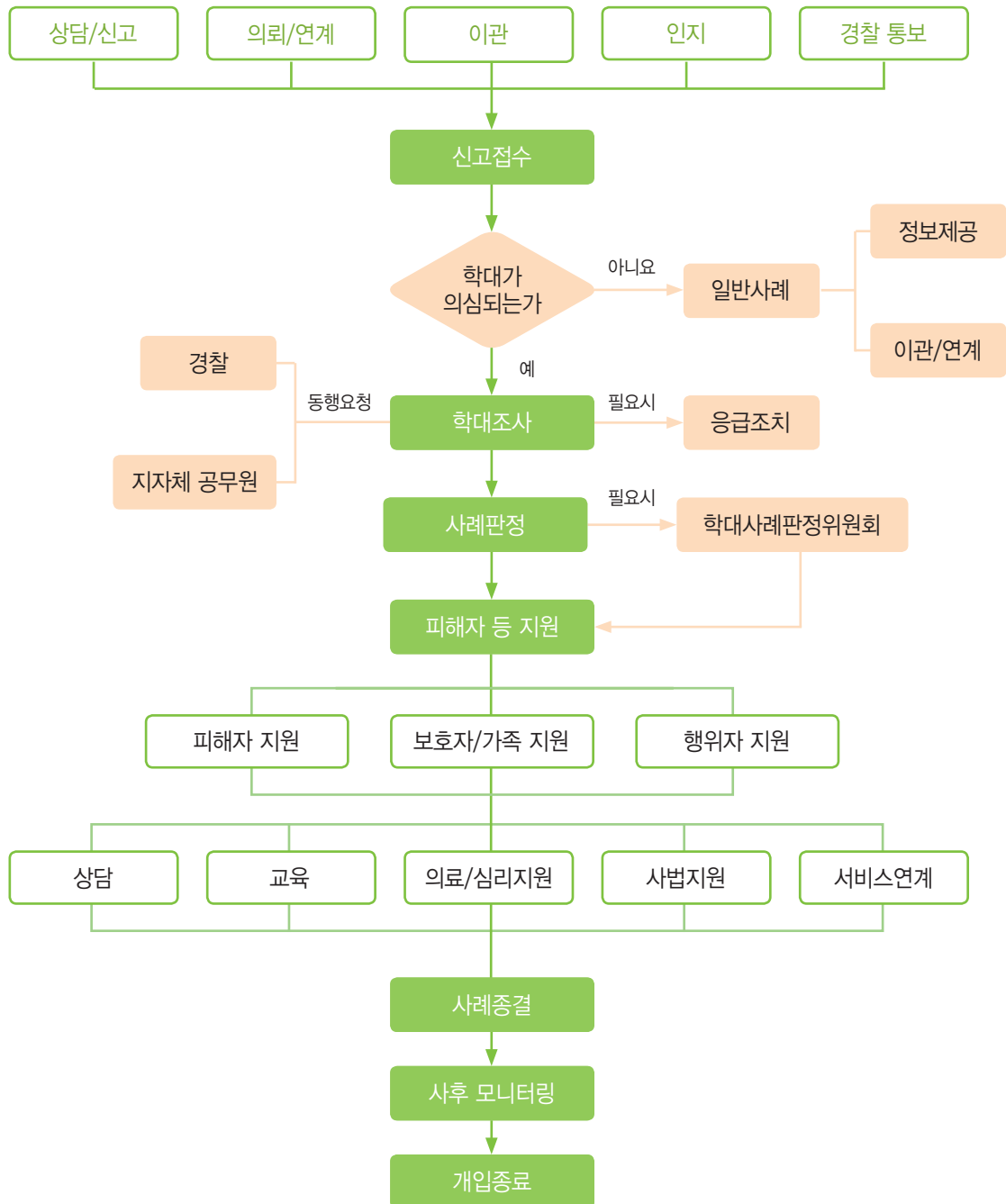
### ❖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을 마치기로 결정하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 및 안정적인 생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개입종료

사후 모니터링 기간 내 재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례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종료한다.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 주요 현황

---





## 주요 현황

- ※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4,95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 본 보고서는 신고접수 현황, 일반사례 현황, 학대의심사례 현황,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인학대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 노동력 착취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함
- ※ 일부 항목은 각 유형별 현황의 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전체 추이 파악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함

## 신고접수 현황

### 신고접수

- ❖ 2021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7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2,461건(49.6%), 일반사례는 2,496건(50.4%)임
- ❖ 지역별로 보면 서울 859건(17.3%), 경기 851건(17.2%), 부산 385건(7.8%), 충북 320건(6.5%) 순으로 접수됨

### 신고접수 경로

- ❖ 신고 4,055건(81.8%), 경찰통보 499건(10.1%), 인지 186건(3.8%), 연계 157건(3.2%), 이관 60건(1.2%) 순

### 일반사례 현황

- ❖ 일반사례 2,496건 중 정보문의 1,493건(59.8%), 기타 541건(21.7%), 불만·민원 293건(11.7%), 장애인차별 169건(6.8%)임
  - 차별사례 유형은 기타 38건(22.5%), 고용 34건(20.1%), 교육·시설물 접근 각각 17건(10.1%) 순

## 학대의심사례 현황

### 신고자

-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71건(31.3%),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690건(68.7%)임
  -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59건(46.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95건(25.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85건(11.0%)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비신고의무자 중 피해장애인 본인 325건(19.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316건(18.7%), 타인 256건(15.1%), 경찰공무원 248건(14.7%) 등의 순으로 많았음

### 학대조사

- ❖ 학대의심사례 2,461건에 대해 2,377건(96.6%)의 학대조사를 실시함
  - 학대조사 실시 횟수는 총 5,654회로 사례별 평균 2.4회 조사 함

### 사례판정

- ❖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사례 1,124건(45.7%), 비학대사례 933건(37.9%), 잠재위험사례 307건(12.5%), 조사 중인 사례 97건(3.9%)임

## 상담 및 지원

- ❖ 2021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한 학대의심사례 3,082건(2021년 이전 접수 사례 621건, 2021년 접수 사례 2,461건)에 대해 총 22,8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
  - 사례별 평균 7.4회 상담 및 지원 실시
  - 2021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총 70명으로 상담원 1명 평균 44.0건의 학대의심사례를 담당하였고 326.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

## 사례종결

- ❖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된 사례는 1,520건으로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61.8%임

## 학대사례 분석

### 인구사회학적 요인

#### 가. 피해장애인

- ❖ 성별은 남성 50.1%(563명), 여성 49.9%(561명)임
- ❖ 연령은 20대 25.5%(287명), 30대 16.4%(184명), 40대 15.7%(176명), 만 17세 이하 14.8%(166명) 순
- ❖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7%(761건), 지체장애 6.0%(68건), 뇌병변장애 5.5%(62건), 정신장애 4.4%(49건) 순
- ❖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2%임

#### 나. 학대행위자

- ❖ 성별은 남성 70.5%(792명), 여성 29.5%(332건)임
- ❖ 학대행위자는 타인 38.4%(432건), 가족 및 친인척 36.2%(407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3.0%(258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9%(21건), 파악되지 않는 경우 0.4%(5건), 본인 0.1%(1건) 순
  -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9%(235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216건), 부(父) 11.9%(134건), 배우자 6.9%(78건), 모(母) 6.2%(70건), 동거인 6.1%(69건) 순

#### 다.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 ❖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1.1%(462건),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기타 7.4%(83건) 순
- ❖ 학대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55.8%(627건)임

## 장애인학대 유형

### 가.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 신체적 학대 27.4%(308건), 경제적 착취 24.9%(280건), 중복 학대 20.8%(234건), 정서적 학대 11.0%(124건), 성적 학대 10.1%(113건), 방임 5.8%(65건) 순

### 나.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 신체적 학대 34.4%(482건), 경제적 착취 26.1%(366건), 정서적 학대 20.6%(289건), 성적 학대 10.6%(149건), 방임 8.1%(114건) 순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 전체 학대사례 중 응급조치는 125건(11.1%) 실시, 이중 심터를 이용한 경우는 89건(71.2%)임
  - 응급조치 미실시 사유는 응급조치 대상 아님 935건(93.6%), 당사자 거부 43건(4.3%), 조치장소 부재 16건(1.6%), 가족 및 보호자의 거부 5건(0.5%) 순
- ❖ 전체 학대사례 1,124건에 대해 피해장애인 지원은 총 12,411회 실시
  - 상담지원 7,241회(58.3%), 사법지원 2,135회(17.2%), 복지지원 992회(8.0%), 거주지원 823회(6.6%) 순
- ❖ 2021년 진행된 학대사례 총 1,618건(2021년 학대사례 1,124건, 2021년 이전 학대사례 494건)에 대해 18,161회의 상담 및 지원 실시
  - 사례별 평균 11.2회 상담 및 지원 실시

##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74.1%(833건)

- 학대피해자는 남성 52.2%(435명), 여성 47.8%(398명)임
- 학대행위자는 남성 70.0%(583명), 여성 30.0%(250명)임
-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3.3%(194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9.7%(164건), 부(父) 13.6%(113건), 모(母) 6.8%(57건), 동거인 5.8%(48건)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9.9%(332건), 장애인거주시설 15.5%(12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4%(78건), 기타 장소 7.8%(65건) 순

####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28.7%(239건), 경제적 착취 24.5%(204건), 중복 학대 20.9%(174건), 정서적 학대 11.3%(94건), 성적 학대 9.2%(77건), 방임 5.4%(45건)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

####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4.8%(166건)임

- 피해 장애아동 성별은 63.9%(106명), 여성 36.1%(60명)임
-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5.7%(109건), 자폐성장애 16.3%(27건), 미등록 7.8%(13건), 뇌병변 장애 5.4%(9건) 순
- 학대행위자는 부(父)·모(母) 43.4%(72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3.9%(23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19건)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5.2%(75건), 교육기관·기타장소가 각각 11.4%(19건), 장애인거주시설 10.8%(18건) 순

#### ❖ 장애아동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44.0%(73건), 중복 학대 22.3%(37건), 정서적 학대 13.9%(23건), 성적 학대 12.0%(20건), 방임 7.8%(13건) 순

### 노동력 착취사례

- ❖ 경제적 착취사례 366건 중 노동력 착취는 114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10.1%임
  - 피해장애인 성별은 남성 69.3%(79명), 여성 30.7%(35명)임
  -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77.2%(88건), 미등록 8.8%(10건), 정신장애 5.3%(6건) 순
  -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9.1%(56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7.5%(20건), 고용주 15.8%(18건) 순
  - 학대 발생장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3.0%(49건), 직장(일하는 곳) 15.8%(18건), 피해장애인 거주지 14.9%(17건) 순
- ❖ 학대가 5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는 46.5%임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 ❖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27.2%(306건)
  - 학대 발생장소는 집단이용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46.7%(143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3%(62건), 미신고 시설 9.2%(28건) 순
  - 학대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75.8%(232건), 자폐성장애 5.6%(17건), 뇌병변장애 3.9%(12건) 순
  -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1%(83건),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5.5%(78건) 순
  -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9.0%(211건), 동거인 9.2%(28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8.5%(26건) 순
- ❖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 중북 학대 24.2%(74건), 경제적 착취 23.5%(72건), 신체적 학대 21.9%(67건), 정서적 학대 13.7%(42건), 방임 9.2%(82건), 성적 학대 7.5%(23건) 순







# 1 서론

---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 및 분석
4. 주요 분석항목



## 제1장

## 서론

## 1. 발간목적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다.

2017년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소가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 관리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직접적 대응 업무를 하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장애인학대 통계 생산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로 장애인학대 신고와 조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매년 국가통계인 장애인학대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국민들에게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 추진과 정부의 장애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 법적근거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3호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료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의 모든 지원과정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되고 있다. 장애인학대 현황 통계 분석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정보를 취합하였다. 분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통계는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 항목의 합계는 100.0%가 아닐 수 있다.

## 4. 주요 분석항목

본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분석항목

| 분류        | 분석항목                                                                                                                                                                                                                                                                                                                                                                                                                                                                                                      |
|-----------|-----------------------------------------------------------------------------------------------------------------------------------------------------------------------------------------------------------------------------------------------------------------------------------------------------------------------------------------------------------------------------------------------------------------------------------------------------------------------------------------------------------|
| 신고접수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월별, 지역·기관별, 시·군·구별 신고접수</li> </ul> </li> <li>• 신고접수 방법</li> <li>• 신고접수 경로</li> </ul>                                                                                                                                                                                                                                                                                                             |
| 일반사례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례 유형</li> <li>• 지역·기관별 일반사례 유형</li> <li>• 차별사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지원결과</li> </ul> </li> </ul>                                                                                                                                                                                                                                                                                                                      |
| 학대의심사례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유형</li> </ul> </li> <li>• 학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역·기관별 학대조사</li> </ul> </li> <li>•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역·기관별 사례판정</li> </ul> </li> <li>•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li> </ul> </li> <li>• 사례종결</li> </ul> |

|                         |                                                                                                                                                                                                                                                                                                                                                                                                                                                                                                                                                                                                                                                                                                                                                                                                                                                                            |
|-------------------------|----------------------------------------------------------------------------------------------------------------------------------------------------------------------------------------------------------------------------------------------------------------------------------------------------------------------------------------------------------------------------------------------------------------------------------------------------------------------------------------------------------------------------------------------------------------------------------------------------------------------------------------------------------------------------------------------------------------------------------------------------------------------------------------------------------------------------------------------------------------------------|
| 학대사례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사회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장애인(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거주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재학대)</li> <li>- 학대행위자(성별, 연령, 피해장애인과 관계, 동거여부)</li> </ul> </li> <li>•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장소,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li> </ul> </li> <li>• 장애인학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li> </ul> </li> <li>• 응급조치</li> <li>•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현황,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li> </ul> </li> <li>• 사례종결</li> <li>• 사후 모니터링</li> </ul>                                                                                                                                                                                         |
| 특성별<br>장애인학대사례<br>분석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li> </ul> </li> <li>• 장애아동 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장애아동 학대유형,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li> </ul> </li> <li>• 노동력 착취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자,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li> </ul> </li> <li>•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li> </ul> </li> </ul> |
| 연도별<br>장애인학대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고접수</li> <li>• 연도별 신고자 유형</li> <li>•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li> <li>• 연도별 학대행위자</li> <li>•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li> <li>•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li> <li>•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li> <li>•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li> <li>•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li> <li>•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li> </ul>                                                                                                                                                                                                                                                                                                                                                                                                                                                                                                                                                                                   |



# 2

## 신고접수 현황

---

1. 신고접수
2. 신고접수 방법
3. 신고접수 경로





## 제2장

## 신고접수 현황

## 1. 신고접수

## 가. 전체 신고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이하 학대의심사례)로 접수하여 사례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판정 등을 실시한다.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사례, 복지상담이나 정보문의, 일반 법률상담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사회나 제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 등의 사례는 ‘일반사례’로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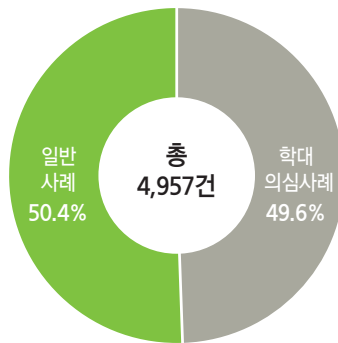
2021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4,957건으로 전년도 4,208건보다 17.8% 증가하였다.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2,461건(49.6%)으로 전년도 2,069건보다 18.9% 증가하였다. 일반사례는 2,496건(50.4%) 접수되었다.

[표 2-1] 신고접수

(단위: 건, %)

| 학대의심사례 |      | 일반사례  |      | 계     |       |
|--------|------|-------|------|-------|-------|
| 2,461  | 49.6 | 2,496 | 50.4 | 4,957 | 100.0 |

[그림 2-1] 신고접수



## 나. 월별 신고접수

2021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월 평균 41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는 월 평균 205건, 일반사례는 월 평균 208건 접수되었다. 월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6월이 488건(9.8%)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다음으로 4월 484건(9.8%), 7월 454건(9.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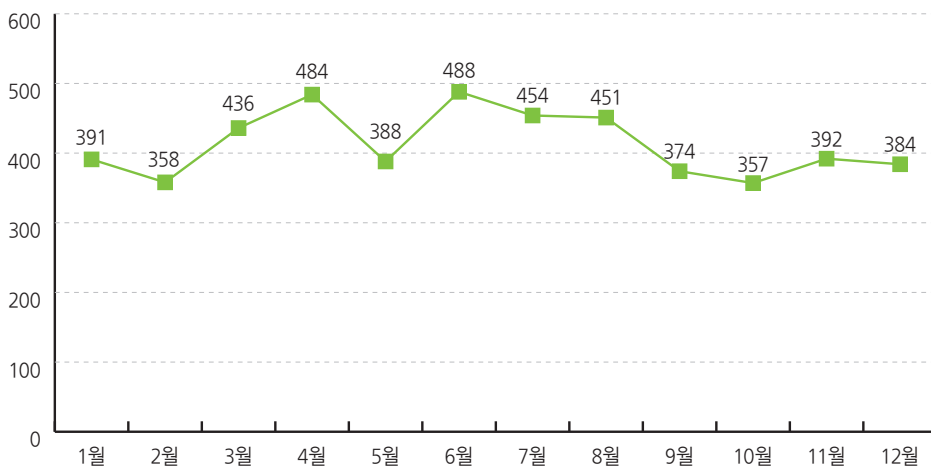
[표 2-2]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학대 | 180 | 176 | 195 | 248 | 198 | 263 | 222 | 227 | 174 | 205 | 200 | 173 | 2,461 |
| 일반 | 211 | 182 | 241 | 236 | 190 | 225 | 232 | 224 | 200 | 152 | 192 | 211 | 2,496 |
| 계  | 391 | 358 | 436 | 484 | 388 | 488 | 454 | 451 | 374 | 357 | 392 | 384 | 4,957 |

[그림 2-2]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기관당 평균 275.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서울이 859건(17.3%)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기 851건(17.2%), 부산 385건(7.8%), 충북 320건(6.5%)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는 기관당 평균 136.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전년도(평균 114.9건)와 비교했을 때 평균 21.8건의 신고가 더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경기도가 463건(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206건(8.4%), 서울 205건(8.3%), 부산 169건(6.9%), 인천 157건(6.4%)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62건(2.5%)으로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적었고 광주 80건(3.3%), 세종 87건(3.5%)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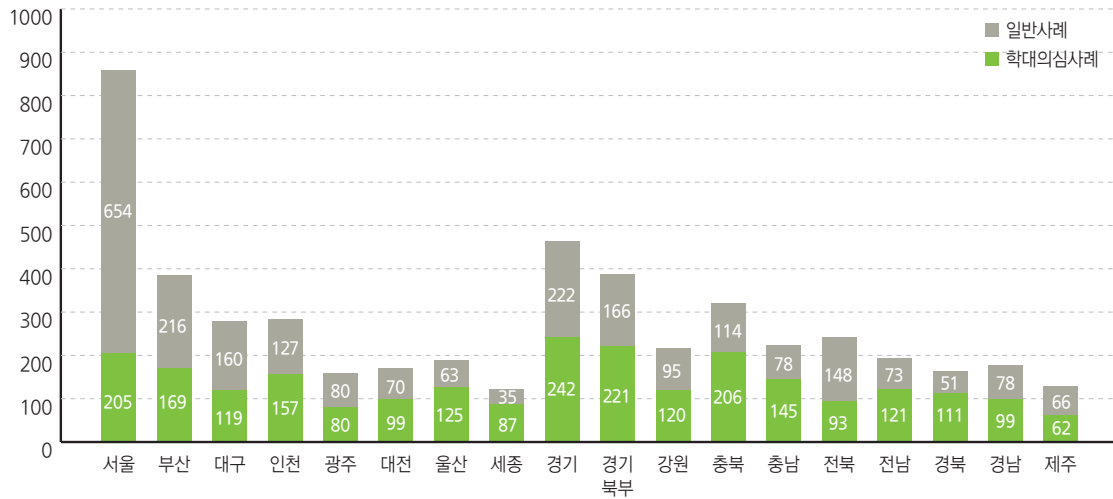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단위: 건, %)

| 구분 |      | 학대의심사례 |       | 일반사례  |       | 계     |       |
|----|------|--------|-------|-------|-------|-------|-------|
| 서울 |      | 205    | 8.3   | 654   | 26.2  | 859   | 17.3  |
| 부산 |      | 169    | 6.9   | 216   | 8.7   | 385   | 7.8   |
| 대구 |      | 119    | 4.8   | 160   | 6.4   | 279   | 5.6   |
| 인천 |      | 157    | 6.4   | 127   | 5.1   | 284   | 5.7   |
| 광주 |      | 80     | 3.3   | 80    | 3.2   | 160   | 3.2   |
| 대전 |      | 99     | 4.0   | 70    | 2.8   | 169   | 3.4   |
| 울산 |      | 125    | 5.1   | 63    | 2.5   | 188   | 3.8   |
| 세종 |      | 87     | 3.5   | 35    | 1.4   | 122   | 2.5   |
| 경기 | 경기   | 242    | 9.8   | 222   | 8.9   | 464   | 9.4   |
|    | 경기북부 | 221    | 9.0   | 166   | 6.7   | 387   | 7.8   |
|    | 소계   | 463    | 18.8  | 388   | 15.5  | 851   | 17.2  |
| 강원 |      | 120    | 4.9   | 95    | 3.8   | 215   | 4.3   |
| 충북 |      | 206    | 8.4   | 114   | 4.6   | 320   | 6.5   |
| 충남 |      | 145    | 5.9   | 78    | 3.1   | 223   | 4.5   |
| 전북 |      | 93     | 3.8   | 148   | 5.9   | 241   | 4.9   |
| 전남 |      | 121    | 4.9   | 73    | 2.9   | 194   | 3.9   |
| 경북 |      | 111    | 4.5   | 51    | 2.0   | 162   | 3.3   |
| 경남 |      | 99     | 4.0   | 78    | 3.1   | 177   | 3.6   |
| 제주 |      | 62     | 2.5   | 66    | 2.6   | 128   | 2.6   |
| 계  |      | 2,461  | 100.0 | 2,496 | 100.0 | 4,957 | 100.0 |

[그림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단위: 건)



## 라. 시·군·구별 신고접수

피해장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499건(20.3%)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227건(9.2%), 서울특별시 172건(7.0%), 부산광역시 170건(6.9%) 등의 순이다. 시·군·구 중에서는 단일 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충청북도 충주시 106건(4.3%), 울산광역시 남구 49건(2.0%), 경기도 화성시 47건(1.9%), 경상북도 경산시 46건(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4건(1.8%), 경기도 연천군 42건(1.7%) 등의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표 2-4] 시·군·구별 신고접수

(단위: 건,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서울 | 종로구   | 3      | 1.7     | 0.1   |
|    | 중구    | 3      | 1.7     | 0.1   |
|    | 용산구   | 6      | 3.5     | 0.2   |
|    | 성동구   | 2      | 1.2     | 0.1   |
|    | 광진구   | —      | —       | —     |
|    | 동대문구  | 1      | 0.6     | 0.0   |
|    | 종랑구   | 5      | 2.9     | 0.2   |
|    | 성북구   | 2      | 1.2     | 0.1   |
|    | 강북구   | 5      | 2.9     | 0.2   |
|    | 도봉구   | 2      | 1.2     | 0.1   |
|    | 노원구   | 14     | 8.1     | 0.6   |
|    | 은평구   | 18     | 10.5    | 0.7   |
|    | 서대문구  | 3      | 1.7     | 0.1   |
|    | 마포구   | 10     | 5.8     | 0.4   |
|    | 양천구   | 9      | 5.2     | 0.4   |
|    | 강서구   | 18     | 10.5    | 0.7   |
|    | 구로구   | 13     | 7.6     | 0.5   |
|    | 금천구   | 6      | 3.5     | 0.2   |
|    | 영등포구  | 6      | 3.5     | 0.2   |
|    | 동작구   | 3      | 1.7     | 0.1   |
|    | 관악구   | 15     | 8.7     | 0.6   |
|    | 서초구   | 5      | 2.9     | 0.2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서울 | 강남구   | 4      | 2.3     | 0.2   |
|    | 송파구   | 14     | 8.1     | 0.6   |
|    | 강동구   | 5      | 2.9     | 0.2   |
|    | 소계    | 172    | 100.0   | 7.0   |
| 부산 | 중구    | —      | —       | —     |
|    | 서구    | 10     | 5.9     | 0.4   |
|    | 동구    | 4      | 2.4     | 0.2   |
|    | 영도구   | 15     | 8.8     | 0.6   |
|    | 부산진구  | 19     | 11.2    | 0.8   |
|    | 동래구   | 3      | 1.8     | 0.1   |
|    | 남구    | 9      | 5.3     | 0.4   |
|    | 북구    | 13     | 7.6     | 0.5   |
|    | 해운대구  | 27     | 15.9    | 1.1   |
|    | 사하구   | 17     | 10.0    | 0.7   |
|    | 금정구   | 8      | 4.7     | 0.3   |
|    | 강서구   | 5      | 2.9     | 0.2   |
|    | 연제구   | 6      | 3.5     | 0.2   |
|    | 수영구   | 9      | 5.3     | 0.4   |
|    | 사상구   | 23     | 13.5    | 0.9   |
|    | 기장군   | 2      | 1.2     | 0.1   |
|    | 소계    | 170    | 100.0   | 6.9   |
| 대구 | 중구    | —      | —       | —     |
|    | 동구    | 12     | 12.5    | 0.5   |
|    | 서구    | 8      | 8.3     | 0.3   |
|    | 남구    | 14     | 14.6    | 0.6   |
|    | 북구    | 23     | 24.0    | 0.9   |
|    | 수성구   | 7      | 7.3     | 0.3   |
|    | 달서구   | 20     | 20.8    | 0.8   |
|    | 달성군   | 12     | 12.5    | 0.5   |
|    | 소계    | 96     | 100.0   | 3.9   |
| 인천 | 중구    | 6      | 3.8     | 0.2   |
|    | 동구    | 4      | 2.5     | 0.2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인천 | 연수구     | 26     | 16.5    | 1.1   |
|    | 남동구     | 30     | 19.0    | 1.2   |
|    | 부평구     | 34     | 21.5    | 1.4   |
|    | 계양구     | 11     | 7.0     | 0.4   |
|    | 서구      | 25     | 15.8    | 1.0   |
|    | 미추홀구    | 12     | 7.6     | 0.5   |
|    | 강화군     | 7      | 4.4     | 0.3   |
|    | 옹진군     | 3      | 1.9     | 0.1   |
|    | 소계      | 158    | 100.0   | 6.4   |
| 광주 | 동구      | 3      | 4.2     | 0.1   |
|    | 서구      | 23     | 31.9    | 0.9   |
|    | 남구      | 5      | 6.9     | 0.2   |
|    | 북구      | 14     | 19.4    | 0.6   |
|    | 광산구     | 27     | 37.5    | 1.1   |
|    | 소계      | 72     | 100.0   | 2.9   |
| 대전 | 동구      | 26     | 27.1    | 1.1   |
|    | 중구      | 23     | 24.0    | 0.9   |
|    | 서구      | 15     | 15.6    | 0.6   |
|    | 유성구     | 10     | 10.4    | 0.4   |
|    | 대덕구     | 22     | 22.9    | 0.9   |
|    | 소계      | 96     | 100.0   | 3.9   |
| 울산 | 중구      | 24     | 18.9    | 1.0   |
|    | 남구      | 49     | 38.6    | 2.0   |
|    | 동구      | 17     | 13.4    | 0.7   |
|    | 북구      | 13     | 10.2    | 0.5   |
|    | 울주군     | 24     | 18.9    | 1.0   |
|    | 소계      | 127    | 100.0   | 5.2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66     | 100.0   | 2.7   |
|    | 소계      | 66     | 100.0   | 2.7   |
| 경기 | 수원시 장안구 | 8      | 1.6     | 0.3   |
|    | 수원시 권선구 | 12     | 2.4     | 0.5   |
|    | 수원시 팔달구 | 10     | 2.0     | 0.4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경기 | 수원시 영통구  | 2      | 0.4     | 0.1   |
|    | 성남시 수정구  | 8      | 1.6     | 0.3   |
|    | 성남시 중원구  | 2      | 0.4     | 0.1   |
|    | 성남시 분당구  | —      | —       | —     |
|    | 의정부시     | 31     | 6.2     | 1.3   |
|    | 안양시 만안구  | 7      | 1.4     | 0.3   |
|    | 안양시 동안구  | 2      | 0.4     | 0.1   |
|    | 부천시      | 14     | 2.8     | 0.6   |
|    | 광명시      | 3      | 0.6     | 0.1   |
|    | 평택시      | 7      | 1.4     | 0.3   |
|    | 동두천시     | 23     | 4.6     | 0.9   |
|    | 안산시 상록구  | 4      | 0.8     | 0.2   |
|    | 안산시 단원구  | 11     | 2.2     | 0.4   |
|    | 고양시 덕양구  | 11     | 2.2     | 0.4   |
|    | 고양시 일산동구 | 8      | 1.6     | 0.3   |
|    | 고양시 일산서구 | 10     | 2.0     | 0.4   |
|    | 과천시      | —      | —       | —     |
|    | 구리시      | 7      | 1.4     | 0.3   |
|    | 남양주시     | 19     | 3.8     | 0.8   |
|    | 오산시      | 9      | 1.8     | 0.4   |
|    | 시흥시      | 21     | 4.2     | 0.9   |
|    | 군포시      | 3      | 0.6     | 0.1   |
|    | 의왕시      | 3      | 0.6     | 0.1   |
|    | 하남시      | 9      | 1.8     | 0.4   |
|    | 용인시 처인구  | 6      | 1.2     | 0.2   |
|    | 용인시 기흥구  | 2      | 0.4     | 0.1   |
|    | 용인시 수지구  | 14     | 2.8     | 0.6   |
|    | 파주시      | 26     | 5.2     | 1.1   |
|    | 이천시      | 13     | 2.6     | 0.5   |
|    | 안성시      | 7      | 1.4     | 0.3   |
|    | 김포시      | 9      | 1.8     | 0.4   |
|    | 화성시      | 47     | 9.4     | 1.9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경기 | 광주시     | 8      | 1.6     | 0.3   |
|    | 양주시     | 21     | 4.2     | 0.9   |
|    | 포천시     | 35     | 7.0     | 1.4   |
|    | 여주시     | 10     | 2.0     | 0.4   |
|    | 연천군     | 42     | 8.4     | 1.7   |
|    | 가평군     | 10     | 2.0     | 0.4   |
|    | 양평군     | 5      | 1.0     | 0.2   |
|    | 소계      | 499    | 100.0   | 20.3  |
| 강원 | 춘천시     | 27     | 22.5    | 1.1   |
|    | 원주시     | 12     | 10.0    | 0.5   |
|    | 강릉시     | 10     | 8.3     | 0.4   |
|    | 동해시     | 13     | 10.8    | 0.5   |
|    | 태백시     | 6      | 5.0     | 0.2   |
|    | 속초시     | 3      | 2.5     | 0.1   |
|    | 삼척시     | —      | —       | —     |
|    | 홍천군     | 7      | 5.8     | 0.3   |
|    | 횡성군     | 12     | 10.0    | 0.5   |
|    | 영월군     | 1      | 0.8     | 0.0   |
|    | 평창군     | 1      | 0.8     | 0.0   |
|    | 정선군     | 2      | 1.7     | 0.1   |
|    | 철원군     | 6      | 5.0     | 0.2   |
|    | 화천군     | 16     | 13.3    | 0.7   |
|    | 양구군     | —      | —       | —     |
|    | 인제군     | 1      | 0.8     | 0.0   |
|    | 고성군     | 3      | 2.5     | 0.1   |
|    | 양양군     | —      | —       | —     |
|    | 소계      | 120    | 100.0   | 4.9   |
| 충북 | 충주시     | 106    | 46.7    | 4.3   |
|    | 제천시     | 10     | 4.4     | 0.4   |
|    | 청주시 상당구 | 15     | 6.6     | 0.6   |
|    | 청주시 서원구 | 17     | 7.5     | 0.7   |
|    | 청주시 흥덕구 | 24     | 10.6    | 1.0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충북 | 청주시 청원구 | 13     | 5.7     | 0.5   |
|    | 보은군     | 5      | 2.2     | 0.2   |
|    | 옥천군     | 9      | 4.0     | 0.4   |
|    | 영동군     | 2      | 0.9     | 0.1   |
|    | 진천군     | —      | —       | —     |
|    | 괴산군     | 3      | 1.3     | 0.1   |
|    | 음성군     | 19     | 8.4     | 0.8   |
|    | 단양군     | 1      | 0.4     | 0.0   |
|    | 증평군     | 3      | 1.3     | 0.1   |
|    | 소계      | 227    | 100.0   | 9.2   |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17     | 11.9    | 0.7   |
|    | 천안시 서북구 | 28     | 19.6    | 1.1   |
|    | 공주시     | 7      | 4.9     | 0.3   |
|    | 보령시     | 4      | 2.8     | 0.2   |
|    | 아산시     | 17     | 11.9    | 0.7   |
|    | 서산시     | 12     | 8.4     | 0.5   |
|    | 논산시     | 12     | 8.4     | 0.5   |
|    | 계룡시     | 1      | 0.7     | 0.0   |
|    | 당진시     | 10     | 7.0     | 0.4   |
|    | 금산군     | 4      | 2.8     | 0.2   |
|    | 부여군     | 5      | 3.5     | 0.2   |
|    | 서천군     | —      | —       | —     |
|    | 청양군     | 1      | 0.7     | 0.0   |
|    | 홍성군     | 6      | 4.2     | 0.2   |
|    | 예산군     | 17     | 11.9    | 0.7   |
|    | 태안군     | 2      | 1.4     | 0.1   |
|    | 소계      | 143    | 100.0   | 5.8   |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 35     | 35.7    | 1.4   |
|    | 전주시 덕진구 | 13     | 13.3    | 0.5   |
|    | 군산시     | 17     | 17.3    | 0.7   |
|    | 익산시     | 5      | 5.1     | 0.2   |
|    | 정읍시     | 5      | 5.1     | 0.2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전북 | 남원시   | 3      | 3.1     | 0.1   |
|    | 김제시   | 2      | 2.0     | 0.1   |
|    | 완주군   | 8      | 8.2     | 0.3   |
|    | 진안군   | 2      | 2.0     | 0.1   |
|    | 무주군   | —      | —       | —     |
|    | 장수군   | —      | —       | —     |
|    | 임실군   | 1      | 1.0     | 0.0   |
|    | 순창군   | 1      | 1.0     | 0.0   |
|    | 고창군   | 4      | 4.1     | 0.2   |
|    | 부안군   | 2      | 2.0     | 0.1   |
|    | 소계    | 98     | 100.0   | 4.0   |
| 전남 | 목포시   | 38     | 30.9    | 1.5   |
|    | 여수시   | 8      | 6.5     | 0.3   |
|    | 순천시   | 1      | 0.8     | 0.0   |
|    | 나주시   | 5      | 4.1     | 0.2   |
|    | 광양시   | —      | —       | —     |
|    | 담양군   | 3      | 2.4     | 0.1   |
|    | 곡성군   | 4      | 3.3     | 0.2   |
|    | 구례군   | —      | —       | —     |
|    | 고흥군   | 1      | 0.8     | 0.0   |
|    | 보성군   | 3      | 2.4     | 0.1   |
|    | 화순군   | 15     | 12.2    | 0.6   |
|    | 장흥군   | 1      | 0.8     | 0.0   |
|    | 강진군   | —      | —       | —     |
|    | 해남군   | 8      | 6.5     | 0.3   |
|    | 영암군   | —      | —       | —     |
|    | 무안군   | 4      | 3.3     | 0.2   |
|    | 함평군   | 2      | 1.6     | 0.1   |
|    | 영광군   | —      | —       | —     |
|    | 장성군   | 1      | 0.8     | 0.0   |
|    | 완도군   | 1      | 0.8     | 0.0   |
|    | 진도군   | —      | —       | —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전남 | 신안군    | 28     | 22.8    | 1.1   |
|    | 소계     | 123    | 100.0   | 5.0   |
| 경북 | 포항시 남구 | 12     | 8.8     | 0.5   |
|    | 포항시 북구 | 9      | 6.6     | 0.4   |
|    | 경주시    | 13     | 9.6     | 0.5   |
|    | 김천시    | 4      | 2.9     | 0.2   |
|    | 안동시    | 3      | 2.2     | 0.1   |
|    | 구미시    | 8      | 5.9     | 0.3   |
|    | 영주시    | 4      | 2.9     | 0.2   |
|    | 영천시    | 1      | 0.7     | 0.0   |
|    | 상주시    | 2      | 1.5     | 0.1   |
|    | 문경시    | 1      | 0.7     | 0.0   |
|    | 경산시    | 46     | 33.8    | 1.9   |
|    | 군위군    | 2      | 1.5     | 0.1   |
|    | 의성군    | 4      | 2.9     | 0.2   |
|    | 청송군    | 1      | 0.7     | 0.0   |
|    | 영양군    | —      | —       | —     |
|    | 영덕군    | 4      | 2.9     | 0.2   |
|    | 청도군    | 3      | 2.2     | 0.1   |
|    | 고령군    | 2      | 1.5     | 0.1   |
|    | 성주군    | 2      | 1.5     | 0.1   |
|    | 칠곡군    | 8      | 5.9     | 0.3   |
|    | 예천군    | 3      | 2.2     | 0.1   |
|    | 봉화군    | 1      | 0.7     | 0.0   |
|    | 울진군    | 3      | 2.2     | 0.1   |
|    | 울릉군    | —      | —       | —     |
|    | 소계     | 136    | 100.0   | 5.5   |
| 경남 | 진주시    | 13     | 13.4    | 0.5   |
|    | 통영시    | 4      | 4.1     | 0.2   |
|    | 사천시    | 4      | 4.1     | 0.2   |
|    | 김해시    | 10     | 10.3    | 0.4   |
|    | 밀양시    | 1      | 1.0     | 0.0   |

| 구분 | 시·군·구     | 학대의심사례 | 지역 내 비율 | 전체 비율 |
|----|-----------|--------|---------|-------|
| 경남 | 거제시       | 9      | 9.3     | 0.4   |
|    | 양산시       | 13     | 13.4    | 0.5   |
|    | 창원시 의창구   | 8      | 8.2     | 0.3   |
|    | 창원시 성산구   | 4      | 4.1     | 0.2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 5      | 5.2     | 0.2   |
|    | 창원시 마산회원구 | 4      | 4.1     | 0.2   |
|    | 창원시 진해구   | 5      | 5.2     | 0.2   |
|    | 의령군       | 1      | 1.0     | 0.0   |
|    | 함안군       | 1      | 1.0     | 0.0   |
|    | 창녕군       | —      | —       | —     |
|    | 고성군       | 3      | 3.1     | 0.1   |
|    | 남해군       | 2      | 2.1     | 0.1   |
|    | 하동군       | 2      | 2.1     | 0.1   |
|    | 산청군       | —      | —       | —     |
|    | 함양군       | 1      | 1.0     | 0.0   |
|    | 거창군       | 6      | 6.2     | 0.2   |
|    | 합천군       | 1      | 1.0     | 0.0   |
|    | 소계        | 97     | 100.0   | 3.9   |
| 제주 | 제주시       | 44     | 72.1    | 1.8   |
|    | 서귀포시      | 17     | 27.9    | 0.7   |
|    | 소계        | 61     | 100.0   | 2.5   |
| 계  |           | 2,461  | 100.0   | 100.0 |

## 2. 신고접수 방법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번호로 신고하는 전화 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 신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그 외 문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자(SMS), 카카오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2021년 신고자는 전화를 이용한 신고를 가장 많이했으며 이는 전체 신고의 71.9%인 3,566건이었다. 다음으로 팩스 신고가 466건(9.4%), 온라인 신고가 368건(7.4%), 내방 신고 234건(4.7%) 등의 순이었다. 팩스·온라인에 의한 신고는 경찰의 장애인학대 통보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표 2-5]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 전화    | 온라인 | 문자  | 팩스  | 우편  | 내방  | 인지  | 기타  | 계     |
|-------|-----|-----|-----|-----|-----|-----|-----|-------|
| 3,566 | 368 | 24  | 466 | 14  | 234 | 186 | 99  | 4,957 |
| 71.9  | 7.4 | 0.5 | 9.4 | 0.3 | 4.7 | 3.8 | 2.0 | 100.0 |

## 3. 신고접수 경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로는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가 있다. 인지의 경우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021년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일반적인 신고가 4,055건(81.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통보 499건(10.1%), 인지 186건(3.8%), 연계 157건(3.2%), 이관 60건(1.2%) 순이었다. 경찰통보 건수는 전년도(307건, 7.3%)에 비해 62.5% 증가하였다.

[표 2-6]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 신고    | 인지  | 이관  | 연계  | 경찰통보 | 계     |
|-------|-----|-----|-----|------|-------|
| 4,055 | 186 | 60  | 157 | 499  | 4,957 |
| 81.8  | 3.8 | 1.2 | 3.2 | 10.1 | 100.0 |





# 3

## 일반사례 현황

---

1. 일반사례 유형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3. 차별사례 현황



## 제3장

## 일반사례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의심사례 외에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등의 일반사례를 접수한다. 일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 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차별, 장애인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일반사례 유형

2021년 신고접수된 일반사례는 2,496건으로 전체 신고(4,957건)의 50.4%를 차지했다. 일반사례 유형을 보면 정보문의가 1,493건(5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정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 541건(21.7%), 불만 및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293건(11.7%), 장애인차별 사례 169건(6.8%)이었다.

[표 3-1] 일반사례 유형

(단위: 건, %)

| 차별  | 정보문의  | 불만·민원 | 기타   | 계     |
|-----|-------|-------|------|-------|
| 169 | 1,493 | 293   | 541  | 2,496 |
| 6.8 | 59.8  | 11.7  | 21.7 | 100.0 |

##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의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이 654건(26.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 388건(15.5%), 부산 216건(8.7%), 대구 160건(6.4%) 등의 순이었다.

[표 3-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단위: 건, %)

| 구분 |      | 차별  |       | 정보문의  |       | 불만·민원 |       | 기타  |       | 계     |       |
|----|------|-----|-------|-------|-------|-------|-------|-----|-------|-------|-------|
| 서울 |      | 8   | 4.7   | 458   | 30.7  | 84    | 28.7  | 104 | 19.2  | 654   | 26.2  |
| 부산 |      | 7   | 4.1   | 133   | 8.9   | 37    | 12.6  | 39  | 7.2   | 216   | 8.7   |
| 대구 |      | 5   | 3.0   | 120   | 8.0   | 8     | 2.7   | 27  | 5.0   | 160   | 6.4   |
| 인천 |      | 9   | 5.3   | 73    | 4.9   | 34    | 11.6  | 11  | 2.0   | 127   | 5.1   |
| 광주 |      | 5   | 3.0   | 37    | 2.5   | 12    | 4.1   | 26  | 4.8   | 80    | 3.2   |
| 대전 |      | 6   | 3.6   | 37    | 2.5   | 8     | 2.7   | 19  | 3.5   | 70    | 2.8   |
| 울산 |      | 3   | 1.8   | 27    | 1.8   | 12    | 4.1   | 21  | 3.9   | 63    | 2.5   |
| 세종 |      | 6   | 3.6   | 12    | 0.8   | 1     | 0.3   | 16  | 3.0   | 35    | 1.4   |
| 경기 | 경기   | 61  | 36.1  | 80    | 5.4   | 11    | 3.8   | 70  | 12.9  | 222   | 8.9   |
|    | 경기북부 | 23  | 13.6  | 105   | 7.0   | 6     | 2.0   | 32  | 5.9   | 166   | 6.7   |
|    | 소계   | 84  | 49.7  | 185   | 12.4  | 17    | 5.8   | 102 | 18.9  | 388   | 15.5  |
| 강원 |      | —   | —     | 75    | 5.0   | 14    | 4.8   | 6   | 1.1   | 95    | 3.8   |
| 충북 |      | 5   | 3.0   | 78    | 5.2   | 9     | 3.1   | 22  | 4.1   | 114   | 4.6   |
| 충남 |      | 5   | 3.0   | 59    | 4.0   | 5     | 1.7   | 9   | 1.7   | 78    | 3.1   |
| 전북 |      | 4   | 2.4   | 106   | 7.1   | 21    | 7.2   | 17  | 3.1   | 148   | 5.9   |
| 전남 |      | 5   | 3.0   | 17    | 1.1   | 11    | 3.8   | 40  | 7.4   | 73    | 2.9   |
| 경북 |      | 3   | 1.8   | 12    | 0.8   | 9     | 3.1   | 27  | 5.0   | 51    | 2.0   |
| 경남 |      | 12  | 7.1   | 26    | 1.7   | 3     | 1.0   | 37  | 6.8   | 78    | 3.1   |
| 제주 |      | 2   | 1.2   | 38    | 2.5   | 8     | 2.7   | 18  | 3.3   | 66    | 2.6   |
| 계  |      | 169 | 100.0 | 1,493 | 100.0 | 293   | 100.0 | 541 | 100.0 | 2,496 | 100.0 |

### 3. 차별사례 현황

#### 가. 차별사례 유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사례를 접수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금지 영역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세부 유형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가 있다.

2021년 접수된 차별사례는 169건이며 기타사례가 38건(22.5%), 고용사례 34건(20.1%), 교육·시설물 접근사례 각각 17건(10.1%)이었다.

[표 3-3] 차별사례 유형

(단위: 건, %)

| 고용   | 교육   | 재화·<br>용역 일반 | 보험·<br>금융 | 시설물<br>접근 | 이동·<br>교통수단 | 정보접근<br>· 의사소통 | 문화·예술<br>· 체육 | 사법·<br>행정 | 참정권 | 기타   | 계     |
|------|------|--------------|-----------|-----------|-------------|----------------|---------------|-----------|-----|------|-------|
| 34   | 17   | 13           | 3         | 17        | 14          | 12             | 4             | 16        | 1   | 38   | 169   |
| 20.1 | 10.1 | 7.7          | 1.8       | 10.1      | 8.3         | 7.1            | 2.4           | 9.5       | 0.6 | 22.5 | 100.0 |

##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차별사례가 접수되면 사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은 세부적으로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고발·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조정·중재, 정보제공, 조사 중 해결, 정서적 지지, 타기관 및 자원 연계, 당사자 대응포기, 기타, 지원 대상 아님 등으로 나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진행 중인 사례 10건을 제외하고 총 159건의 차별사례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44건(2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21건(12.4%), 기타 16건(9.5%), 조사 중 해결 15건(8.9%) 등의 순이었다.

[표 3-4] 차별사례 지원결과

(단위: 건, %)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 10  | 5.9   |
| 고발·수사의뢰          | —   | —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6   | 3.6   |
|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 21  | 12.4  |
| 소송구조             | —   | —     |
| 조정·중재            | 9   | 5.3   |
| 정보 제공            | 44  | 26.0  |
| 조사 중 해결          | 15  | 8.9   |
| 정서적 지지           | 12  | 7.1   |
| 타기관 및 자원 연계      | 8   | 4.7   |
| 당사자 대응포기         | 9   | 5.3   |
| 기타               | 16  | 9.5   |
| 지원 대상 아님         | 9   | 5.3   |
| 진행 중             | 10  | 5.9   |
| 계                | 169 | 100.0 |







# 4

## 학대의심사례 현황

---

1. 신고자
2. 학대조사
3. 사례판정
4. 상담 및 지원
5. 사례종결



## 제4장

## 학대의심사례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를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하여 사례지원을 실시한다. 2021년 접수된 4,957건의 신고 중 학대의심사례는 2,461건으로 전체의 49.6%로 나타났다.

## 1. 신고자

## 가. 신고자 유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또한 특정 직종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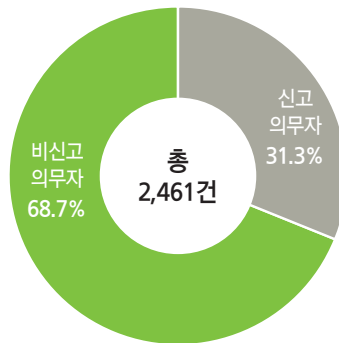
2021년 학대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이 신고한 경우는 771건(31.3%)으로 전년도(728건) 대비 5.9% 증가하였다.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하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1,690건(68.7%)으로 전년도(1,341건) 대비 26.0% 증가하였다.

[표 4-1]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 신고의무자 |      | 비신고의무자 |      | 계     |       |
|-------|------|--------|------|-------|-------|
| 771   | 31.3 | 1,690  | 68.7 | 2,461 | 100.0 |

[그림 4-1] 신고자 유형



## 나.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는 직무 특성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 포함),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등,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2021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sup>1)</sup>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4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 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22.1.28. 시행)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6.6%(359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5.3%(195건),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1.0%(85건), 초·중·고 교직원 7.4%(57건)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29건)에 의한 신고는 9.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185건)에 의한 신고는 5.4% 증가하였고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57건)에 의한 신고가 49.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초·중·고 교직원(69건)에 의한 신고는 17.4% 감소하였다.

신고의무자 중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의 대원,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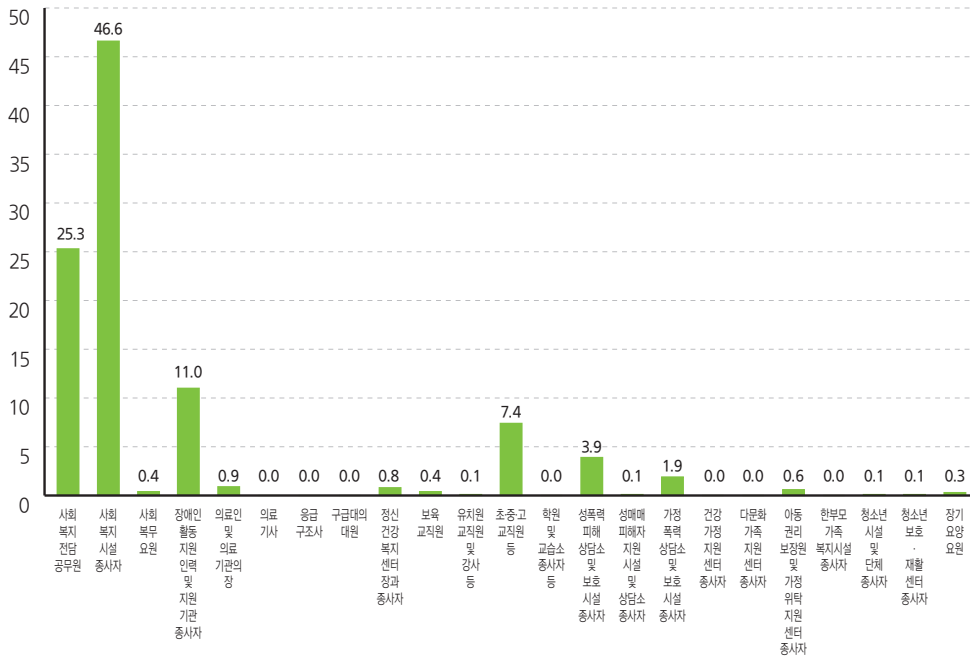
[표 4-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 신고의무자                  | 건수  | 비율    |
|------------------------|-----|-------|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195 | 25.3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359 | 46.6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 3   | 0.4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85  | 11.0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7   | 0.9   |
| 의료기사                   | —   | —     |
| 응급구조사                  | —   | —     |
| 구급대의 대원                | —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6   | 0.8   |
| 보육교직원                  | 3   | 0.4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1   | 0.1   |
| 초·중·고 교직원 등            | 57  | 7.4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30  | 3.9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1   | 0.1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15  | 1.9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5   | 0.6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1   | 0.1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1   | 0.1   |
| 장기요양요원                 | 2   | 0.3   |
| 계                      | 771 | 100.0 |

[그림 4-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



##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는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에 따라 피해장애인 본인, 가족 및 친인척, 유관기관 종사자, 타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한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유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783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325건(19.2%),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300건(17.8%), 타인이 신고한 경우는 256건(15.1%), 신고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26건(1.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325건(19.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316건(18.7%), 타인 256건(15.1%), 경찰공무원 248건(14.7%), 부모 144건(8.5%), 일반공무원 108건(6.4%),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7건(4.2%)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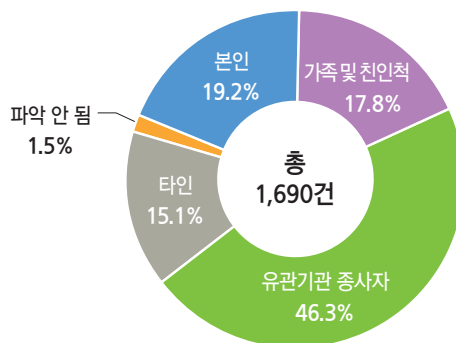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유관기관 종사자인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신고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일반공무원은 50건에서 108건으로 116.0% 증가했으며, 경찰공무원은 141건에서 248건으로 75.9% 크게 증가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신고건수 증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른 경찰통보의 영향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경찰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 비신고의무자   |                 | 건수    | 비율    |
|----------|-----------------|-------|-------|
| 본인       |                 | 325   | 19.2  |
| 가족 및 친인척 | 배우자             | 7     | 0.4   |
|          | 부모              | 144   | 8.5   |
|          | 자녀              | 25    | 1.5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71    | 4.2   |
|          | 친인척             | 53    | 3.1   |
|          | 소계              | 300   | 17.8  |
| 유관기관 종사자 | 일반공무원           | 108   | 6.4   |
|          | 경찰공무원           | 248   | 14.7  |
|          | 공공기관 종사자        | 11    | 0.7   |
|          | 교육기관 종사자        | 8     | 0.5   |
|          | 의료기관 종사자        | 3     | 0.2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316   | 18.7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10    | 0.6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22    | 1.3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57    | 3.4   |
|          | 소계              | 783   | 46.3  |
| 타인       |                 | 256   | 15.1  |
| 파악 안 됨   |                 | 26    | 1.5   |
| 계        |                 | 1,690 | 100.0 |

[그림 4-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신고를 한 경우는 325건으로 전체 학대의심사례 신고(2,461건)의 13.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이나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년도(274건) 대비 18.6% 증가하였다.

직접 학대신고를 한 본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50.5%(164건)로 가장 많았고, 전년도(42.3%, 116건)와 비교했을 때 41.4%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15.4%(50건), 뇌병변장애 12.0%(39건), 정신장애 7.1%(23건) 등의 순이었다.

[표 4-4]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단위: 건, %)

| 장애유형  | 건수  | 비율    |
|-------|-----|-------|
| 지체장애  | 50  | 15.4  |
| 뇌병변장애 | 39  | 12.0  |
| 시각장애  | 11  | 3.4   |
| 청각장애  | 16  | 4.9   |
| 언어장애  | 4   | 1.2   |
| 지적장애  | 164 | 50.5  |
| 자폐성장애 | 3   | 0.9   |
| 정신장애  | 23  | 7.1   |
| 호흡기장애 | 1   | 0.3   |
| 안면장애  | 1   | 0.3   |
| 뇌전증장애 | 5   | 1.5   |
| 미등록   | 8   | 2.5   |
| 계     | 325 | 100.0 |

## 2. 학대조사

### 가. 전체 학대조사

장애인학대조사란 신고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와 피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 시 피해장애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모든 학대의심사례는 조사가 원칙이나 피해장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조사 할 수 없거나, 이미 경찰 또는 유관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조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조사실시율은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2021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중 2022년에 조사가 이뤄진 경우 2021년 학대조사실시율에 반영되지 않는다.

학대의심사례 2,461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377건을 조사했으며, 조사실시율은 96.6%로 전년도 (1,975건, 95.5%)와 비교했을 때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조사 횟수는 5,654건으로 사례별 평균 2.4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5] 전체 학대조사

(단위: 건, 회, %)

| 학대의심사례 | 학대조사  | 학대조사실시율 | 학대조사 횟수 <sup>2)</sup> | 사례별 조사 횟수 |
|--------|-------|---------|-----------------------|-----------|
| 2,461  | 2,377 | 96.6    | 5,654                 | 2.4       |

2)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학대조사 건수 외 조사횟수도 집계하고 있다.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 1회의 조사로 보며, 조사원, 조사장소, 조사방법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조사로 집계한다. 1회 조사에 조사대상이 1명 이상이더라도 조사는 1회로 집계한다.

##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실시율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제주가 각각 10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울산 97.6%, 경북 97.3%, 대전 97.0% 등의 순으로 조사실시율이 높았으며 전남 81.0%, 경남 90.9%, 충북 92.7% 순으로 조사실시율이 낮았다.

[표 4-6]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단위: 건, %, 회)

| 구분 |      | 학대의심사례 | 학대조사건수 | 학대조사실시율 | 학대조사횟수 |
|----|------|--------|--------|---------|--------|
| 서울 |      | 205    | 205    | 100.0   | 473    |
| 부산 |      | 169    | 169    | 100.0   | 353    |
| 대구 |      | 119    | 119    | 100.0   | 369    |
| 인천 |      | 157    | 157    | 100.0   | 511    |
| 광주 |      | 80     | 76     | 95.0    | 306    |
| 대전 |      | 99     | 96     | 97.0    | 211    |
| 울산 |      | 125    | 122    | 97.6    | 356    |
| 세종 |      | 87     | 84     | 96.6    | 199    |
| 경기 | 경기   | 242    | 228    | 94.2    | 346    |
|    | 경기북부 | 221    | 219    | 99.1    | 477    |
|    | 소계   | 463    | 447    | 96.5    | 823    |
| 강원 |      | 120    | 120    | 100.0   | 277    |
| 충북 |      | 206    | 191    | 92.7    | 322    |
| 충남 |      | 145    | 145    | 100.0   | 299    |
| 전북 |      | 93     | 88     | 94.6    | 245    |
| 전남 |      | 121    | 98     | 81.0    | 275    |
| 경북 |      | 111    | 108    | 97.3    | 271    |
| 경남 |      | 99     | 90     | 90.9    | 157    |
| 제주 |      | 62     | 62     | 100.0   | 207    |
| 계  |      | 2,461  | 2,377  | 96.6    | 5,654  |

### 3. 사례판정

#### 가. 전체 사례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회의에서 판정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비학대사례는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조사 중인 사례는 학대조사가 끝나지 않아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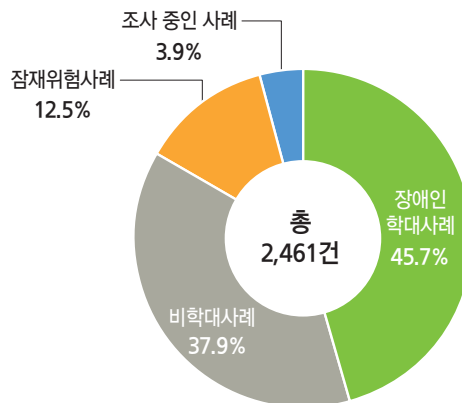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2,461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124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비학대사례는 933건(37.9%), 잠재위험사례는 307건(12.5%), 조사 중인 사례는 97건(3.9%)이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전년도(1,008건) 대비 11.5% 증가하였다.

[표 4-7] 전체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 장애인학대사례 |      | 비학대사례 |      | 잠재위험사례 |      | 조사 중인 사례 |     | 계     |       |
|---------|------|-------|------|--------|------|----------|-----|-------|-------|
| 1,124   | 45.7 | 933   | 37.9 | 307    | 12.5 | 97       | 3.9 | 2,461 | 100.0 |

[그림 4-4] 전체 사례판정 결과



##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69.9%), 광주(60.0%), 인천(56.7%) 등의 순이었다. 비학대사례 판정율은 대구(66.4%), 경북(53.2%), 울산(45.6%) 등의 순이었으며, 잠재위험사례 판정율은 충남(26.9%), 전남(24.8%), 세종(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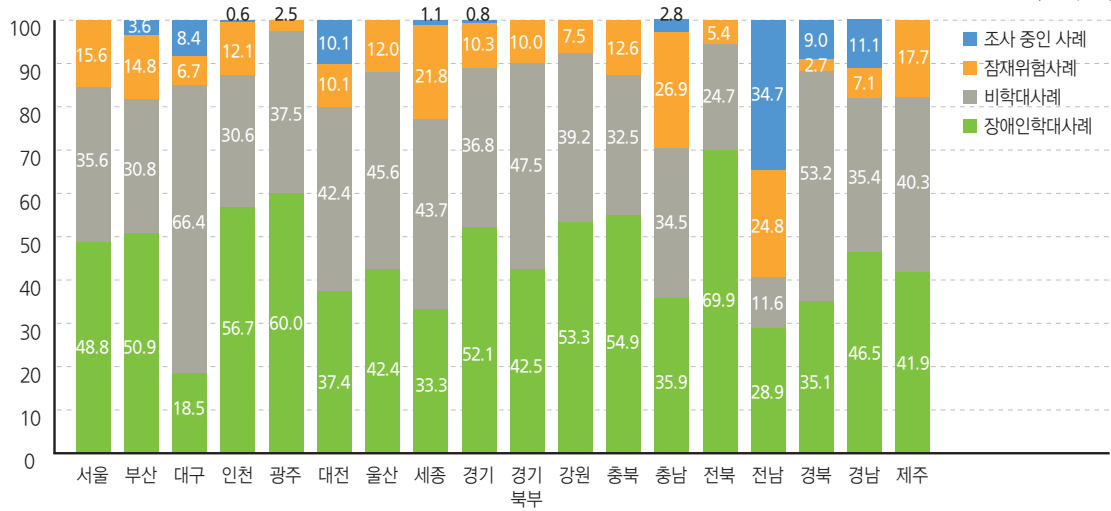
[표 4-8]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 구분 |      | 장애인학대사례 |      | 비학대사례 |      | 잠재위험사례 |      | 조사 중인 사례 |      | 계     |       |
|----|------|---------|------|-------|------|--------|------|----------|------|-------|-------|
| 서울 |      | 100     | 48.8 | 73    | 35.6 | 32     | 15.6 | —        | —    | 205   | 100.0 |
| 부산 |      | 86      | 50.9 | 52    | 30.8 | 25     | 14.8 | 6        | 3.6  | 169   | 100.0 |
| 대구 |      | 22      | 18.5 | 79    | 66.4 | 8      | 6.7  | 10       | 8.4  | 119   | 100.0 |
| 인천 |      | 89      | 56.7 | 48    | 30.6 | 19     | 12.1 | 1        | 0.6  | 157   | 100.0 |
| 광주 |      | 48      | 60.0 | 30    | 37.5 | 2      | 2.5  | —        | —    | 80    | 100.0 |
| 대전 |      | 37      | 37.4 | 42    | 42.4 | 10     | 10.1 | 10       | 10.1 | 99    | 100.0 |
| 울산 |      | 53      | 42.4 | 57    | 45.6 | 15     | 12.0 | —        | —    | 125   | 100.0 |
| 세종 |      | 29      | 33.3 | 38    | 43.7 | 19     | 21.8 | 1        | 1.1  | 87    | 100.0 |
| 경기 | 경기   | 126     | 52.1 | 89    | 36.8 | 25     | 10.3 | 2        | 0.8  | 242   | 100.0 |
|    | 경기북부 | 94      | 42.5 | 105   | 47.5 | 22     | 10.0 | —        | —    | 221   | 100.0 |
|    | 소계   | 220     | 47.5 | 194   | 41.9 | 47     | 10.2 | 2        | 0.4  | 463   | 100.0 |
| 강원 |      | 64      | 53.3 | 47    | 39.2 | 9      | 7.5  | —        | —    | 120   | 100.0 |
| 충북 |      | 113     | 54.9 | 67    | 32.5 | 26     | 12.6 | —        | —    | 206   | 100.0 |
| 충남 |      | 52      | 35.9 | 50    | 34.5 | 39     | 26.9 | 4        | 2.8  | 145   | 100.0 |
| 전북 |      | 65      | 69.9 | 23    | 24.7 | 5      | 5.4  | —        | —    | 93    | 100.0 |
| 전남 |      | 35      | 28.9 | 14    | 11.6 | 30     | 24.8 | 42       | 34.7 | 121   | 100.0 |
| 경북 |      | 39      | 35.1 | 59    | 53.2 | 3      | 2.7  | 10       | 9.0  | 111   | 100.0 |
| 경남 |      | 46      | 46.5 | 35    | 35.4 | 7      | 7.1  | 11       | 11.1 | 99    | 100.0 |
| 제주 |      | 26      | 41.9 | 25    | 40.3 | 11     | 17.7 | —        | —    | 62    | 100.0 |
| 계  |      | 1,124   | 45.7 | 933   | 37.9 | 307    | 12.5 | 97       | 3.9  | 2,461 | 100.0 |

[그림 4-5]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



## 4.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한다.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례 외에 전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의 상담 및 지원도 실시한다. 2021년 신규로 접수된 사례와 2021년 이전에 접수되어 2021년에 진행 중인 사례를 포함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 가. 2021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2021년 접수된 학대의심사례(2,461건)와 2021년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학대의심사례(621건) 총 3,082건에 대해 22,8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7.4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년도(20,215회) 대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2,659건 증가했으나,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0.9회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 이전 사례(621건)는 2021년에 6,410회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사례별 평균 10.3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1년 사례(2,461건)는 16,46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6.9회의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였다.

[표 4-9] 2021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 구분       | 학대의심사례 | 상담 및 지원 횟수 |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
|----------|--------|------------|----------------|
| 2021년 이전 | 621    | 6,410      | 10.3           |
| 2021년    | 2,461  | 16,464     | 6.9            |
| 계        | 3,082  | 22,874     | 7.4            |

## 나. 지역 · 기관별 상담 및 지원

2021년 상담 및 지원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 3,715회, 전북 2,433회, 서울 2,039회, 인천 1,801회 등의 순이었다.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를 살펴보면 전북이 18.2회로 가장 많은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광주 11.9회, 전남 11.2회 등의 순이었다.

[표 4-10] 지역 · 기관별 상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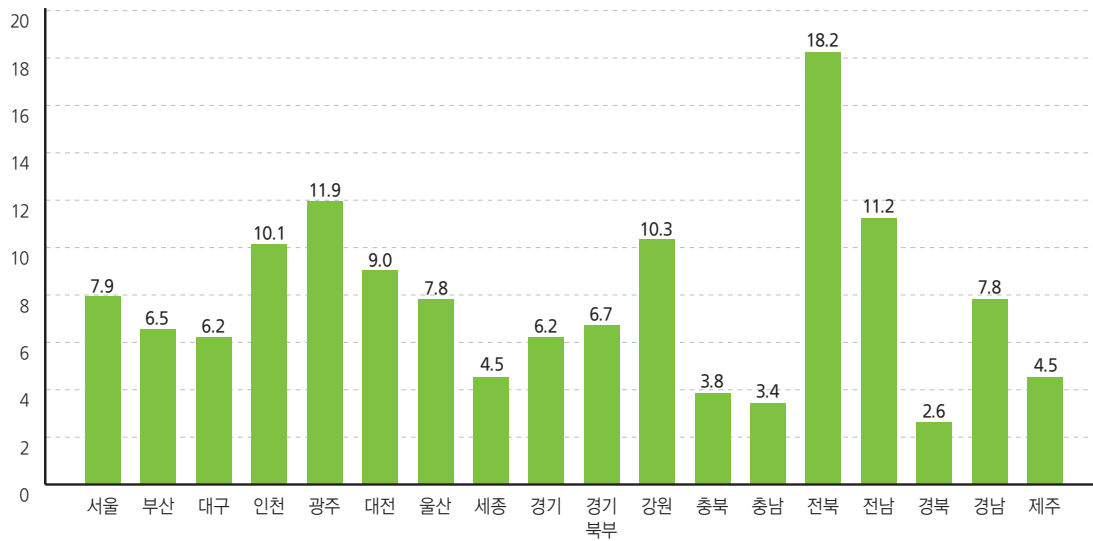
(단위: 건, 회)

| 구분 |      | 2021년 이전   |               | 2021년      |               | 계          |               | 사례별           |
|----|------|------------|---------------|------------|---------------|------------|---------------|---------------|
|    |      | 학대의심<br>사례 | 상담 및<br>지원 횟수 | 학대의심<br>사례 | 상담 및<br>지원 횟수 | 학대의심<br>사례 | 상담 및<br>지원 횟수 | 상담 및<br>지원 횟수 |
| 서울 |      | 53         | 560           | 205        | 1,479         | 258        | 2,039         | 7.9           |
| 부산 |      | 35         | 390           | 169        | 926           | 204        | 1,316         | 6.5           |
| 대구 |      | 28         | 245           | 119        | 669           | 147        | 914           | 6.2           |
| 인천 |      | 22         | 234           | 157        | 1,567         | 179        | 1,801         | 10.1          |
| 광주 |      | 17         | 165           | 80         | 994           | 97         | 1,159         | 11.9          |
| 대전 |      | 17         | 178           | 99         | 870           | 116        | 1,048         | 9.0           |
| 울산 |      | 20         | 196           | 125        | 940           | 145        | 1,136         | 7.8           |
| 세종 |      | 22         | 164           | 87         | 326           | 109        | 490           | 4.5           |
| 경기 | 경기   | 101        | 778           | 242        | 1,344         | 343        | 2,122         | 6.2           |
|    | 경기북부 | 18         | 236           | 221        | 1,357         | 239        | 1,593         | 6.7           |
|    | 소계   | 119        | 1,014         | 463        | 2,701         | 582        | 3,715         | 6.4           |
| 강원 |      | 41         | 485           | 120        | 1,174         | 161        | 1,659         | 10.3          |
| 충북 |      | 23         | 102           | 206        | 773           | 229        | 875           | 3.8           |
| 충남 |      | 34         | 213           | 145        | 390           | 179        | 603           | 3.4           |
| 전북 |      | 41         | 566           | 93         | 1,867         | 134        | 2,433         | 18.2          |
| 전남 |      | 28         | 881           | 121        | 785           | 149        | 1,666         | 11.2          |
| 경북 |      | 42         | 233           | 111        | 166           | 153        | 399           | 2.6           |
| 경남 |      | 64         | 677           | 99         | 598           | 163        | 1,275         | 7.8           |
| 제주 |      | 15         | 107           | 62         | 239           | 77         | 346           | 4.5           |
| 계  |      | 621        | 6,410         | 2,461      | 16,464        | 3,082      | 22,874        | 7.4           |



[그림 4-6]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 다.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2021년 한 해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70명은 총 3,082건에 대해 22,8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상담원 1명은 평균 44.0건의 사례를 담당하였고 326.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전년도(상담원 1명 평균 39.3건, 326.0회)와 비교했을 때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사례 건수는 평균 4.7건, 상담 및 지원 횟수는 0.8회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의 경우 상담원 1명이 평균 114.5회의 사례를 담당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2.4배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부산은 102.0회, 경북은 76.5회, 인천·충남 각각 59.7회 등의 순이었다. 상담원 1명이 한 해동안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횟수는 부산이 658.0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2.0배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전북 608.3회, 인천 600.3회, 대전 524.0회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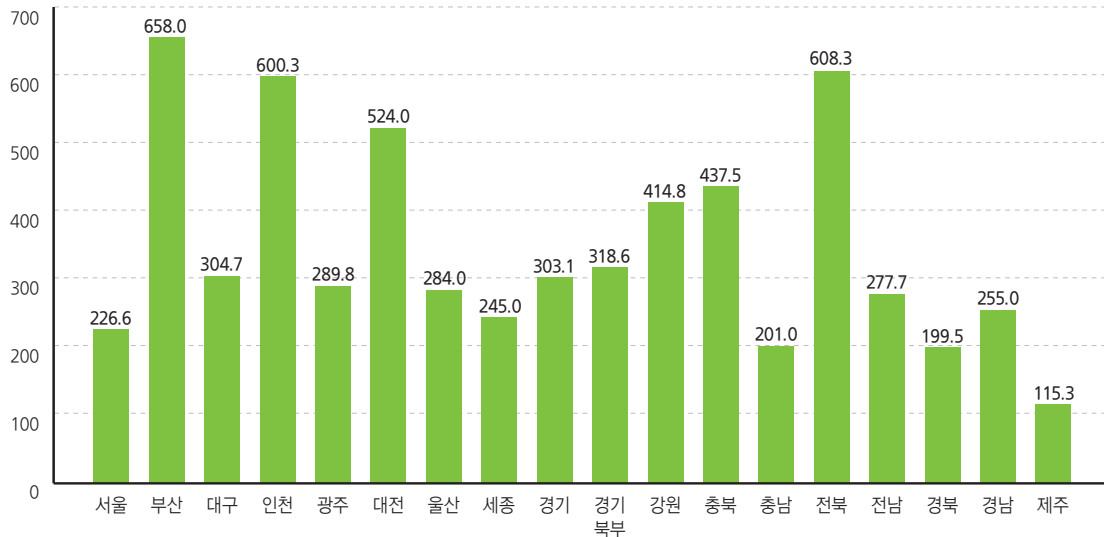
[표 4-11]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단위: 명, 건, 회)

| 구분 |      | 상담원 <sup>3)</sup> | 학대의심 사례 | 상담원 1명<br>평균 담당사례 | 상담 및<br>지원 횟수 | 상담원 1명 평균<br>상담 및 지원 횟수 |
|----|------|-------------------|---------|-------------------|---------------|-------------------------|
| 서울 |      | 9                 | 258     | 28.7              | 2,039         | 226.6                   |
| 부산 |      | 2                 | 204     | 102.0             | 1,316         | 658.0                   |
| 대구 |      | 3                 | 147     | 49.0              | 914           | 304.7                   |
| 인천 |      | 3                 | 179     | 59.7              | 1,801         | 600.3                   |
| 광주 |      | 4                 | 97      | 24.3              | 1,159         | 289.8                   |
| 대전 |      | 2                 | 116     | 58.0              | 1,048         | 524.0                   |
| 울산 |      | 4                 | 145     | 36.3              | 1,136         | 284.0                   |
| 세종 |      | 2                 | 109     | 54.5              | 490           | 245.0                   |
| 경기 | 경기   | 7                 | 343     | 49.0              | 2,122         | 303.1                   |
|    | 경기북부 | 5                 | 239     | 47.8              | 1,593         | 318.6                   |
|    | 소계   | 12                | 582     | 48.5              | 3,715         | 309.6                   |
| 강원 |      | 4                 | 161     | 40.3              | 1,659         | 414.8                   |
| 충북 |      | 2                 | 229     | 114.5             | 875           | 437.5                   |
| 충남 |      | 3                 | 179     | 59.7              | 603           | 201.0                   |
| 전북 |      | 4                 | 134     | 33.5              | 2,433         | 608.3                   |
| 전남 |      | 6                 | 149     | 24.8              | 1,666         | 277.7                   |
| 경북 |      | 2                 | 153     | 76.5              | 399           | 199.5                   |
| 경남 |      | 5                 | 163     | 32.6              | 1,275         | 255.0                   |
| 제주 |      | 3                 | 77      | 25.7              | 346           | 115.3                   |
| 계  |      | 70                | 3,082   | 44.0              | 22,874        | 326.8                   |

[그림 4-7]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 5. 사례종결

학대의심사례 2,461건 중 1,520건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되어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61.8%로 나타났다. 전년도(71.0%)와 비교해 사례종결율은 9.2%p 낮아졌다.

[표 4-12] 사례종결

(단위: 건, %)

| 학대의심사례 | 종결사례  |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
|--------|-------|-------------|
| 2,461  | 1,520 | 61.8        |

3)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70명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4명의 직원 중 관장 및 운영지원 직원을 제외한 2명의 상담원이 사례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별로 상담원 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 5

## 학대사례 분석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3. 장애인학대 유형
4. 응급조치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6. 사례종결
7. 사후 모니터링



## 제5장

## 학대사례 분석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가. 피해장애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을 기준으로 사례를 집계한다. 학대의심사례 2,461건은 피해장애인의 수이며, 본 장에서는 학대로 판정된 사례 1,124건의 피해장애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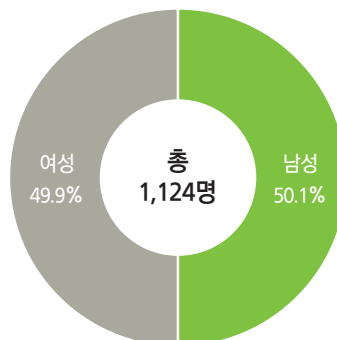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50.1%(563명), 여성이 49.9%(561명)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년도 (48.5%) 대비 1.6%p 높게 나타났다.

[표 5-1]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 남성  |      | 여성  |      | 계     |       |
|-----|------|-----|------|-------|-------|
| 563 | 50.1 | 561 | 49.9 | 1,124 | 100.0 |

[그림 5-1] 피해장애인 성별



##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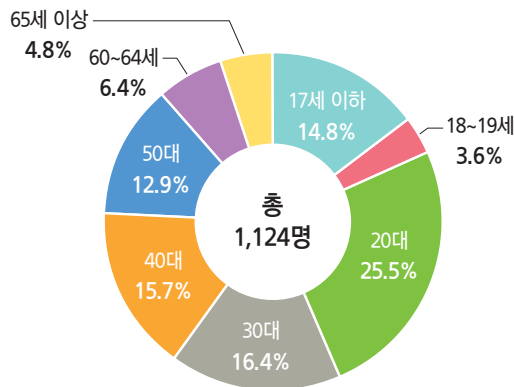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5.5%(28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대 16.4%(184명), 40대 15.7%(176명), 만 17세 이하 14.8%(166명)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만 17세 이하가 24.8%, 만 65세 이상이 54.3% 증가하였다.

[표 5-2]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 연령          | 명수    | 비율    |
|-------------|-------|-------|
| 17세 이하      | 166   | 14.8  |
| 18~19세      | 40    | 3.6   |
| 20대(20~29세) | 287   | 25.5  |
| 30대(30~39세) | 184   | 16.4  |
| 40대(40~49세) | 176   | 15.7  |
| 50대(50~59세) | 145   | 12.9  |
| 60~64세      | 72    | 6.4   |
| 65세 이상      | 54    | 4.8   |
| 계           | 1,124 | 100.0 |

[그림 5-2] 피해장애인 연령





### 3)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 장애인과 동일하게 신고접수와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미등록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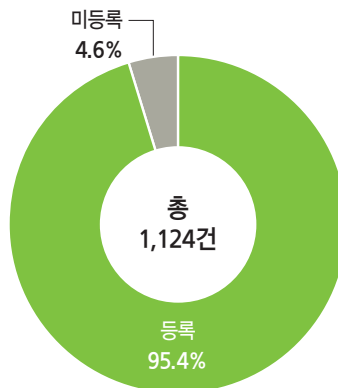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124건의 사례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95.4%(1,072건)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4.6%(52건)이었다.

[표 5-3] 장애인 등록 여부

(단위: 건, %)

| 등록    | 미등록 | 계     |
|-------|-----|-------|
| 1,072 | 52  | 1,124 |
| 95.4  | 4.6 | 100.0 |

[그림 5-3] 장애인 등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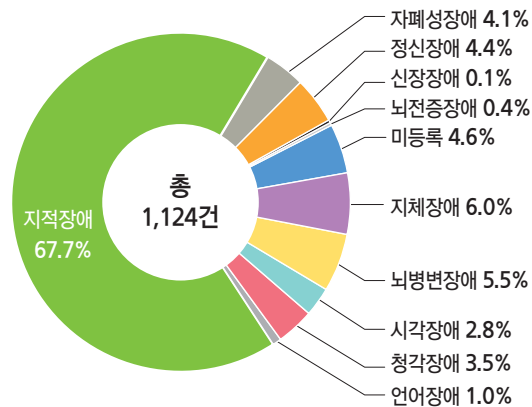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7.7%(761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6.0%(68건), 뇌병변장애 5.5%(62건), 정신장애 4.4%(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71.8%(807건)로 전년도(67.8%, 683건) 대비 18.2% 증가하였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는 76.2%(856건)로 전년도(71.3%, 719건) 보다 19.1% 증가하였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학대 고위험군으로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5-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sup>4)</sup>

(단위: 건, %)

| 장애유형    | 건수    | 비율    |
|---------|-------|-------|
| 지체장애    | 68    | 6.0   |
| 뇌병변장애   | 62    | 5.5   |
| 시각장애    | 31    | 2.8   |
| 청각장애    | 39    | 3.5   |
| 언어장애    | 11    | 1.0   |
| 지적장애    | 761   | 67.7  |
| 자폐성장애   | 46    | 4.1   |
| 정신장애    | 49    | 4.4   |
| 신장장애    | 1     | 0.1   |
| 심장장애    | —     | —     |
| 호흡기장애   | —     | —     |
| 간장애     | —     | —     |
| 안면장애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뇌전증장애   | 4     | 0.4   |
| 미등록     | 52    | 4.6   |
| 계       | 1,124 | 100.0 |

[그림 5-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애 및 부장애유형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장애유형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4~6등급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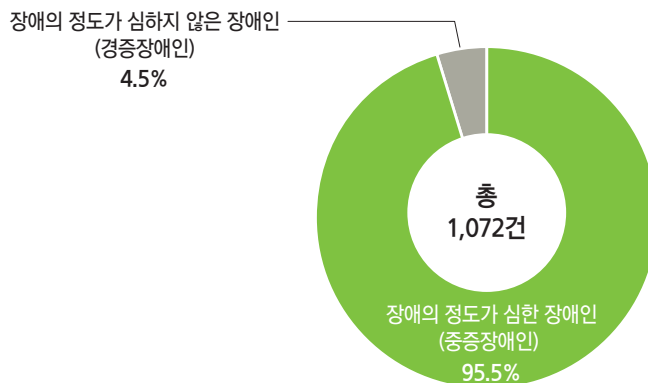
전체 학대사례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1,072건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95.5%(1,02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4.5%(48건)이었다. 피해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전년도(896건, 94.3%)와 비교했을 때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 장애정도                      | 건수    | 비율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1,024 | 95.5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 48    | 4.5   |
| 계                         | 1,072 | 100.0 |

[그림 5-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 4) 거주형태

피해장애인의 거주형태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재가와 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이라 함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관리자가 있는 주거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을 말한다. 재가라 함은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81.0%(911건)이었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19.0%(213건)이었다.

[표 5-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단위: 건, %)

| 재가  |      | 시설  |      | 계     |       |
|-----|------|-----|------|-------|-------|
| 911 | 81.0 | 213 | 19.0 | 1,124 | 100.0 |

####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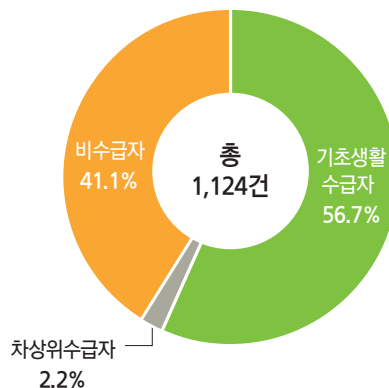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6.7%(637건), 차상위수급자 2.2%(25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41.1%(462건)로 나타났다.

[표 5-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수급자 |     | 비수급자 |      | 합계    |       |
|---------|------|--------|-----|------|------|-------|-------|
| 637     | 56.7 | 25     | 2.2 | 462  | 41.1 | 1,124 | 100.0 |

[그림 5-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6) 재학대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접수되어 종료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재학대사례라고 한다. 2021년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7.2%인 81건으로 전년도(49건, 4.9%)와 비교하면 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재학대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

| 학대사례  | 재학대 건수 | 학대사례 중 재학대 비율 |
|-------|--------|---------------|
| 1,124 | 81     | 7.2           |

## 나.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의 행위자는 사례별로 여러 명일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사례별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한 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여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수는 1,124명으로 동일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통해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고 있으나 사례에 따라 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의 정보(연령, 관계 등)를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한다.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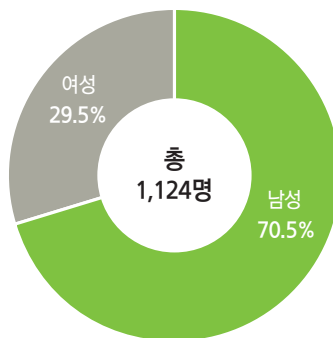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사례의 행위자 중 남성은 70.5%(792명), 여성은 29.5%(332명)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배 많았다.

[표 5-9]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 남성  |      | 여성  |      | 계     |       |
|-----|------|-----|------|-------|-------|
| 792 | 70.5 | 332 | 29.5 | 1,124 | 100.0 |

[그림 5-7] 학대행위자 성별



##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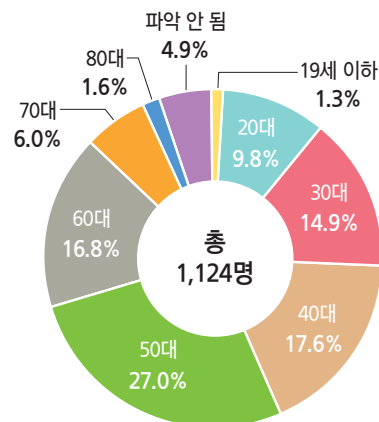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50대가 27.0%(30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17.6%, 198명), 60대(16.8%, 189명), 30대(14.9%, 1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0]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 연령          | 명수    | 비율    |
|-------------|-------|-------|
| 19세 이하      | 15    | 1.3   |
| 20대(20~29세) | 110   | 9.8   |
| 30대(30~39세) | 168   | 14.9  |
| 40대(40~49세) | 198   | 17.6  |
| 50대(50~59세) | 304   | 27.0  |
| 60대(60~69세) | 189   | 16.8  |
| 70대(70~79세) | 67    | 6.0   |
| 80세 이상      | 18    | 1.6   |
| 파악 안 됨      | 55    | 4.9   |
| 계           | 1,124 | 100.0 |

[그림 5-8] 학대행위자 연령



###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 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된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父), 모(母),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으로 나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직종의 사람이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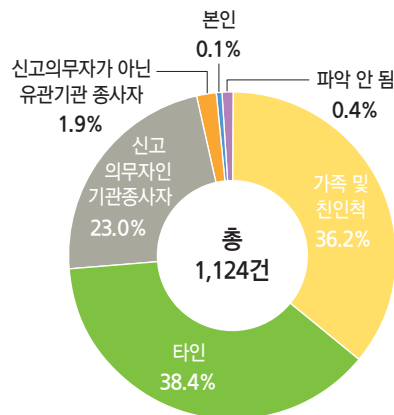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사례 중 ‘타인’에 의한 학대는 38.4%(43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은 36.2%(407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23.0%(258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1.9%(21건), ‘파악 안 됨’은 0.4%(5건), ‘본인’은 0.1%(1건)이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35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19.2%(216건), 부(父)에 의한 학대 11.9%(134건)이었다. 다음으로 배우자 6.9%(78건), 모(母) 6.2%(70건), 동거인 6.1%(69건), 모르는 사람 5.9%(66건) 등의 순이었다.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32.8%, 331건)는 전년도와 비교해 23.0%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채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들이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봄 등의 직무를 하고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학대 예방 및 장애 감수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림 5-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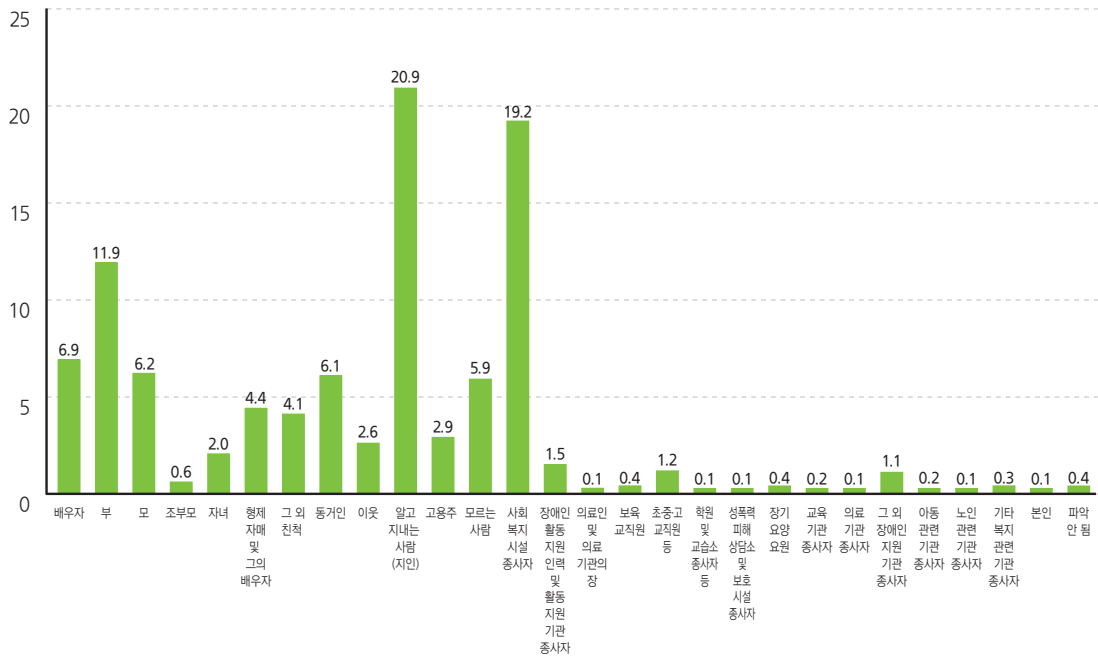
[표 5-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

| 관계                    |                        | 건수    | 비율    |
|-----------------------|------------------------|-------|-------|
| 가족<br>및<br>친인척        | 배우자                    | 78    | 6.9   |
|                       | 부                      | 134   | 11.9  |
|                       | 모                      | 70    | 6.2   |
|                       | 조부모                    | 7     | 0.6   |
|                       | 자녀                     | 22    | 2.0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50    | 4.4   |
|                       | 그 외 친척                 | 46    | 4.1   |
|                       | 소계                     | 407   | 36.2  |
| 타인                    | 동거인                    | 69    | 6.1   |
|                       | 이웃                     | 29    | 2.6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235   | 20.9  |
|                       | 고용주                    | 33    | 2.9   |
|                       | 모르는 사람                 | 66    | 5.9   |
|                       | 소계                     | 432   | 38.4  |
| 신고의무자인<br>기관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216   | 19.2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17    | 1.5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1     | 0.1   |
|                       | 보육교직원                  | 5     | 0.4   |
|                       | 초·중·고 교직원 등            | 13    | 1.2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1     | 0.1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 1     | 0.1   |
|                       | 장기요양요원                 | 4     | 0.4   |
|                       | 소계                     | 258   | 23.0  |
| 신고의무자가 아닌<br>유관기관 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2     | 0.2   |
|                       | 의료기관 종사자               | 1     | 0.1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12    | 1.1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2     | 0.2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1     | 0.1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3     | 0.3   |
|                       | 소계                     | 21    | 1.9   |
| 본인                    |                        | 1     | 0.1   |
| 파악 안 됨                |                        | 5     | 0.4   |
| 계                     |                        | 1,124 | 100.0 |

[그림 5-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중분류)

(단위: %)



#### 4) 피해장애인의 동거여부

전체 학대사례에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여부를 보면 동거하지 않는 경우 66.5%(747건), 동거하는 경우 31.7%(356건), 파악되지 않는 경우 1.9%(21건)이었다.

[표 5-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단위: 건, %)

| 동거  |      | 비동거 |      | 파악 안 됨 |     | 계     |       |
|-----|------|-----|------|--------|-----|-------|-------|
| 356 | 31.7 | 747 | 66.5 | 21     | 1.9 | 1,124 | 100.0 |

##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 가. 학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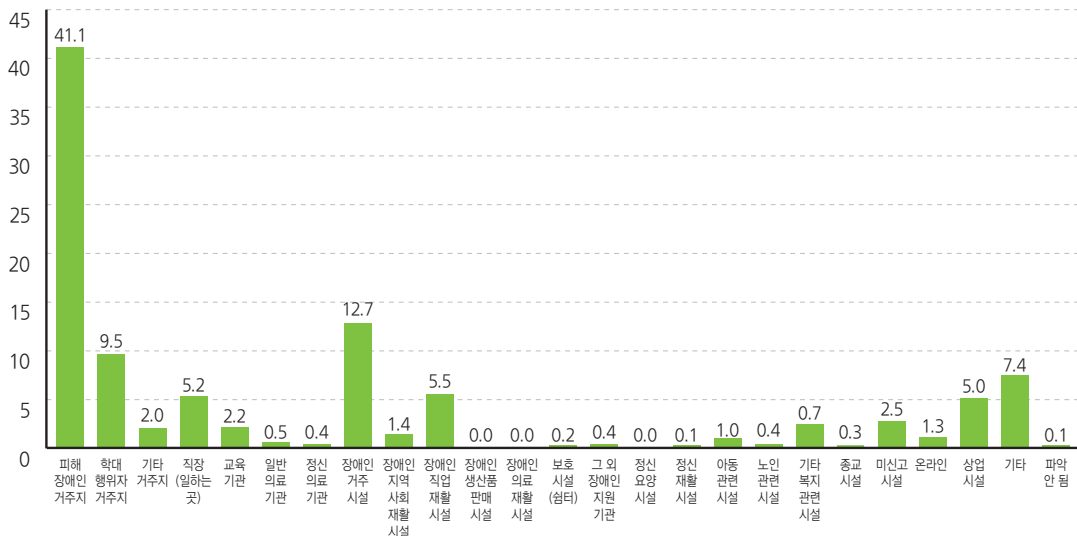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내용,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기타 복지관련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장애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로 전체 학대사례의 41.1%(462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기타 7.4%(83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5%(62건), 직장(일하는 곳) 5.2%(58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피해장애인 거주지(39.1%, 394건)는 17.3% 증가하였고, 학대행위자 거주지(9.2%, 93건) 역시 15.1%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전년도(0.7%, 7건) 대비 785.7% 증가하였으나 직장(일하는 곳)은 전년도(9.8%, 99건)에 비해 41.4% 감소하였다.

[그림 5-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



[표 5-13]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 발생장소        |             | 건수    | 비율    |
|-------------|-------------|-------|-------|
| 피해장애인 거주지   |             | 462   | 41.1  |
| 학대행위자 거주지   |             | 107   | 9.5   |
| 기타 거주지      |             | 23    | 2.0   |
| 직장(일하는 곳)   |             | 58    | 5.2   |
| 교육기관        |             | 25    | 2.2   |
| 일반 의료기관     |             | 6     | 0.5   |
| 정신 의료기관     |             | 4     | 0.4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143   | 12.7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16    | 1.4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62    | 5.5   |
|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     |
|             | 소계          | 221   | 19.7  |
| 보호시설(쉼터)    |             | 2     | 0.2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5     | 0.4   |
| 정신요양시설      |             | —     | —     |
| 정신재활시설      |             | 1     | 0.1   |
| 아동관련시설      |             | 11    | 1.0   |
| 노인관련시설      |             | 5     | 0.4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8     | 0.7   |
| 종교시설        |             | 3     | 0.3   |
| 미신고시설       |             | 28    | 2.5   |
| 온라인         |             | 15    | 1.3   |
| 상업시설        |             | 56    | 5.0   |
| 기타          |             | 83    | 7.4   |
| 파악 안 됨      |             | 1     | 0.1   |
| 계           |             | 1,124 | 100.0 |

## 나.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36.5%(41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3년 미만이 17.1%(192건), 3~6개월 미만이 10.6%(119건) 등의 순이었다. 학대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55.8%(627건)를 차지했다.

장애인학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발생빈도가 1~2회로 짧은 경우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사례가 88.1%(303건)로 나타났다. 반면 발생빈도가 10회 이상인 사례에서 3년 이상 학대가 지속되는 사례는 43.9%(123건)로 나타났으며,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는 57.6%(144건)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빈도가 낮으면 지속기간이 짧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써 학대 발생을 빠른 시간내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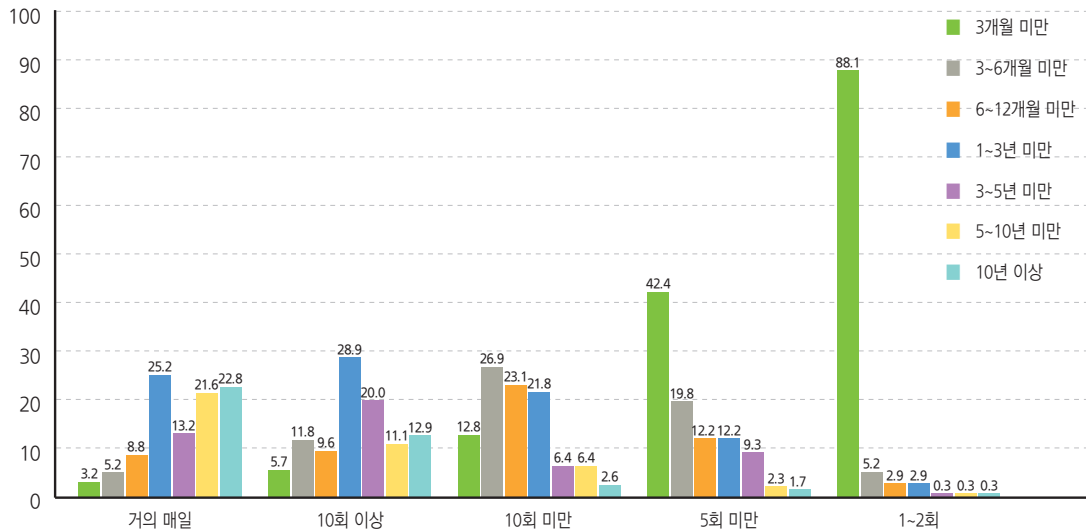
[표 5-14]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단위: 건, %)

| 구분       |           | 발생빈도  |        |        |       |      |       |     |       |     |       |       |       |
|----------|-----------|-------|--------|--------|-------|------|-------|-----|-------|-----|-------|-------|-------|
|          |           | 거의 매일 | 10회 이상 | 10회 미만 | 5회 미만 | 1~2회 | 계     |     |       |     |       |       |       |
| 지속<br>기간 | 3개월 미만    | 8     | 3.2    | 16     | 5.7   | 10   | 12.8  | 73  | 42.4  | 303 | 88.1  | 410   | 36.5  |
|          | 3~6개월 미만  | 13    | 5.2    | 33     | 11.8  | 21   | 26.9  | 34  | 19.8  | 18  | 5.2   | 119   | 10.6  |
|          | 6~12개월 미만 | 22    | 8.8    | 27     | 9.6   | 18   | 23.1  | 21  | 12.2  | 10  | 2.9   | 98    | 8.7   |
|          | 1~3년 미만   | 63    | 25.2   | 81     | 28.9  | 17   | 21.8  | 21  | 12.2  | 10  | 2.9   | 192   | 17.1  |
|          | 3~5년 미만   | 33    | 13.2   | 56     | 20.0  | 5    | 6.4   | 16  | 9.3   | 1   | 0.3   | 111   | 9.9   |
|          | 5~10년 미만  | 54    | 21.6   | 31     | 11.1  | 5    | 6.4   | 4   | 2.3   | 1   | 0.3   | 95    | 8.5   |
|          | 10년 이상    | 57    | 22.8   | 36     | 12.9  | 2    | 2.6   | 3   | 1.7   | 1   | 0.3   | 99    | 8.8   |
|          | 계         | 250   | 100.0  | 280    | 100.0 | 78   | 100.0 | 172 | 100.0 | 344 | 100.0 | 1,124 | 100.0 |

[그림 5-12]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단위: %)



### 3.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정의에 기초하여 장애인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장애인학대 유형에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중복 학대’로 분류하고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과 ‘중복 학대’를 포함한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 가. 장애인학대 유형

#####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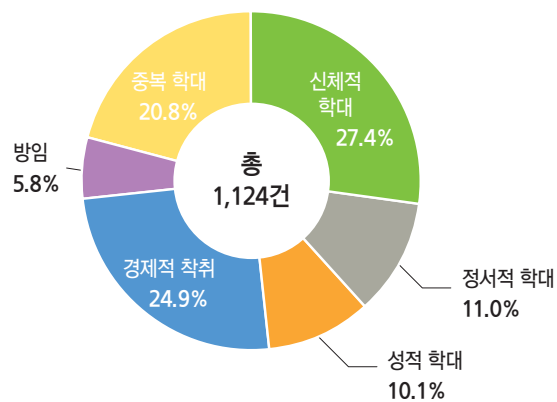
중복 학대를 개별적인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학대사례 1,124건 중 신체적 학대가 27.4%(30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4.9%(280건), 중복 학대 20.8%(234건), 정서적 학대 11.0%(124건), 성적 학대 10.1%(113건), 방임 5.8%(65건) 순이었다. 유기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0건이었다. 전년도 장애인학대 유형의 비율은 경제적 착취(25.5%, 257건) – 신체적 학대(22.5%, 227건) – 중복 학대(22.4%, 226건) – 정서적 학대(14.0%, 141건) – 성적 학대(10.9%, 110건) – 방임(4.7%, 47건) 순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2021년 전체 학대사례에서 신체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경제적 착취와 중복 학대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표 5-15]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 학대유형   | 건수    | 비율    |
|--------|-------|-------|
| 신체적 학대 | 308   | 27.4  |
| 정서적 학대 | 124   | 11.0  |
| 성적 학대  | 113   | 10.1  |
| 경제적 착취 | 280   | 24.9  |
| 유기     | -     | -     |
| 방임     | 65    | 5.8   |
| 중복 학대  | 234   | 20.8  |
| 계      | 1,124 | 100.0 |

[그림 5-13]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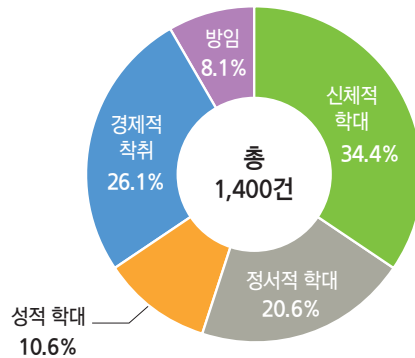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이 경험한 학대를 개별 장애인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집계한 결과 장애인학대 유형은 총 1,400건이었다. 신체적 학대가 34.4%(48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착취 26.1%(366건), 정서적 학대 20.6%(289건), 성적 학대 10.6%(149건), 방임 8.1%(114건) 순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16]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 학대유형   | 건수    | 비율    |
|--------|-------|-------|
| 신체적 학대 | 482   | 34.4  |
| 정서적 학대 | 289   | 20.6  |
| 성적 학대  | 149   | 10.6  |
| 경제적 착취 | 366   | 26.1  |
| 유기     | —     | —     |
| 방임     | 114   | 8.1   |
| 계      | 1,400 | 100.0 |

[그림 5-14]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1,400건을 기준으로 장애인학대 유형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50.3%, 여성이 49.7%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방임의 경우 남성이 21.0%p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70.5%p 높았으며, 사례 건수 대비 여성이 남성보다 약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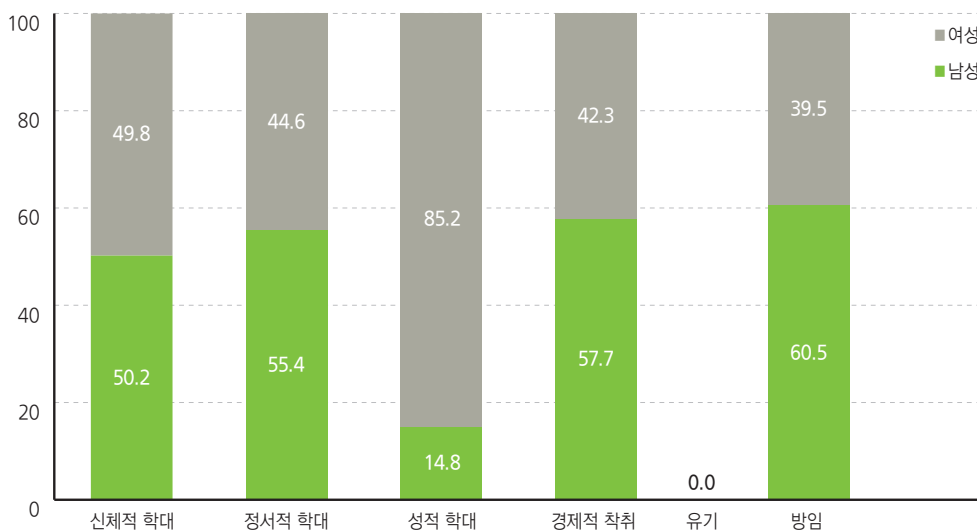
[표 5-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계     |       |
|----|--------|-------|--------|-------|-------|-------|--------|-------|----|---|-----|-------|-------|-------|
| 남성 | 242    | 50.2  | 160    | 55.4  | 22    | 14.8  | 211    | 57.7  | —  | — | 69  | 60.5  | 704   | 50.3  |
| 여성 | 240    | 49.8  | 129    | 44.6  | 127   | 85.2  | 155    | 42.3  | —  | — | 45  | 39.5  | 696   | 49.7  |
| 계  | 482    | 100.0 | 289    | 100.0 | 149   | 100.0 | 366    | 100.0 | —  | — | 114 | 100.0 | 1,264 | 100.0 |

[그림 5-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



##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30대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만 17세 이하, 30대,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7세 이하, 30대, 40대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만 17세 이하,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역시 20대가 많았으며, 30대·40대, 5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만 17세 이하, 20대·40대, 3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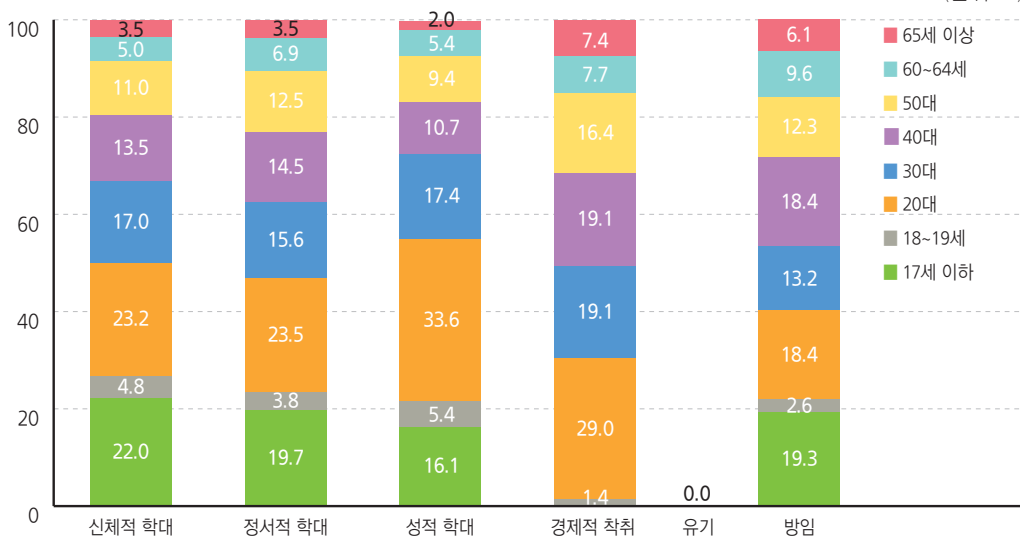
[표 5-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계     |       |
|-------------|--------|-------|--------|-------|-------|-------|--------|-------|----|---|-----|-------|-------|-------|
| 17세 이하      | 106    | 22.0  | 57     | 19.7  | 24    | 16.1  | —      | —     | —  | — | 22  | 19.3  | 209   | 14.9  |
| 18~19세      | 23     | 4.8   | 11     | 3.8   | 8     | 5.4   | 5      | 1.4   | —  | — | 3   | 2.6   | 50    | 3.6   |
| 20대(20~29세) | 112    | 23.2  | 68     | 23.5  | 50    | 33.6  | 106    | 29.0  | —  | — | 21  | 18.4  | 357   | 25.5  |
| 30대(30~39세) | 82     | 17.0  | 45     | 15.6  | 26    | 17.4  | 70     | 19.1  | —  | — | 15  | 13.2  | 238   | 17.0  |
| 40대(40~49세) | 65     | 13.5  | 42     | 14.5  | 16    | 10.7  | 70     | 19.1  | —  | — | 21  | 18.4  | 214   | 15.3  |
| 50대(50~59세) | 53     | 11.0  | 36     | 12.5  | 14    | 9.4   | 60     | 16.4  | —  | — | 14  | 12.3  | 177   | 12.6  |
| 60~64세      | 24     | 5.0   | 20     | 6.9   | 8     | 5.4   | 28     | 7.7   | —  | — | 11  | 9.6   | 91    | 6.5   |
| 65세 이상      | 17     | 3.5   | 10     | 3.5   | 3     | 2.0   | 27     | 7.4   | —  | — | 7   | 6.1   | 64    | 4.6   |
| 계           | 482    | 100.0 | 289    | 100.0 | 149   | 100.0 | 366    | 100.0 | —  | — | 114 | 100.0 | 1,400 | 100.0 |

[그림 5-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



###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 33.6%, 경제적 착취 26.8%, 정서적 학대 2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피해자는 정서적 학대 35.6%, 신체적 학대 29.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장애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 40.5%, 경제적 착취 27.0% 등의 순이었다. 정신장애 피해자는 경제적 착취가 35.6%, 신체적 학대 27.1% 순으로 높았으며,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 63.6%, 정서적 학대 2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9]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계     |       |
|---------|--------|-------|--------|------|-------|------|--------|------|----|---|-----|------|-------|-------|
| 지체장애    | 26     | 29.9  | 31     | 35.6 | 8     | 9.2  | 16     | 18.4 | —  | — | 6   | 6.9  | 87    | 100.0 |
| 뇌병변장애   | 30     | 40.5  | 7      | 9.5  | 7     | 9.5  | 20     | 27.0 | —  | — | 10  | 13.5 | 74    | 100.0 |
| 시각장애    | 15     | 41.7  | 8      | 22.2 | 3     | 8.3  | 6      | 16.7 | —  | — | 4   | 11.1 | 36    | 100.0 |
| 청각장애    | 13     | 26.0  | 4      | 8.0  | 12    | 24.0 | 20     | 40.0 | —  | — | 1   | 2.0  | 50    | 100.0 |
| 언어장애    | 3      | 25.0  | 1      | 8.3  | 1     | 8.3  | 6      | 50.0 | —  | — | 1   | 8.3  | 12    | 100.0 |
| 지적장애    | 321    | 33.6  | 202    | 21.2 | 98    | 10.3 | 256    | 26.8 | —  | — | 77  | 8.1  | 954   | 100.0 |
| 자폐성장애   | 35     | 63.6  | 13     | 23.6 | —     | —    | 3      | 5.5  | —  | — | 4   | 7.3  | 55    | 100.0 |
| 정신장애    | 16     | 27.1  | 8      | 13.6 | 9     | 15.3 | 21     | 35.6 | —  | — | 5   | 8.5  | 59    | 100.0 |
| 신장장애    | 1      | 10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0 |
|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뇌전증장애   | 1      | 25.0  | —      | —    | —     | —    | 3      | 75.0 | —  | — | —   | —    | 4     | 100.0 |
| 미등록     | 21     | 30.9  | 15     | 22.1 | 11    | 16.2 | 15     | 22.1 | —  | — | 6   | 8.8  | 68    | 100.0 |
| 계       | 482    | 34.4  | 289    | 20.6 | 149   | 10.6 | 366    | 26.1 | —  | — | 114 | 8.1  | 1,400 | 100.0 |

####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은 모든 학대유형에서 시설보다 재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20]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계     |       |
|----|--------|-------|--------|-------|-------|-------|--------|-------|----|---|-----|-------|-------|-------|
| 재가 | 402    | 83.4  | 226    | 78.2  | 124   | 83.2  | 314    | 85.8  | -  | - | 59  | 51.8  | 1,125 | 80.4  |
| 시설 | 80     | 16.6  | 63     | 21.8  | 25    | 16.8  | 52     | 14.2  | -  | - | 55  | 48.2  | 275   | 19.6  |
| 계  | 482    | 100.0 | 289    | 100.0 | 149   | 100.0 | 366    | 100.0 | -  | - | 114 | 100.0 | 1,400 | 100.0 |

####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신체적 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53.3%(257건)로 가장 높았고, ‘타인’ 22.8%(110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2.0%(106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피해자의 부(父)가 19.5%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7.0%, 배우자 13.1%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7.4%(108건)로 가장 높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34.9%(101건), ‘타인’ 24.6%(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8.0%로 가장 높았고, 부(父) 13.1%,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타인’인 경우가 72.5%(10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40.3%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 11.4%, 이웃 9.4%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행위자는 ‘타인’이 61.2%(224건)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18.9%(69건), ‘가족 및 친인척’ 18.0%(66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33.6%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9% 등의 순이었다. 동거인·모르는 사람은 각각 9.6%로 나타났다.

방임의 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51.8%(59건)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 36.8%(42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9.1%로 가장 높았고, 부(父) 13.2%, 모(母) 12.3% 등의 순이었다.

[표 5-21]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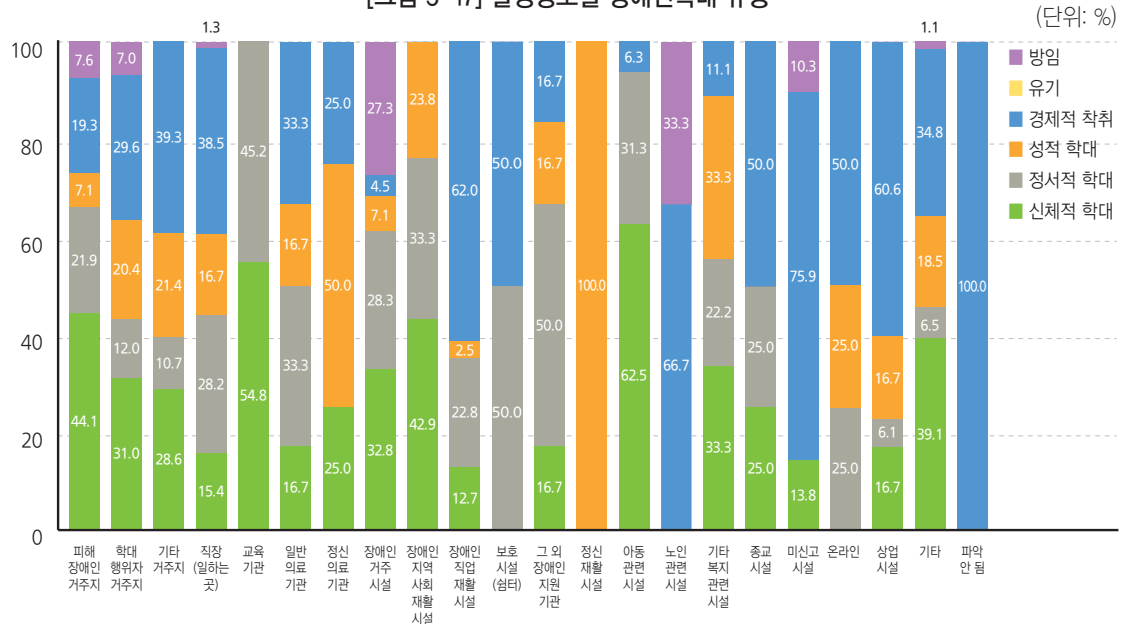
(단위: 건, %)

| 구분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계     |       |
|---------------------------------|---------------------------|--------|-------|--------|-------|-------|-------|--------|-------|----|---|-----|-------|-------|-------|
| 가족<br>및<br>친인척                  | 배우자                       | 63     | 13.1  | 26     | 9.0   | 3     | 2.0   | 3      | 0.8   | -  | - | 4   | 3.5   | 99    | 7.1   |
|                                 | 부                         | 94     | 19.5  | 38     | 13.1  | 9     | 6.0   | 6      | 1.6   | -  | - | 15  | 13.2  | 162   | 11.6  |
|                                 | 모                         | 44     | 9.1   | 17     | 5.9   | 2     | 1.3   | 7      | 1.9   | -  | - | 14  | 12.3  | 84    | 6.0   |
|                                 | 조부모                       | 2      | 0.4   | 4      | 1.4   | 1     | 0.7   | -      | -     | -  | - | -   | -     | 7     | 0.5   |
|                                 | 자녀                        | 15     | 3.1   | 4      | 1.4   | 1     | 0.7   | 3      | 0.8   | -  | - | 4   | 3.5   | 27    | 1.9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1     | 4.4   | 7      | 2.4   | 3     | 2.0   | 23     | 6.3   | -  | - | 5   | 4.4   | 59    | 4.2   |
|                                 | 그 외 친척                    | 18     | 3.7   | 12     | 4.2   | 4     | 2.7   | 24     | 6.6   | -  | - | -   | -     | 58    | 4.1   |
|                                 | 소계                        | 257    | 53.3  | 108    | 37.4  | 23    | 15.4  | 66     | 18.0  | -  | - | 42  | 36.8  | 496   | 35.4  |
| 타인                              | 동거인                       | 25     | 5.2   | 8      | 2.8   | 13    | 8.7   | 35     | 9.6   | -  | - | 2   | 1.8   | 83    | 5.9   |
|                                 | 이웃                        | 5      | 1.0   | 6      | 2.1   | 14    | 9.4   | 7      | 1.9   | -  | - | -   | -     | 32    | 2.3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62     | 12.9  | 37     | 12.8  | 60    | 40.3  | 123    | 33.6  | -  | - | 10  | 8.8   | 292   | 20.9  |
|                                 | 고용주                       | 10     | 2.1   | 8      | 2.8   | 4     | 2.7   | 24     | 6.6   | -  | - | -   | -     | 46    | 3.3   |
|                                 | 모르는 사람                    | 8      | 1.7   | 12     | 4.2   | 17    | 11.4  | 35     | 9.6   | -  | - | -   | -     | 72    | 5.1   |
|                                 | 소계                        | 110    | 22.8  | 71     | 24.6  | 108   | 72.5  | 224    | 61.2  | -  | - | 12  | 10.5  | 525   | 37.5  |
| 신고<br>의무자인<br>기관<br>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82     | 17.0  | 81     | 28.0  | 10    | 6.7   | 62     | 16.9  | -  | - | 56  | 49.1  | 291   | 20.8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br>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10     | 2.1   | 5      | 1.7   | 1     | 0.7   | 3      | 0.8   | -  | - | 2   | 1.8   | 21    | 1.5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1     | 0.7   | -      | -     | -  | - | -   | -     | 1     | 0.1   |
|                                 | 보육교직원                     | 5      | 1.0   | 5      | 1.7   | -     | -     | -      | -     | -  | - | -   | -     | 10    | 0.7   |
|                                 | 초·중·고 교직원 등               | 8      | 1.7   | 8      | 2.8   | -     | -     | -      | -     | -  | - | -   | -     | 16    | 1.1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1      | 0.2   | 1      | 0.3   | -     | -     | -      | -     | -  | - | -   | -     | 2     | 0.1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br>보호시설 종사자 등  | -      | -     | 1      | 0.3   | -     | -     | -      | -     | -  | - | -   | -     | 1     | 0.1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     | -     | -     | 4      | 1.1   | -  | - | 1   | 0.9   | 5     | 0.4   |
|                                 | 소계                        | 106    | 22.0  | 101    | 34.9  | 12    | 8.1   | 69     | 18.9  | -  | - | 59  | 51.8  | 347   | 24.8  |
| 신고<br>의무자가<br>아닌<br>유관기관<br>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1      | 0.2   | -      | -     | 1     | 0.7   | -      | -     | -  | - | -   | -     | 2     | 0.1   |
|                                 | 의료기관 종사자                  | 1      | 0.2   | -      | -     | -     | -     | -      | -     | -  | - | -   | -     | 1     | 0.1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종사자            | 4      | 0.8   | 8      | 2.8   | 1     | 0.7   | 3      | 0.8   | -  | - | -   | -     | 16    | 1.1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2      | 0.4   | -      | -     | -     | -     | -      | -     | -  | - | -   | -     | 2     | 0.1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1      | 0.3   | -  | - | -   | -     | 1     | 0.1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1      | 0.2   | 1      | 0.3   | 2     | 1.3   | -      | -     | -  | - | -   | -     | 4     | 0.3   |
|                                 | 소계                        | 9      | 1.9   | 9      | 3.1   | 4     | 2.7   | 4      | 1.1   | -  | - | -   | -     | 26    | 1.9   |
|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1   | 0.9   | 1     | 0.1   |
| 파악 안 됨                          |                           | -      | -     | -      | -     | 2     | 1.3   | 3      | 0.8   | -  | - | -   | -     | 5     | 0.4   |
| 계                               |                           | 482    | 100.0 | 289    | 100.0 | 149   | 100.0 | 366    | 100.0 | -  | - | 114 | 100.0 | 1,400 | 100.0 |

##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우선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1.9%, 경제적 착취 19.3%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 31.0%, 경제적 착취 29.6%, 성적 학대 20.4%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일하는 곳)의 경우 경제적 착취 38.5%, 정서적 학대 28.2%, 성적 학대 16.7%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 32.8%, 정서적 학대 28.3%, 방임 27.3%로 나타났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상업시설은 경제적 착취 62.0%, 60.6%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장소에서는 신체적 학대 39.1%, 경제적 착취 34.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7]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표 5-22]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 구분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계     |       |
|-----------------|-------------|--------|------|--------|------|-------|-------|--------|-------|----|---|-----|------|-------|-------|
| 피해장애인 거주지       |             | 249    | 44.1 | 124    | 21.9 | 40    | 7.1   | 109    | 19.3  | —  | — | 43  | 7.6  | 565   | 100.0 |
| 학대행위자 거주지       |             | 44     | 31.0 | 17     | 12.0 | 29    | 20.4  | 42     | 29.6  | —  | — | 10  | 7.0  | 142   | 100.0 |
| 기타 거주지          |             | 8      | 28.6 | 3      | 10.7 | 6     | 21.4  | 11     | 39.3  | —  | — | —   | —    | 28    | 100.0 |
| 직장(일하는 곳)       |             | 12     | 15.4 | 22     | 28.2 | 13    | 16.7  | 30     | 38.5  | —  | — | 1   | 1.3  | 78    | 100.0 |
| 교육기관            |             | 17     | 54.8 | 14     | 45.2 | —     | —     | —      | —     | —  | — | —   | —    | 31    | 100.0 |
| 일반 의료기관         |             | 1      | 16.7 | 2      | 33.3 | 1     | 16.7  | 2      | 33.3  | —  | — | —   | —    | 6     | 100.0 |
| 정신 의료기관         |             | 1      | 25.0 | —      | —    | 2     | 50.0  | 1      | 25.0  | —  | — | —   | —    | 4     | 100.0 |
| 장애인<br>복지<br>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65     | 32.8 | 56     | 28.3 | 14    | 7.1   | 9      | 4.5   | —  | — | 54  | 27.3 | 198   | 100.0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9      | 42.9 | 7      | 33.3 | 5     | 23.8  | —      | —     | —  | — | —   | —    | 21    | 100.0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     | 12.7 | 18     | 22.8 | 2     | 2.5   | 49     | 62.0  | —  | — | —   | —    | 79    | 100.0 |
|                 | 소계          | 84     | 28.2 | 81     | 27.2 | 21    | 7.0   | 58     | 19.5  | —  | — | 54  | 18.1 | 298   | 100.0 |
| 보호시설(쉼터)        |             | —      | —    | 1      | 50.0 | —     | —     | 1      | 50.0  | —  | — | —   | —    | 2     | 100.0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1      | 16.7 | 3      | 50.0 | 1     | 16.7  | 1      | 16.7  | —  | — | —   | —    | 6     | 100.0 |
| 정신재활시설          |             | —      | —    | —      | —    | 1     | 100.0 | —      | —     | —  | — | —   | —    | 1     | 100.0 |
| 아동관련시설          |             | 10     | 62.5 | 5      | 31.3 | —     | —     | 1      | 6.3   | —  | — | —   | —    | 16    | 100.0 |
| 노인관련시설          |             | —      | —    | —      | —    | —     | —     | 4      | 66.7  | —  | — | 2   | 33.3 | 6     | 100.0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3      | 33.3 | 2      | 22.2 | 3     | 33.3  | 1      | 11.1  | —  | — | —   | —    | 9     | 100.0 |
| 종교시설            |             | 1      | 25.0 | 1      | 25.0 | —     | —     | 2      | 50.0  | —  | — | —   | —    | 4     | 100.0 |
| 미신고시설           |             | 4      | 13.8 | —      | —    | —     | —     | 22     | 75.9  | —  | — | 3   | 10.3 | 29    | 100.0 |
| 온라인             |             | —      | —    | 4      | 25.0 | 4     | 25.0  | 8      | 50.0  | —  | — | —   | —    | 16    | 100.0 |
| 상업시설            |             | 11     | 16.7 | 4      | 6.1  | 11    | 16.7  | 40     | 60.6  | —  | — | —   | —    | 66    | 100.0 |
| 기타              |             | 36     | 39.1 | 6      | 6.5  | 17    | 18.5  | 32     | 34.8  | —  | — | 1   | 1.1  | 92    | 100.0 |
| 파악 안 됨          |             | —      | —    | —      | —    | —     | —     | 1      | 100.0 | —  | — | —   | —    | 1     | 100.0 |
| 계               |             | 482    | 34.4 | 289    | 20.6 | 149   | 10.6  | 366    | 26.1  | —  | — | 114 | 8.1  | 1,400 | 100.0 |

##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전체 학대사례 1,124건의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가족 및 친인척’이 72.3%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부(父)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각각 14.9%, 모(母) 11.7%, 그 외 친척 8.0%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 거주지에서는 ‘타인’이 57.9%로 높았으며,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2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동거인 19.6%, 부(父) 10.3%, 모(母) 8.4%, 배우자 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일하는 곳)의 경우 ‘타인’이 77.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 고용주가 43.1%,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3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94.4%로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업시설의 경우 ‘타인’이 89.3%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4.6%, 모르는 사람 3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장소 역시 타인이 84.3%를 차지했으며 그중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3]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 구분                              |                            | 피해 장애인<br>거주지 |       | 학대<br>행위자<br>거주지 |       | 기타<br>거주지 |       | 직장<br>(일하는<br>곳) |       | 교육<br>기관 |       | 일반<br>의료<br>기관 |       | 정신<br>의료<br>기관 |       | 장애인<br>거주<br>시설 |       | 장애인<br>지역사회<br>재활시설 |       | 장애인<br>직업재활<br>시설 |       | 보호<br>시설<br>(쉼터) |       | 그 외<br>장애인<br>지원기관 |       |       |
|---------------------------------|----------------------------|---------------|-------|------------------|-------|-----------|-------|------------------|-------|----------|-------|----------------|-------|----------------|-------|-----------------|-------|---------------------|-------|-------------------|-------|------------------|-------|--------------------|-------|-------|
| 가족<br>및<br>친인척                  | 배우자                        | 69            | 14.9  | 8                | 7.5   | 1         |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 114           | 24.7  | 11               | 10.3  | 4         | 17.4  | 1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                          | 54            | 11.7  | 9                | 8.4   | 1         | 4.3   | -                | -     | -        | -     | 1              | 16.7  | -              | -     | -               | -     | 1                   | 6.3   | -                 | -     | -                | -     | -                  | -     | -     |
|                                 | 조부모                        | 5             | 1.1   | 2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 19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제자매 및<br>그의 배우자           | 36            | 7.8   | 5                | 4.7   | 2         | 8.7   | -                | -     | -        | -     | 2              | 3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외 친척                     | 37            | 8.0   | 4                | 3.7   | 2         | 8.7   | 2                |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334           | 72.3  | 39               | 36.4  | 10        | 43.5  | 3                | 5.2   | -        | -     | 3              | 50.0  | -              | -     | -               | -     | 1                   | 6.3   | -                 | -     | -                | -     | -                  | -     | -     |
| 타인                              | 동거인                        | 14            | 3.0   | 21               | 19.6  | -         | -     | -                | -     | -        | -     | -              | -     | -              | -     | 7               | 4.9   | -                   | -     | -                 | -     | -                | -     | -                  | -     | -     |
|                                 | 이웃                         | 16            | 3.5   | 6                | 5.6   | -         | -     | 1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고 지내는<br>사람(지인)           | 69            | 14.9  | 29               | 27.1  | 8         | 34.8  | 18               | 31.0  | 7        | 28.0  | -              | -     | 2              | 50.0  | 1               | 0.7   | 4                   | 25.0  | 1                 | 1.6   | 1                | 50.0  | -                  | -     | -     |
|                                 | 고용주                        | 2             | 0.4   | -                | -     | -         | -     | 25               | 43.1  | -        | -     | -              | -     | -              | -     | -               | -     | -                   | -     | 1                 | 1.6   | -                | -     | -                  | -     | -     |
|                                 | 모르는 사람                     | 12            | 2.6   | 6                | 5.6   | 4         | 17.4  | 1                | 1.7   | 2        | 8.0   | 1              | 16.7  | 1              |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13           | 24.5  | 62               | 57.9  | 12        | 52.2  | 45               | 77.6  | 9        | 36.0  | 1              | 16.7  | 3              | 75.0  | 8               | 5.6   | 4                   | 25.0  | 2                 | 3.2   | 1                | 50.0  | -                  | -     | -     |
| 신고<br>의무자인<br>기관<br>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 2                | 1.9   | -         | -     | 2                | 3.4   | -        | -     | 1              | 16.7  | -              | -     | 135             | 94.4  | 9                   | 56.3  | 60                | 96.8  | -                | -     | -                  | -     | -     |
|                                 |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br>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11            | 2.4   | 1                | 0.9   | -         | -     | -                | -     | -        | -     | -              | -     | -              | -     | -               | 2     | 12.5                | -     | -                 | -     | -                | -     | 1                  | 20.0  |       |
|                                 | 의료인 및<br>의료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1              | 1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육교직원                      | -             | -     | -                | -     | -         | -     | -                | -     | 1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중·고 교직원 등                | -             | -     | -                | -     | -         | -     | -                | -     | 13       | 5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원 및 교습소<br>종사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br>보호시설 종사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0.0  | -                  | -     |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br>의무자가<br>아닌<br>유관기관<br>종사자 | 소계                         | 11            | 2.4   | 3                | 2.8   | -         | -     | 2                | 3.4   | 14       | 56.0  | 2              | 33.3  | -              | -     | 135             | 94.4  | 11                  | 68.8  | 60                | 96.8  | 1                | 50.0  | 1                  | 20.0  |       |
|                                 | 교육기관 종사자                   | -             | -     | 1                | 0.9   | -         | -     | -                | -     | 1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br>종사자         | 1             | 0.2   | 1                | 0.9   | -         | -     | 5                |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80.0  |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1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1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복지관련기관<br>종사자           | -             | -     | -                | -     | -         | -     | 2                |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                          | 0.4           | 2     | 1.9              | -     | -         | 7     | 12.1             | 2     | 8.0      | -     | -              | 1     | 25.0           | -     | -               | -     | -                   | -     | -                 | -     | -                | -     | 4                  | 80.0  |       |
| 본인                              |                            | 1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악 안 됨                          |                            | 1             | 0.2   | 1                | 0.9   | 1         | 4.3   | 1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462           | 100.0 | 107              | 100.0 | 23        | 100.0 | 58               | 100.0 | 25       | 100.0 | 6              | 100.0 | 4              | 100.0 | 143             | 100.0 | 16                  | 100.0 | 62                | 100.0 | 2                | 100.0 | 5                  | 100.0 | 100.0 |

| 구분                              |                            | 정신<br>재활<br>시설 |       | 아동<br>관련<br>시설 |       | 노인<br>관련<br>시설 |       | 기타<br>복지<br>관련시설 |       | 종교<br>시설 |       | 미신고<br>시설 |       | 온라인 |       | 상업<br>시설 |       | 기타 |       | 파악<br>안 됨 |       | 계     |       |
|---------------------------------|----------------------------|----------------|-------|----------------|-------|----------------|-------|------------------|-------|----------|-------|-----------|-------|-----|-------|----------|-------|----|-------|-----------|-------|-------|-------|
| 가족<br>및<br>친인척                  |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 6.9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6   | 2  | 2.4   | -         | -     | 134   | 11.9  |
|                                 |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8   | 3  | 3.6   | -         | -     | 70    | 6.2   |
|                                 | 조부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0.6   |
|                                 |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4   | -  | -     | -         | -     | 22    | 2.0   |
|                                 | 형제자매 및<br>그의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4.8   | 1         | 100.0 | 50    | 4.4   |
|                                 | 그 외 친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 -         | -     | 46    | 4.1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10.7  | 10 | 12.0  | 1         | 100.0 | 407   | 36.2  |
| 타인                              | 동거인                        | -              | -     | 2              | 18.2  | -              | -     | -                | -     | 2        | 66.7  | 19        | 67.9  | -   | -     | 2        | 3.6   | 2  | 2.4   | -         | -     | 69    | 6.1   |
|                                 | 이웃                         | -              | -     | -              | -     | -              | -     | 1                | 12.5  | -        | -     | -         | -     | -   | -     | -        | -     | 5  | 6.0   | -         | -     | 29    | 2.6   |
|                                 | 알고 지내는<br>사람(지인)           | 1              | 100.0 | -              | -     | -              | -     | 3                | 37.5  | 1        | 33.3  | 8         | 28.6  | 4   | 26.7  | 25       | 44.6  | 53 | 63.9  | -         | -     | 235   | 20.9  |
|                                 | 고용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7.1   | 1  | 1.2   | -         | -     | 33    | 2.9   |
|                                 | 모르는 사람                     | -              | -     | -              | -     | -              | -     | 1                | 12.5  | -        | -     | -         | -     | 10  | 66.7  | 19       | 33.9  | 9  | 10.8  | -         | -     | 66    | 5.9   |
|                                 | 소계                         | 1              | 100.0 | 2              | 18.2  | -              | -     | 5                | 62.5  | 3        | 100.0 | 27        | 96.4  | 14  | 93.3  | 50       | 89.3  | 70 | 84.3  | -         | -     | 432   | 38.4  |
| 신고<br>의무자인<br>기관<br>중사자         | 사회복지시설 중사자                 | -              | -     | 3              | 27.3  | 1              | 20.0  | 2                | 25.0  | -        | -     | 1         | 3.6   | -   | -     | -        | -     | -  | -     | -         | -     | 216   | 19.2  |
|                                 |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br>활동지원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2.4   | -         | -     | 17    | 1.5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1   |
|                                 | 보육교직원                      | -              | -     | 4              | 3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0.4   |
|                                 | 초·중·고 교직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1.2   |
|                                 | 학원 및 교습소 중사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 -         | -     | 1     | 0.1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br>보호시설 중사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1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     | 4              | 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0.4   |
|                                 | 소계                         | -              | -     | 7              | 63.6  | 5              | 100.0 | 2                | 25.0  | -        | -     | 1         | 3.6   | -   | -     | -        | -     | 3  | 3.6   | -         | -     | 258   | 23.0  |
| 신고<br>의무자가<br>아닌<br>유관기관<br>중사자 | 교육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0.2   |
|                                 | 의료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1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br>중사자         | -              | -     | 1              | 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1.1   |
|                                 | 아동관련기관 중사자                 | -              | -     | 1              | 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0.2   |
|                                 | 노인관련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1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1                | 12.5  | -        | -     | -         | -     | -   | -     | -        | -     | -  | -     | -         | -     | 3     | 0.3   |
|                                 | 소계                         | -              | -     | 2              | 18.2  | -              | -     | 1                | 12.5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1.9   |
|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1   |
| 파악 안 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7   | -        | -     | -  | -     | -         | -     | 5     | 0.4   |
| 계                               |                            | 1              | 100.0 | 11             | 100.0 | 5              | 100.0 | 8                | 100.0 | 3        | 100.0 | 28        | 100.0 | 15  | 100.0 | 56       | 100.0 | 83 | 100.0 | 1         | 100.0 | 1,124 | 100.0 |

##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학대사례 1,400건을 기준으로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을 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는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는 3년 이상 장기간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았고 방임은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가 많았다.

[표 5-24]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계     |       |
|-----------|--------|-------|--------|-------|-------|-------|--------|-------|----|---|-----|-------|-------|-------|
| 3개월 미만    | 215    | 44.6  | 91     | 31.5  | 81    | 54.4  | 65     | 17.8  | -  | - | 24  | 21.1  | 476   | 34.0  |
| 3~6개월 미만  | 53     | 11.0  | 34     | 11.8  | 10    | 6.7   | 35     | 9.6   | -  | - | 12  | 10.5  | 144   | 10.3  |
| 6~12개월 미만 | 40     | 8.3   | 18     | 6.2   | 15    | 10.1  | 38     | 10.4  | -  | - | 13  | 11.4  | 124   | 8.9   |
| 1~3년 미만   | 68     | 14.1  | 58     | 20.1  | 19    | 12.8  | 67     | 18.3  | -  | - | 27  | 23.7  | 239   | 17.1  |
| 3~5년 미만   | 40     | 8.3   | 30     | 10.4  | 12    | 8.1   | 57     | 15.6  | -  | - | 19  | 16.7  | 158   | 11.3  |
| 5~10년 미만  | 24     | 5.0   | 36     | 12.5  | 6     | 4.0   | 58     | 15.8  | -  | - | 7   | 6.1   | 131   | 9.4   |
| 10년 이상    | 42     | 8.7   | 22     | 7.6   | 6     | 4.0   | 46     | 12.6  | -  | - | 12  | 10.5  | 128   | 9.1   |
| 계         | 482    | 100.0 | 289    | 100.0 | 149   | 100.0 | 366    | 100.0 | -  | - | 114 | 100.0 | 1,400 | 100.0 |

## 4. 응급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장애인을 응급조치하여 쉼터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는 주로 쉼터, 의료기관, 기타 장소를 이용한다. 쉼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애인·피해장애아동 쉼터 뿐만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타 장소는 자립홈, 체험홈, 자립지원주택 등 자립을 위한 시설이나 가족 및 친인척의 집과 같은 장소 등이다.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학대사례 1,124건에 대해 125건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체 학대사례의 11.1%로 전년도(103건, 10.2%)와 비교해 소폭 증가하였다.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999건)의 이유를 보면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가 935건(9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당사자 거부’ 43건(4.3%), ‘조치장소 부재’ 16건(1.6%), ‘가족 및 보호자의 거부’ 5건(0.5%) 순이었다.

응급조치 시 쉼터를 이용한 경우는 89건(7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64.1%, 66건) 대비 34.8%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기타 장소 16.0%, 의료기관 7.2%, 거주시설 5.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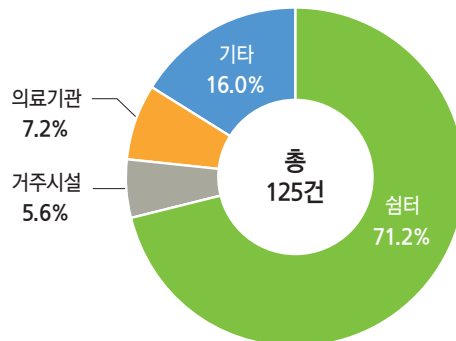
[표 5-25] 응급조치

(단위: 건, %)

| 쉼터   | 거주시설 | 의료기관 | 기타   | 계     |
|------|------|------|------|-------|
| 89   | 7    | 9    | 20   | 125   |
| 71.2 | 5.6  | 7.2  | 16.0 | 100.0 |

[그림 5-18] 응급조치

(단위: %)



##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수 회 지원할 수 있다.

2021년 전체 학대사례 1,124건에 대해 12,411회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중 피해자 및 그 가족, 관련자 등에게 이뤄지는 상담지원이 7,241회(58.3%)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2,135회(17.2%), 복지지원 992회(8.0%), 거주지원 823회(6.6%)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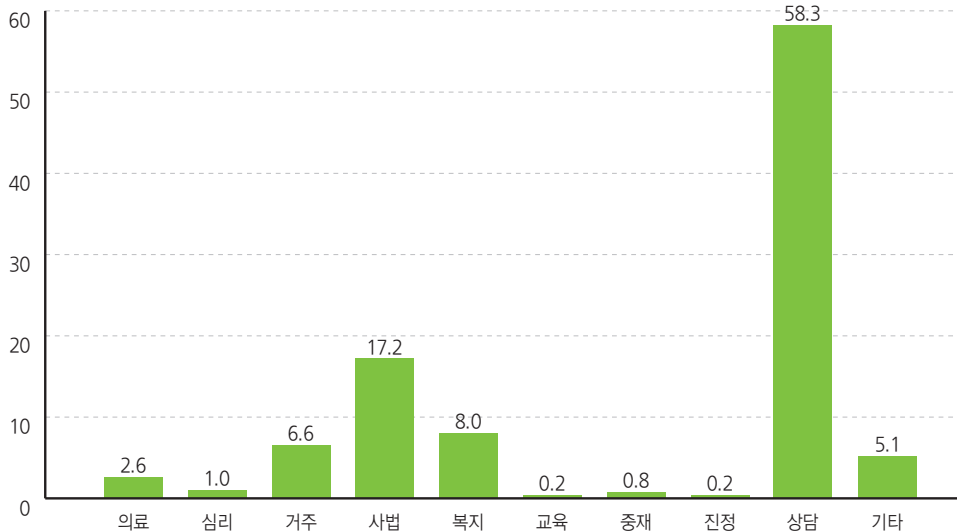
[표 5-26]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 의료  | 심리  | 거주  | 사법    | 복지  | 교육  | 중재  | 진정  | 상담    | 기타  | 계      |
|-----|-----|-----|-------|-----|-----|-----|-----|-------|-----|--------|
| 326 | 127 | 823 | 2,135 | 992 | 21  | 94  | 25  | 7,241 | 627 | 12,411 |
| 2.6 | 1.0 | 6.6 | 17.2  | 8.0 | 0.2 | 0.8 | 0.2 | 58.3  | 5.1 | 100.0  |

[그림 5-19]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



##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 1)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의 치료, 피해의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지원 326회 중 기타지원 140회(42.9%), 검진·진단 129회(39.6%), 통원치료 34회(10.4%) 등을 실시하였다. 의료지원 중 기타지원은 각 유형의 의료지원이 피해장애인에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거나 의료기관 동행, 관련 신청서 작성, 진행경과 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말한다.

[표 5-27]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단위: 회, %)

| 응급의료조치 | 검진·진단 | 통원치료 | 입원치료 | 기타   | 계     |
|--------|-------|------|------|------|-------|
| 11     | 129   | 34   | 12   | 140  | 326   |
| 3.4    | 39.6  | 10.4 | 3.7  | 42.9 | 100.0 |

### 2) 심리지원

심리지원은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지원이다. 심리지원은 외부 전문 기관에 연계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심리지원 127회 중 심리상담 및 치료 59회(46.5%), 기타지원 57회(44.9%), 심리평가 및 진단 11회(8.7%) 실시하였다.

[표 5-28]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단위: 회, %)

| 심리평가 및 진단 | 심리상담 및 치료 | 기타   | 계     |
|-----------|-----------|------|-------|
| 11        | 59        | 57   | 127   |
| 8.7       | 46.5      | 44.9 | 100.0 |

### 3) 거주지원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지원으로 쉼터 입소와 같은 응급보호,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지원이 있다. 거주지원은 단기 또는 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지원은 총 823회 실시하였으며, 이중 기타지원이 665회(80.8%), 응급보호 81회(9.8%), 단기거주지원(재가) 39회(4.7%), 장기거주지원(재가) 16회(1.9%), 단기거주지원(시설) 14회(1.7%), 장기거주지원(시설) 8회(1.0%)로 나타났다.

[표 5-29]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단위: 회, %)

| 응급보호 | 단기거주지원<br>(재가) | 단기거주지원<br>(시설) | 장기거주지원<br>(재가) | 장기거주지원<br>(시설) | 기타   | 계     |
|------|----------------|----------------|----------------|----------------|------|-------|
| 81   | 39             | 14             | 16             | 8              | 665  | 823   |
| 9.8  | 4.7            | 1.7            | 1.9            | 1.0            | 80.8 | 100.0 |

### 4) 사법지원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에 관한 지원이다. 세부적으로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등이 있다. 사법지원은 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에 구성된 법률지원단이나 협력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연계 및 자문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사법지원은 2,135회 실시하였으며, 전년도(1,692회)보다 26.2% 증가했다. 사법지원 중 기타지원이 1,218회(57.0%)로 가장 많았고, 절차지원 627회(29.4%), 법률상담 108회(5.1%), 고발 87회(4.1%), 수사의뢰 59회(2.8%) 등의 순이었다.

[표 5-30]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 고발  | 고소대리 | 수사의뢰 | 법률상담 | 절차지원 | 소송구조 | 후견인 선임 | 노동청 진정 | 기타    | 계     |
|-----|------|------|------|------|------|--------|--------|-------|-------|
| 87  | 8    | 59   | 108  | 627  | 12   | 7      | 9      | 1,218 | 2,135 |
| 4.1 | 0.4  | 2.8  | 5.1  | 29.4 | 0.6  | 0.3    | 0.4    | 57.0  | 100.0 |

### 5) 복지지원

복지지원은 장애인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한다.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민간복지자원 137회(13.8%), 공공복지자원 113회(11.4%), 장애인 등록지원 38회(3.8%) 실시하였다.

복지지원 중 기타지원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거나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보탐색, 각종 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유관기관과의 협의, 진행경과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표 5-31]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단위: 회, %)

| 장애인 등록 | 공공복지자원 | 민간복지자원 | 기타   | 계     |
|--------|--------|--------|------|-------|
| 38     | 113    | 137    | 704  | 992   |
| 3.8    | 11.4   | 13.8   | 71.0 | 100.0 |

### 6)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지원으로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위자 대상 교육 16회(76.2%), 피해자 대상 교육 4회(19.0%), 가족 대상 교육 1회(4.8%) 실시하였다.

[표 5-32] 피해장애인 교육지원 유형

(단위: 회, %)

| 피해자 대상 | 가족 대상 | 행위자 대상 | 관련자 대상 | 계     |
|--------|-------|--------|--------|-------|
| 4      | 1     | 16     | —      | 21    |
| 19.0   | 4.8   | 76.2   | —      | 100.0 |

### 7) 중재지원

중재란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하는 것이다. 중재지원 94회 중 중재를 실시한 횟수는 60회(63.8%)로 나타났다.

[표 5-33]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단위: 회, %)

| 중재   | 기타   | 계     |
|------|------|-------|
| 60   | 34   | 94    |
| 63.8 | 36.2 | 100.0 |



### 8) 진정지원

진정은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는 형태로 이뤄진다. 기타기관을 대상으로 진정한 경우는 8회(32.0%)였다.

[표 5-34]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단위: 회, %)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기관 | 기타   | 계     |
|---------|---------|------|------|-------|
| 3       | 1       | 8    | 13   | 25    |
| 12.0    | 4.0     | 32.0 | 52.0 | 100.0 |

##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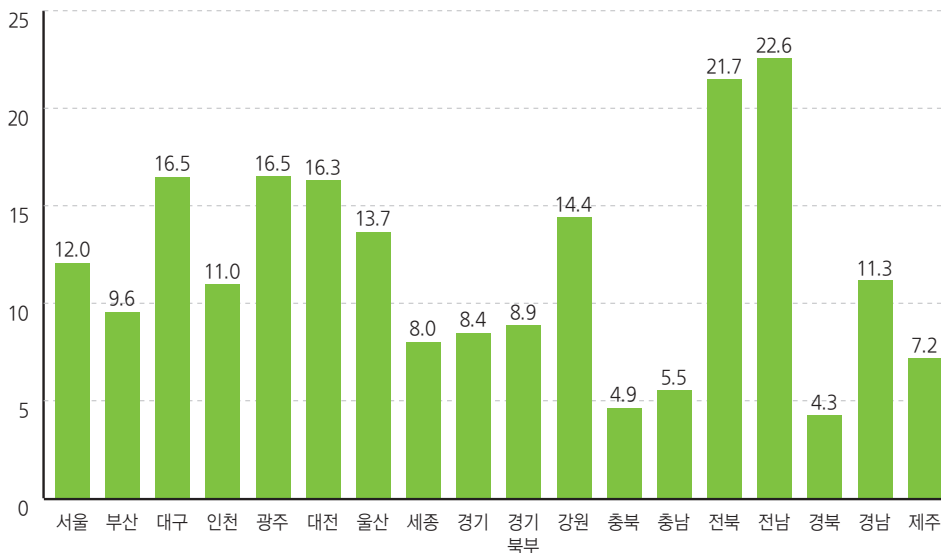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 학대사례(1,124건)와 2021년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학대사례(494건) 총 1,618건에 대해 18,16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사례별 평균 11.2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년도(16,291회, 사례별 평균 12.3회)와 비교하면 상담 및 지원 횟수는 11.5% 증가했으나,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8.7% 감소하였다. 전체 학대의심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7.4회)와 비교하면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3.8회 더 실시하였다.

지역 및 기관별로 보면 전남이 사례별 평균 22.6회로 가장 많은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전북 21.7회, 대구·광주 각각 16.5회, 대전 16.3회 등의 순이었다.

[그림 5-20]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표 5-35]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 구분 |      | 2021년 이전 |               | 2021년 |               | 계     |               | 사례별 상담<br>및 지원 횟수 |
|----|------|----------|---------------|-------|---------------|-------|---------------|-------------------|
|    |      | 학대사례     | 상담 및<br>지원 횟수 | 학대사례  | 상담 및<br>지원 횟수 | 학대사례  | 상담 및<br>지원 횟수 |                   |
| 서울 |      | 43       | 528           | 100   | 1,191         | 143   | 1,719         | 12.0              |
| 부산 |      | 29       | 372           | 86    | 728           | 115   | 1,100         | 9.6               |
| 대구 |      | 25       | 211           | 22    | 564           | 47    | 775           | 16.5              |
| 인천 |      | 16       | 159           | 89    | 997           | 105   | 1,156         | 11.0              |
| 광주 |      | 14       | 150           | 48    | 871           | 62    | 1,021         | 16.5              |
| 대전 |      | 13       | 169           | 37    | 647           | 50    | 816           | 16.3              |
| 울산 |      | 20       | 196           | 53    | 806           | 73    | 1,002         | 13.7              |
| 세종 |      | 15       | 137           | 29    | 217           | 44    | 354           | 8.0               |
| 경기 | 경기   | 77       | 686           | 126   | 1,012         | 203   | 1,698         | 8.4               |
|    | 경기북부 | 15       | 206           | 94    | 764           | 109   | 970           | 8.9               |
|    | 소계   | 92       | 892           | 220   | 1,776         | 312   | 2,668         | 8.6               |
| 강원 |      | 35       | 450           | 64    | 972           | 99    | 1,422         | 14.4              |
| 충북 |      | 17       | 86            | 113   | 549           | 130   | 635           | 4.9               |
| 충남 |      | 28       | 181           | 52    | 257           | 80    | 438           | 5.5               |
| 전북 |      | 33       | 480           | 65    | 1,650         | 98    | 2,130         | 21.7              |
| 전남 |      | 19       | 807           | 35    | 414           | 54    | 1,221         | 22.6              |
| 경북 |      | 27       | 188           | 39    | 99            | 66    | 287           | 4.3               |
| 경남 |      | 53       | 637           | 46    | 485           | 99    | 1,122         | 11.3              |
| 제주 |      | 15       | 107           | 26    | 188           | 41    | 295           | 7.2               |
| 합계 |      | 494      | 5,750         | 1,124 | 12,411        | 1,618 | 18,161        | 11.2              |

## 6. 사례종결

전체 학대사례 1,124건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결된 사례는 552건으로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49.1%였다.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61.8%)과 비교하면 학대사례의 지원이 더 장기간 진행되었다.

[표 5-36] 사례종결

(단위: 건, %)

| 학대사례  | 종결사례 |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
|-------|------|-------------|
| 1,124 | 552  | 49.1        |

## 7. 사후 모니터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사례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동안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과의 직접 소통하여 안전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장애인이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사망, 수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타 지역으로 사례가 이관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21년 종결된 학대사례 552건 중 298건(54.0%)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후모니터링 횟수는 총 889회로 사례별 평균 3.0회로 나타났다.

[표 5-37] 사후 모니터링

(단위: 건, %, 회)

|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 | 사후 모니터링 실시 횟수 |
|---------------|-------------------|---------------|
| 298           | 54.0              | 889           |





# 6

## 특성별 학대사례 분석 결과

---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 장애아동 학대사례
3. 노동력 착취사례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 제6장

## 특성별 학대사례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장애아동 학대,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 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 및 이용하는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분석하였다.

##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1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644,700명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은 255,207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2021년 전체 학대사례의 74.1%(833건)<sup>5)</sup>로 전년도 702건과 비교해 18.7% 증가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대 고위험군이다.

5)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에 또는 부장애가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주장애는 지적장애 761건, 자폐성장애 46건이며, 부장애는 지적장애 25건, 자폐성장애 1건이다.

##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지역 및 기관별 현황을 보면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91명(1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88명(10.6%),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86명(10.3%),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69명(8.3%)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9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충북이 4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인천(35명), 서울·경기북부(각각 13명), 경기·전북(각각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단위: 명, 건)

| 구분 |      | 지적장애인 |       | 자폐성장아인 |       | 계   |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서울 |      | 85    | 10.8  | 3      | 6.4   | 88  | 10.6  |
| 부산 |      | 53    | 6.7   | 3      | 6.4   | 56  | 6.7   |
| 대구 |      | 16    | 2.0   | 1      | 2.1   | 17  | 2.0   |
| 인천 |      | 55    | 7.0   | 12     | 25.5  | 67  | 8.0   |
| 광주 |      | 36    | 4.6   | —      | —     | 36  | 4.3   |
| 대전 |      | 25    | 3.2   | 4      | 8.5   | 29  | 3.5   |
| 울산 |      | 41    | 5.2   | 3      | 6.4   | 44  | 5.3   |
| 세종 |      | 18    | 2.3   | —      | —     | 18  | 2.2   |
| 경기 | 경기   | 86    | 10.9  | 5      | 10.6  | 91  | 10.9  |
|    | 경기북부 | 66    | 8.4   | 3      | 6.4   | 69  | 8.3   |
|    | 소계   | 152   | 19.3  | 8      | 17.0  | 160 | 19.2  |
| 강원 |      | 42    | 5.3   | 1      | 2.1   | 43  | 5.2   |
| 충북 |      | 83    | 10.6  | 3      | 6.4   | 86  | 10.3  |
| 충남 |      | 36    | 4.6   | 2      | 4.3   | 38  | 4.6   |
| 전북 |      | 45    | 5.7   | 3      | 6.4   | 48  | 5.8   |
| 전남 |      | 26    | 3.3   | 2      | 4.3   | 28  | 3.4   |
| 경북 |      | 29    | 3.7   | 1      | 2.1   | 30  | 3.6   |
| 경남 |      | 28    | 3.6   | 1      | 2.1   | 29  | 3.5   |
| 제주 |      | 16    | 2.0   | —      | —     | 16  | 1.9   |
| 계  |      | 786   | 100.0 | 47     | 100.0 | 833 | 100.0 |

##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8.4%(320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61.6%(513건)이었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0.3%(169건)로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0%(67건), 초·중·고 교직원 3.8%(32건),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4%(28건) 등의 순으로 신고하였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16.0%(133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타인 9.8%(82건), 부모 9.0%(75건) 순이었다.

학대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이 학대를 인지하여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7.3%(61건)로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피해장애인 본인 신고율 13.2%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표 6-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 구분    |                         | 건수  | 비율   |
|-------|-------------------------|-----|------|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67  | 8.0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169 | 20.3 |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 —   | —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28  | 3.4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2   | 0.2  |
|       | 의료기사                    | —   | —    |
|       | 응급구조사                   | —   | —    |
|       | 구급대의 대원                 | —   | —    |
|       |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과 종사자         | 1   | 0.1  |
|       | 보육교직원                   | 1   | 0.1  |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1   | 0.1  |
|       | 초·중·고 교직원 등             | 32  | 3.8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 15  | 1.8  |

| 구분     |                        | 건수  | 비율    |
|--------|------------------------|-----|-------|
| 신고의무자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등 | —   | —     |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 3   | 0.4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1   | 0.1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소계                     | 320 | 38.4  |
| 비신고의무자 | 본인                     | 61  | 7.3   |
|        | 배우자                    | 1   | 0.1   |
|        | 부모                     | 75  | 9.0   |
|        | 자녀                     | 2   | 0.2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1  | 2.5   |
|        | 그 외 친척                 | 17  | 2.0   |
|        | 일반공무원                  | 24  | 2.9   |
|        | 경찰공무원                  | 51  | 6.1   |
|        | 공공기관 종사자               | 3   | 0.4   |
|        | 교육기관 종사자               | 4   | 0.5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133 | 16.0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1   | 0.1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9   | 1.1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23  | 2.8   |
|        | 타인                     | 82  | 9.8   |
|        | 파악 안 됨                 | 6   | 0.7   |
|        | 소계                     | 513 | 61.6  |
| 계      |                        | 833 | 100.0 |

##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1) 성별 및 연령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435명(52.2%)으로 여성 398명(4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달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54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 이하 174명(20.9%), 30대 151명(18.1%)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과 비교하면 남성(50.1%)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30대 이하의 연령대(60.2%)에서 발달장애인의 피해(69.5%)가 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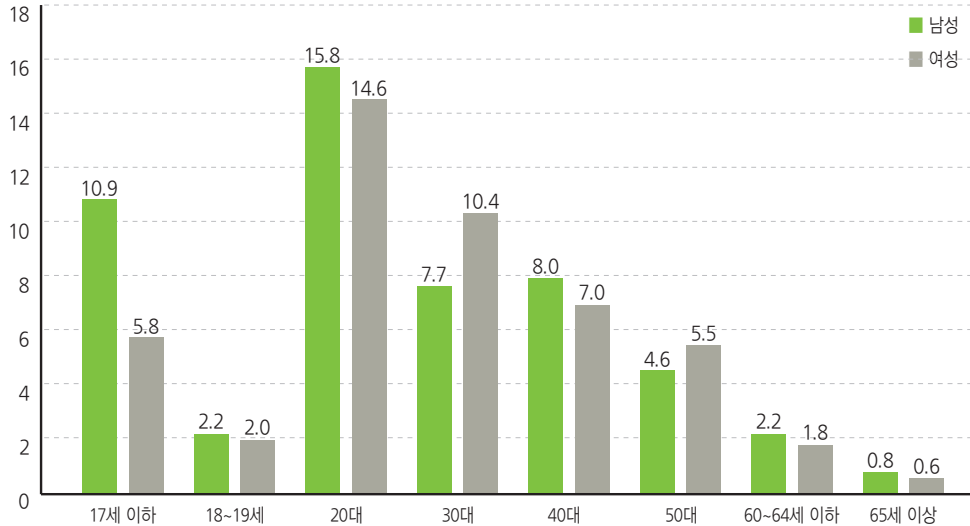
[표 6-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 구분 | 19세 이하 |        |    |     | 20대<br>(20~29세) |      | 30대<br>(30~39세) |      | 40대<br>(40~49세) |      | 50대<br>(50~59세) |      | 60~64세<br>이하 |     | 65세<br>이상 |     | 계   |       |
|----|--------|--------|----|-----|-----------------|------|-----------------|------|-----------------|------|-----------------|------|--------------|-----|-----------|-----|-----|-------|
|    | 17세 이하 | 18~19세 |    |     |                 |      |                 |      |                 |      |                 |      |              |     |           |     |     |       |
| 남성 | 91     | 10.9   | 18 | 2.2 | 132             | 15.8 | 64              | 7.7  | 67              | 8.0  | 38              | 4.6  | 18           | 2.2 | 7         | 0.8 | 435 | 52.2  |
| 여성 | 48     | 5.8    | 17 | 2.0 | 122             | 14.6 | 87              | 10.4 | 58              | 7.0  | 46              | 5.5  | 15           | 1.8 | 5         | 0.6 | 398 | 47.8  |
| 계  | 139    | 16.7   | 35 | 4.2 | 254             | 30.5 | 151             | 18.1 | 125             | 15.0 | 84              | 10.1 | 33           | 4.0 | 12        | 1.4 | 833 | 100.0 |

[그림 6-1]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 2) 거주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 78.9%(657건), 시설 21.1%(176건)로 나타났다.

[표 6-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 재가  |      | 시설  |      | 계   |       |
|-----|------|-----|------|-----|-------|
| 657 | 78.9 | 176 | 21.1 | 833 | 100.0 |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5.8%(465건)로 가장 많았고, 비수급자 41.9%(349건), 차상위수급자 2.3%(19건) 순이었다.

[표 6-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수급자 | 비수급자 | 계     |
|---------|--------|------|-------|
| 465     | 19     | 349  | 833   |
| 55.8    | 2.3    | 41.9 | 100.0 |

## 4) 재학대사례

전체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총 81건(7.2%)이며, 이중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는 84.0%(6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도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39건)와 비교하면 42.6% 증가하였다.

[표 6-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

(단위: 건, %)

| 학대사례  | 학대사례 중 재학대 |     | 재학대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      |
|-------|------------|-----|------------------|------|
| 1,124 | 81         | 7.2 | 68               | 84.0 |

##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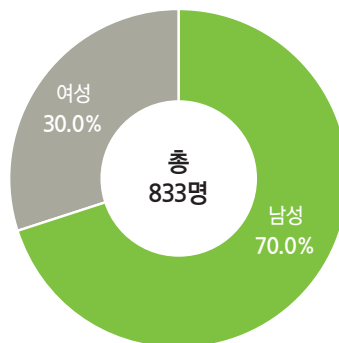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70.0%(583명), 여성이 30.0%(250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 남성  |      | 여성  |      | 계   |       |
|-----|------|-----|------|-----|-------|
| 583 | 70.0 | 250 | 30.0 | 833 | 100.0 |

[그림 6-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 2) 피해 발달장애인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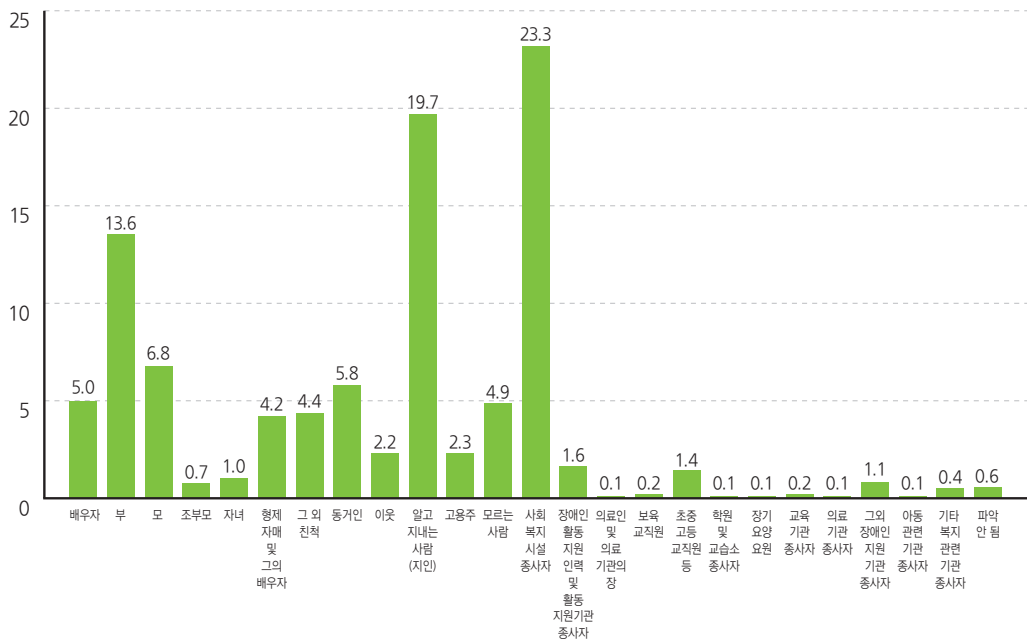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3.3%(194건)로 가장 많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9.7%(164건), 부(父) 13.6%(113건), 모(母) 6.8%(57건), 동거인 5.8%(48건)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와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35.8%(29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타인 34.8%(290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6.9%(224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9%(16건), 파악 안되는 경우 0.6%(5건)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227건, 32.3%)는 31.3%,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176건, 25.1%)는 27.3% 증가했다.

학대행위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 및 친인척 중에서는 부(父)(13.6%), 모(母)(6.8%), 배우자(5.0%) 등의 순이었다. 타인의 경우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9.7%), 동거인(5.8%), 모르는 사람(4.9%) 등의 순이었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3.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1.6%), 초·중·고 교직원(1.4%) 등의 순이었으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1.1%)로 나타났다.

[그림 6-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





[표 6-8]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 관계                    |                        | 건수  | 비율    |
|-----------------------|------------------------|-----|-------|
| 가족 및 친인척              | 배우자                    | 42  | 5.0   |
|                       | 부                      | 113 | 13.6  |
|                       | 모                      | 57  | 6.8   |
|                       | 조부모                    | 6   | 0.7   |
|                       | 자녀                     | 8   | 1.0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5  | 4.2   |
|                       | 그 외 친척                 | 37  | 4.4   |
|                       | 소계                     | 298 | 35.8  |
| 타인                    | 동거인                    | 48  | 5.8   |
|                       | 이웃                     | 18  | 2.2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164 | 19.7  |
|                       | 고용주                    | 19  | 2.3   |
|                       | 모르는 사람                 | 41  | 4.9   |
|                       | 소계                     | 290 | 34.8  |
| 신고의무자인<br>기관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194 | 23.3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13  | 1.6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1   | 0.1   |
|                       | 보육교직원                  | 2   | 0.2   |
|                       | 초·중·고 교직원 등            | 12  | 1.4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1   | 0.1   |
|                       | 장기요양요원                 | 1   | 0.1   |
|                       | 소계                     | 224 | 26.9  |
| 신고의무자가 아닌<br>유관기관 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2   | 0.2   |
|                       | 의료기관 종사자               | 1   | 0.1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9   | 1.1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1   | 0.1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3   | 0.4   |
|                       | 소계                     | 16  | 1.9   |
| 파악 안 됨                |                        | 5   | 0.6   |
| 계                     |                        | 833 | 100.0 |

##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 1) 학대 발생장소

발달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9%(3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5.5%(12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4%(78건), 기타 장소 7.8%(65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7%(56건) 등의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전체 학대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사례(267건)는 24.3%,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114건)는 13.2% 증가했다. 반면 직장(일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례(52건)는 32.7%,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례(52건)는 2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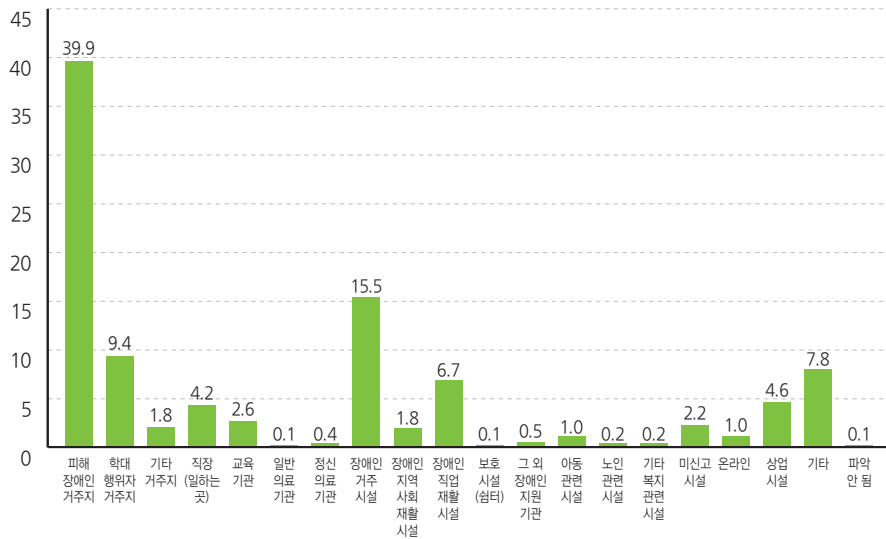
[표 6-9]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 발생장소        |             | 건수  | 비율    |
|-------------|-------------|-----|-------|
| 피해장애인 거주지   |             | 332 | 39.9  |
| 학대행위자 거주지   |             | 78  | 9.4   |
| 기타 거주지      |             | 15  | 1.8   |
| 직장(일하는 곳)   |             | 35  | 4.2   |
| 교육기관        |             | 22  | 2.6   |
| 일반 의료기관     |             | 1   | 0.1   |
| 정신 의료기관     |             | 3   | 0.4   |
| 장애인<br>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129 | 15.5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15  | 1.8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56  | 6.7   |
|             | 소계          | 200 | 24.0  |
| 보호시설(쉼터)    |             | 1   | 0.1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4   | 0.5   |
| 아동관련시설      |             | 8   | 1.0   |
| 노인관련시설      |             | 2   | 0.2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2   | 0.2   |
| 미신고시설       |             | 18  | 2.2   |
| 온라인         |             | 8   | 1.0   |
| 상업시설        |             | 38  | 4.6   |
| 기타          |             | 65  | 7.8   |
| 파악 안 됨      |             | 1   | 0.1   |
| 계           |             | 833 | 100.0 |

[그림 6-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



##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발달장애인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37.5%(312건)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인 경우는 17.2%(143건), 3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경우는 26.9%(224건)로 나타났다. 3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경우 거의 매일(55.3%) 또는 10회 이상(44.5%)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자 5명 중 1명 이상(22.6%)이 거의 매일 학대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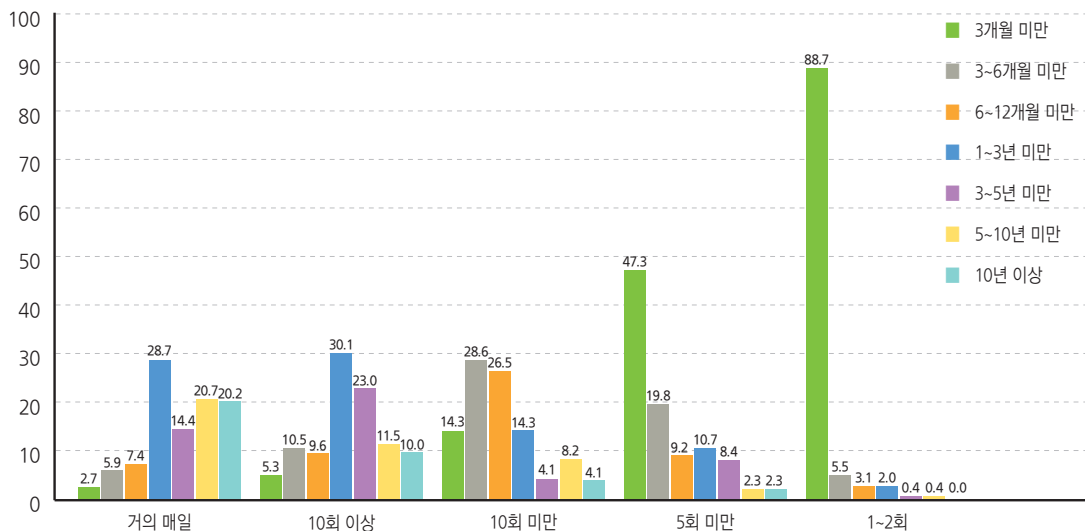
[표 6-10]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 구분       |           | 발생빈도  |       |        |       |        |       |       |       |      |       |     |       |
|----------|-----------|-------|-------|--------|-------|--------|-------|-------|-------|------|-------|-----|-------|
|          |           | 거의 매일 |       | 10회 이상 |       | 10회 미만 |       | 5회 미만 |       | 1~2회 |       | 계   |       |
| 지속<br>기간 | 3개월 미만    | 5     | 2.7   | 11     | 5.3   | 7      | 14.3  | 62    | 47.3  | 227  | 88.7  | 312 | 37.5  |
|          | 3~6개월 미만  | 11    | 5.9   | 22     | 10.5  | 14     | 28.6  | 26    | 19.8  | 14   | 5.5   | 87  | 10.4  |
|          | 6~12개월 미만 | 14    | 7.4   | 20     | 9.6   | 13     | 26.5  | 12    | 9.2   | 8    | 3.1   | 67  | 8.0   |
|          | 1~3년 미만   | 54    | 28.7  | 63     | 30.1  | 7      | 14.3  | 14    | 10.7  | 5    | 2.0   | 143 | 17.2  |
|          | 3~5년 미만   | 27    | 14.4  | 48     | 23.0  | 2      | 4.1   | 11    | 8.4   | 1    | 0.4   | 89  | 10.7  |
|          | 5~10년 미만  | 39    | 20.7  | 24     | 11.5  | 4      | 8.2   | 3     | 2.3   | 1    | 0.4   | 71  | 8.5   |
|          | 10년 이상    | 38    | 20.2  | 21     | 10.0  | 2      | 4.1   | 3     | 2.3   | —    | —     | 64  | 7.7   |
| 계        |           | 188   | 100.0 | 209    | 100.0 | 49     | 100.0 | 131   | 100.0 | 256  | 100.0 | 833 | 100.0 |

[그림 6-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



##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발달장애인의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8.7%(23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4.5%(204건), 중복 학대 20.9%(174건), 정서적 학대 11.3%(94건), 성적 학대 9.2%(77건), 방임 5.4%(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유형의 분포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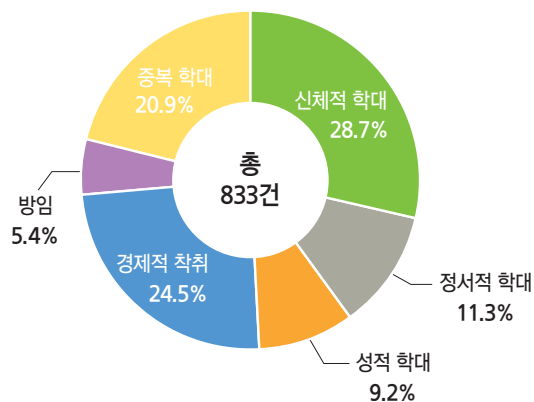
전년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현황인 경제적 착취(25.4%) - 신체적 학대(23.9%) - 중복 학대(23.1%) - 정서적 학대(12.8%) - 성적 학대(10.5%) - 방임(4.3%)과 비교하면 2021년에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의 순위가 바뀌었지만 신체적 학대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증가했고, 경제적 착취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 학대유형   | 건수  | 비율    |
|--------|-----|-------|
| 신체적 학대 | 239 | 28.7  |
| 정서적 학대 | 94  | 11.3  |
| 성적 학대  | 77  | 9.2   |
| 경제적 착취 | 204 | 24.5  |
| 유기     | -   | -     |
| 방임     | 45  | 5.4   |
| 중복 학대  | 174 | 20.9  |
| 계      | 833 | 100.0 |

[그림 6-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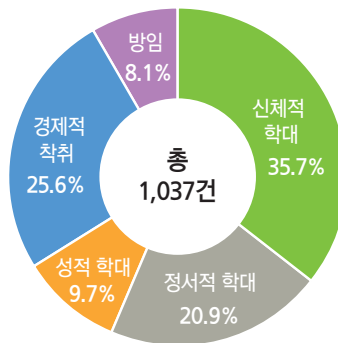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총 833건에서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1,037건이다. 신체적 학대가 35.7%(370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 25.6%(265건), 정서적 학대 20.9%(217건), 성적 학대 9.7%(101건), 방임 8.1%(8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유형의 발생 순서와 동일하며, 전년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도 차이가 없다.

[표 6-1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 학대유형   | 건수    | 비율    |
|--------|-------|-------|
| 신체적 학대 | 370   | 35.7  |
| 정서적 학대 | 217   | 20.9  |
| 성적 학대  | 101   | 9.7   |
| 경제적 착취 | 265   | 25.6  |
| 유기     | —     | —     |
| 방임     | 84    | 8.1   |
| 계      | 1,037 | 100.0 |

[그림 6-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에서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1,037건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은 남성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에서 많은 피해를 겪었고, 여성은 성적 학대에서 피해가 많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서적 학대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졌다.

[표 6-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방임 |       | 계     |       |
|----|--------|-------|--------|-------|-------|-------|--------|-------|----|-------|-------|-------|
| 남성 | 201    | 54.3  | 128    | 59.0  | 18    | 17.8  | 147    | 55.5  | 52 | 61.9  | 546   | 52.7  |
| 여성 | 169    | 45.7  | 89     | 41.0  | 83    | 82.2  | 118    | 44.5  | 32 | 38.1  | 491   | 47.3  |
| 계  | 370    | 100.0 | 217    | 100.0 | 101   | 100.0 | 265    | 100.0 | 84 | 100.0 | 1,037 | 100.0 |

###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은 20대가 모든 학대유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에서는 20대, 만 17세 이하, 성적 학대에서는 20대, 30대, 경제적 착취에서는 20대, 40대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방임 |       | 계     |       |
|-------------|--------|-------|--------|-------|-------|-------|--------|-------|----|-------|-------|-------|
| 17세 이하      | 89     | 24.1  | 50     | 23.0  | 17    | 16.8  | —      | —     | 18 | 21.4  | 174   | 16.8  |
| 18~19세      | 21     | 5.7   | 10     | 4.6   | 6     | 5.9   | 4      | 1.5   | 3  | 3.6   | 44    | 4.2   |
| 20대(20~29세) | 104    | 28.1  | 61     | 28.1  | 40    | 39.6  | 92     | 34.7  | 19 | 22.6  | 316   | 30.5  |
| 30대(30~39세) | 72     | 19.5  | 34     | 15.7  | 23    | 22.8  | 54     | 20.4  | 12 | 14.3  | 195   | 18.8  |
| 40대(40~49세) | 42     | 11.4  | 31     | 14.3  | 8     | 7.9   | 55     | 20.8  | 15 | 17.9  | 151   | 14.6  |
| 50대(50~59세) | 31     | 8.4   | 22     | 10.1  | 4     | 4.0   | 38     | 14.3  | 9  | 10.7  | 104   | 10.0  |
| 60~64세      | 7      | 1.9   | 8      | 3.7   | 2     | 2.0   | 14     | 5.3   | 7  | 8.3   | 38    | 3.7   |
| 65세 이상      | 4      | 1.1   | 1      | 0.5   | 1     | 1.0   | 8      | 3.0   | 1  | 1.2   | 15    | 1.4   |
| 계           | 370    | 100.0 | 217    | 100.0 | 101   | 100.0 | 265    | 100.0 | 84 | 100.0 | 1,037 | 100.0 |

###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발달장애인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 3~5년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피해는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았으나, 경제적 착취(45.3%)와 방임(33.3%)은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피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방임 |       | 계     |       |
|-----------|--------|-------|--------|-------|-------|-------|--------|-------|----|-------|-------|-------|
| 3개월 미만    | 168    | 45.4  | 67     | 30.9  | 57    | 56.4  | 49     | 18.5  | 19 | 22.6  | 360   | 34.7  |
| 3~6개월 미만  | 40     | 10.8  | 26     | 12.0  | 7     | 6.9   | 21     | 7.9   | 11 | 13.1  | 105   | 10.1  |
| 6~12개월 미만 | 27     | 7.3   | 11     | 5.1   | 9     | 8.9   | 29     | 10.9  | 8  | 9.5   | 84    | 8.1   |
| 1~3년 미만   | 55     | 14.9  | 48     | 22.1  | 15    | 14.9  | 46     | 17.4  | 18 | 21.4  | 182   | 17.6  |
| 3~5년 미만   | 36     | 9.7   | 24     | 11.1  | 5     | 5.0   | 47     | 17.7  | 16 | 19.0  | 128   | 12.3  |
| 5~10년 미만  | 17     | 4.6   | 28     | 12.9  | 4     | 4.0   | 47     | 17.7  | 4  | 4.8   | 100   | 9.6   |
| 10년 이상    | 27     | 7.3   | 13     | 6.0   | 4     | 4.0   | 26     | 9.8   | 8  | 9.5   | 78    | 7.5   |
| 계         | 370    | 100.0 | 217    | 100.0 | 101   | 100.0 | 265    | 100.0 | 84 | 100.0 | 1,037 | 100.0 |

###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부(父), 모(母), 동거인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51.1%)에 의해 주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부(父)(2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1.1%),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3.2%), 모(母)(10.5%)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는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42.4%)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5.5%), 부(父)(13.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8.3%), 모(母)(6.5%)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는 타인(70.3%)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35.6%), 모르는 사람(11.9%), 동거인 및 이웃(각 10.9%)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는 타인(58.9%)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3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0.4%), 동거인(9.1%), 그 외 친척(7.5%) 등의 순이었다. 방임은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59.5%)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58.3%), 부(父)(15.5%), 모(母)(10.7%) 등의 순이었다.



[표 6-16]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 구분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방임 |       | 계     |       |
|---------------------------------|---------------------------|--------|-------|--------|-------|-------|-------|--------|-------|----|-------|-------|-------|
| 가족<br>및<br>친인척                  | 배우자                       | 32     | 8.6   | 13     | 6.0   | 1     | 1.0   | 1      | 0.4   | 2  | 2.4   | 49    | 4.7   |
|                                 | 부                         | 79     | 21.4  | 30     | 13.8  | 8     | 7.9   | 5      | 1.9   | 13 | 15.5  | 135   | 13.0  |
|                                 | 모                         | 39     | 10.5  | 14     | 6.5   | 1     | 1.0   | 4      | 1.5   | 9  | 10.7  | 67    | 6.5   |
|                                 | 조부모                       | 2      | 0.5   | 3      | 1.4   | 1     | 1.0   | —      | —     | —  | —     | 6     | 0.6   |
|                                 | 자녀                        | 5      | 1.4   | —      | —     | 1     | 1.0   | 2      | 0.8   | 2  | 2.4   | 10    | 1.0   |
|                                 | 형제자매 및<br>그의 배우자          | 18     | 4.9   | 6      | 2.8   | 1     | 1.0   | 13     | 4.9   | 3  | 3.6   | 41    | 4.0   |
|                                 | 그 외 친척                    | 14     | 3.8   | 11     | 5.1   | 3     | 3.0   | 20     | 7.5   | —  | —     | 48    | 4.6   |
|                                 | 소계                        | 189    | 51.1  | 77     | 35.5  | 16    | 15.8  | 45     | 17.0  | 29 | 34.5  | 356   | 34.3  |
| 타인                              | 동거인                       | 16     | 4.3   | 7      | 3.2   | 11    | 10.9  | 24     | 9.1   | 2  | 2.4   | 60    | 5.8   |
|                                 | 이웃                        | 2      | 0.5   | 4      | 1.8   | 11    | 10.9  | 4      | 1.5   | —  | —     | 21    | 2.0   |
|                                 | 알고 지내는 사람<br>(지인)         | 49     | 13.2  | 18     | 8.3   | 36    | 35.6  | 93     | 35.1  | 3  | 3.6   | 199   | 19.2  |
|                                 | 고용주                       | 7      | 1.9   | 4      | 1.8   | 1     | 1.0   | 16     | 6.0   | —  | —     | 28    | 2.7   |
|                                 | 모르는 사람                    | 6      | 1.6   | 8      | 3.7   | 12    | 11.9  | 19     | 7.2   | —  | —     | 45    | 4.3   |
|                                 | 소계                        | 80     | 21.6  | 41     | 18.9  | 71    | 70.3  | 156    | 58.9  | 5  | 6.0   | 353   | 34.0  |
| 신고<br>의무자인<br>기관<br>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78     | 21.1  | 77     | 35.5  | 8     | 7.9   | 54     | 20.4  | 49 | 58.3  | 266   | 25.7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br>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7      | 1.9   | 4      | 1.8   | —     | —     | 3      | 1.1   | 1  | 1.2   | 15    | 1.4   |
|                                 | 의료인 및<br>의료기관의 장          | —      | —     | —      | —     | 1     | 1.0   | —      | —     | —  | —     | 1     | 0.1   |
|                                 | 보육교직원                     | 2      | 0.5   | 2      | 0.9   | —     | —     | —      | —     | —  | —     | 4     | 0.4   |
|                                 | 초·중·고 교직원 등               | 7      | 1.9   | 8      | 3.7   | —     | —     | —      | —     | —  | —     | 15    | 1.4   |
|                                 | 학원 및 교습소<br>종사자 등         | 1      | 0.3   | 1      | 0.5   | —     | —     | —      | —     | —  | —     | 2     | 0.2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     | —     | —     | 1      | 0.4   | —  | —     | 1     | 0.1   |
|                                 | 소계                        | 95     | 25.7  | 92     | 42.4  | 9     | 8.9   | 58     | 21.9  | 50 | 59.5  | 304   | 29.3  |
| 신고<br>의무자가<br>아닌<br>유관기관<br>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1      | 0.3   | —      | —     | 1     | 1.0   | —      | —     | —  | —     | 2     | 0.2   |
|                                 | 의료기관 종사자                  | 1      | 0.3   | —      | —     | —     | —     | —      | —     | —  | —     | 1     | 0.1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br>종사자        | 2      | 0.5   | 6      | 2.8   | —     | —     | 3      | 1.1   | —  | —     | 11    | 1.1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1      | 0.3   | —      | —     | —     | —     | —      | —     | —  | —     | 1     | 0.1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1      | 0.3   | 1      | 0.5   | 2     | 2.0   | —      | —     | —  | —     | 4     | 0.4   |
|                                 | 소계                        | 6      | 1.6   | 7      | 3.2   | 3     | 3.0   | 3      | 1.1   | —  | —     | 19    | 1.8   |
| 파악 안 됨                          |                           | —      | —     | —      | —     | 2     | 2.0   | 3      | 1.1   | —  | —     | 5     | 0.5   |
| 계                               |                           | 370    | 100.0 | 217    | 100.0 | 101   | 100.0 | 265    | 100.0 | 84 | 100.0 | 1,037 | 100.0 |

##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 1)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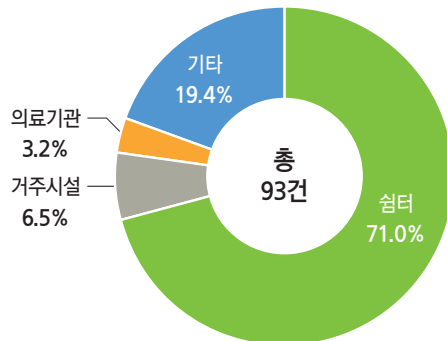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총 833건 중 응급조치는 93건(11.2%) 실시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쉼터를 이용한 경우가 66건(71.0%), 기타 18건(19.4%), 거주시설 6건(6.5%), 의료기관 3건(3.2%)이었다. 전년도 응급조치 실시 건수(80건)와 비교하면 16.3%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거주시설로의 응급조치는 감소하고, 쉼터로의 응급조치는 증가하였다.

[표 6-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 쉼터   | 거주시설 | 의료기관 | 기타   | 계     |
|------|------|------|------|-------|
| 66   | 6    | 3    | 18   | 93    |
| 71.0 | 6.5  | 3.2  | 19.4 | 100.0 |

[그림 6-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총 9,316회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중 상담지원이 57.8%(5,380회)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17.7%(1,653회), 거주지원 7.4%(687회), 복지지원 7.3%(682회) 등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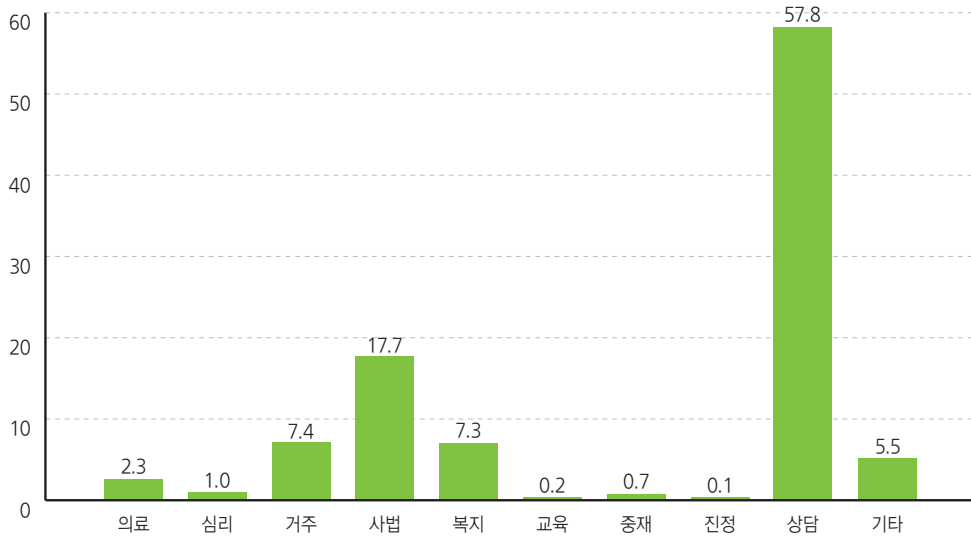
[표 6-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 의료  | 심리  | 거주  | 사법    | 복지  | 교육  | 중재  | 진정  | 상담    | 기타  | 계     |
|-----|-----|-----|-------|-----|-----|-----|-----|-------|-----|-------|
| 210 | 94  | 687 | 1,653 | 682 | 20  | 65  | 8   | 5,380 | 517 | 9,316 |
| 2.3 | 1.0 | 7.4 | 17.7  | 7.3 | 0.2 | 0.7 | 0.1 | 57.8  | 5.5 | 100.0 |

[그림 6-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에 실시한 사법지원은 총 1,653회로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28.2%(466회)로 가장 많았고, 법률상담 4.6%(76회), 고발 4.4%(73회)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6-1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 고발  | 고소<br>대리 | 수사<br>의뢰 | 법률<br>상담 | 절차<br>지원 | 소송<br>구조 | 후견인<br>선임 | 노동청<br>진정 | 기타   | 계     |
|-----|----------|----------|----------|----------|----------|-----------|-----------|------|-------|
| 73  | 6        | 47       | 76       | 466      | 10       | 7         | 7         | 961  | 1,653 |
| 4.4 | 0.4      | 2.8      | 4.6      | 28.2     | 0.6      | 0.4       | 0.4       | 58.1 | 100.0 |

## 2. 장애아동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피해자 중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말한다. 장애아동 학대사례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된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면 상호 통보하여 재신고 및 동일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 협조하여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21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322건이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166건, 잠재위험사례는 37건, 비학대사례는 106건, 조사 중인 사례는 13건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장애아동 학대신고(268건)는 20.1%, 학대사례(133건)는 24.8% 증가하였다.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2021년 전체 학대사례의 14.8%이다. 2021년 12월말 기준 등록장애인구 2,644,700명 중 장애아동은 2.9%(77,961명)이다.

###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역 및 기관별 현황을 보면 인천이 35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울산 23건(13.9%), 부산 18건(10.8%), 경기 15건(9.0%) 등의 순이었다.

[표 6-20]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단위: 건, %)

| 구분 |      | 건수  | 비율    |
|----|------|-----|-------|
| 서울 |      | 4   | 2.4   |
| 부산 |      | 18  | 10.8  |
| 대구 |      | 6   | 3.6   |
| 인천 |      | 35  | 21.1  |
| 광주 |      | 3   | 1.8   |
| 대전 |      | 11  | 6.6   |
| 울산 |      | 23  | 13.9  |
| 세종 |      | 3   | 1.8   |
| 경기 | 경기   | 7   | 4.2   |
|    | 경기북부 | 8   | 4.8   |
|    | 소계   | 15  | 9.0   |
| 강원 |      | 3   | 1.8   |
| 충북 |      | 11  | 6.6   |
| 충남 |      | 11  | 6.6   |
| 전북 |      | 5   | 3.0   |
| 전남 |      | 2   | 1.2   |
| 경북 |      | 8   | 4.8   |
| 경남 |      | 7   | 4.2   |
| 제주 |      | 1   | 0.6   |
| 합계 |      | 166 | 100.0 |

##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 1) 성별 및 연령

피해 장애아동의 성별은 남성 63.9%(106명), 여성 36.1%(60명)로 남성이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25.9%,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7~9세가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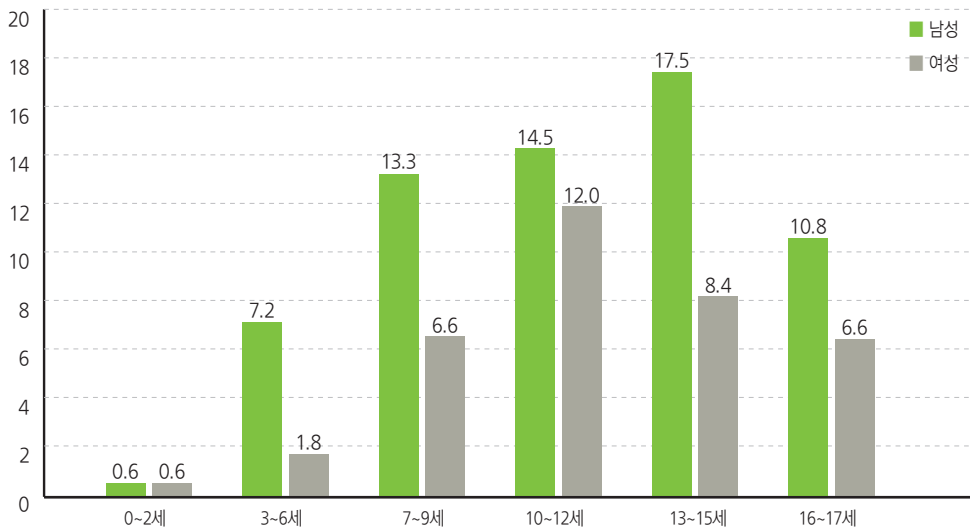
[표 6-21]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 구분 | 0~2세 |     | 3~ 6세 |     | 7~9세 |      | 10~12세 |      | 13~15세 |      | 16~17세 |      | 계   |       |
|----|------|-----|-------|-----|------|------|--------|------|--------|------|--------|------|-----|-------|
| 남성 | 1    | 0.6 | 12    | 7.2 | 22   | 13.3 | 24     | 14.5 | 29     | 17.5 | 18     | 10.8 | 106 | 63.9  |
| 여성 | 1    | 0.6 | 3     | 1.8 | 11   | 6.6  | 20     | 12.0 | 14     | 8.4  | 11     | 6.6  | 60  | 36.1  |
| 계  | 2    | 1.2 | 15    | 9.0 | 33   | 19.9 | 44     | 26.5 | 43     | 25.9 | 29     | 17.5 | 166 | 100.0 |

[그림 6-10]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 2) 장애유형 및 정도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5.7%(109건)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16.3%(27건), 미등록 7.8%(13건), 뇌병변장애 5.4%(9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 장애아동 역시 대부분 발달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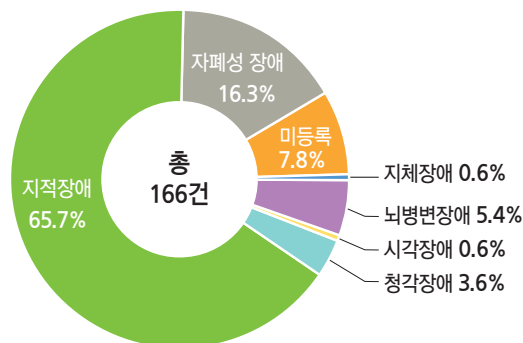
2021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장애아동 중 지적장애인은 46.3%(36,085명)로 가장 많으며, 자폐성장애인 22.3%(17,387명), 뇌병변장애인 12.5%(9,748명), 언어장애인 6.4%(5,015명) 등의 순이다.

[표 6-22]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sup>6)</sup>

(단위: 건, %)

| 장애유형  | 건수  | 비율    |
|-------|-----|-------|
| 지체장애  | 1   | 0.6   |
| 뇌병변장애 | 9   | 5.4   |
| 시각장애  | 1   | 0.6   |
| 청각장애  | 6   | 3.6   |
| 지적장애  | 109 | 65.7  |
| 자폐성장애 | 27  | 16.3  |
| 미등록   | 13  | 7.8   |
| 계     | 166 | 100.0 |

[그림 6-11]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6)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주장장애유형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부장애유형은 지체장애 2건, 뇌병변장애 7건, 시각장애 1건, 언어장애 1건, 지적장애 2건, 자폐성장애 1건, 뇌전증장애 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아동 중 장애인 등록이 된 사례는 153건으로 이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97.4%(149건)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2.6%(4건)이었다.

[표 6-23]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단위: 건, %)

| 장애정도                      | 건수  | 비율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149 | 97.4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 4   | 2.6   |
| 계                         | 153 | 100.0 |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피해 장애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는 비수급자가 56.6%(94건), 기초생활수급자가 41.0%(68건), 차상위수급자가 2.4%(4건)이었다. 전체 학대사례(기초생활수급자 56.7%, 차상위수급자 2.2%, 비수급자 41.1%)와 비교하면 피해 장애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7%p 낮았다.

[표 6-24]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수급자 |     | 비수급자 |      | 합계  |       |
|---------|------|--------|-----|------|------|-----|-------|
| 68      | 41.0 | 4      | 2.4 | 94   | 56.6 | 166 | 100.0 |



##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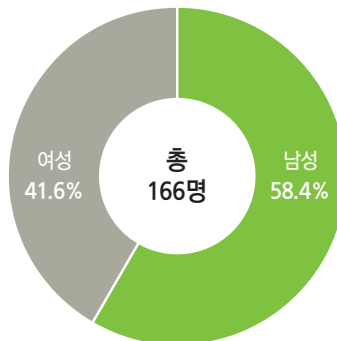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97명)이며, 여성은 41.6%(69명)이었다. 전체 학대사례(남성 70.5%, 여성 29.5%)와 비교하면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 6-25]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 남성 |      | 여성 |      | 계   |       |
|----|------|----|------|-----|-------|
| 97 | 58.4 | 69 | 41.6 | 166 | 100.0 |

[그림 6-12]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 2) 연령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32.5%(54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3.5%(39명), 50대 21.1%(35명), 20대 · 파악 안 됨이 각각 6.6%(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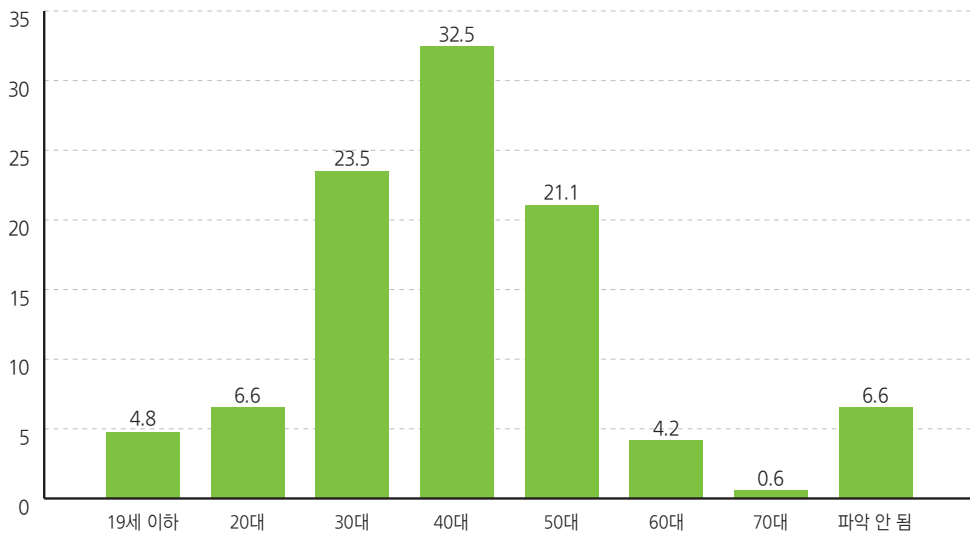
[표 6-26]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 연령          | 건수  | 비율    |
|-------------|-----|-------|
| 19세 이하      | 8   | 4.8   |
| 20대(20~29세) | 11  | 6.6   |
| 30대(30~39세) | 39  | 23.5  |
| 40대(40~49세) | 54  | 32.5  |
| 50대(50~59세) | 35  | 21.1  |
| 60대(60~69세) | 7   | 4.2   |
| 70대(70~79세) | 1   | 0.6   |
| 파악 안 됨      | 11  | 6.6   |
| 계           | 166 | 100.0 |

[그림 6-13]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 3)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학대행위자는 부(父)·모(母)가 43.4%(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3.9%(23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 및 친인척이 50.0%(83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25.9%(43건), 타인이 21.1%(35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가 3.0%(5건)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에서 타인(38.4%)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가 많은 것과 달리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 부(父)(26.5%), 모(母)(1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의 경우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3.9%), 모르는 사람(5.4%) 등의 순이었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1.4%), 초·중·고 교직원(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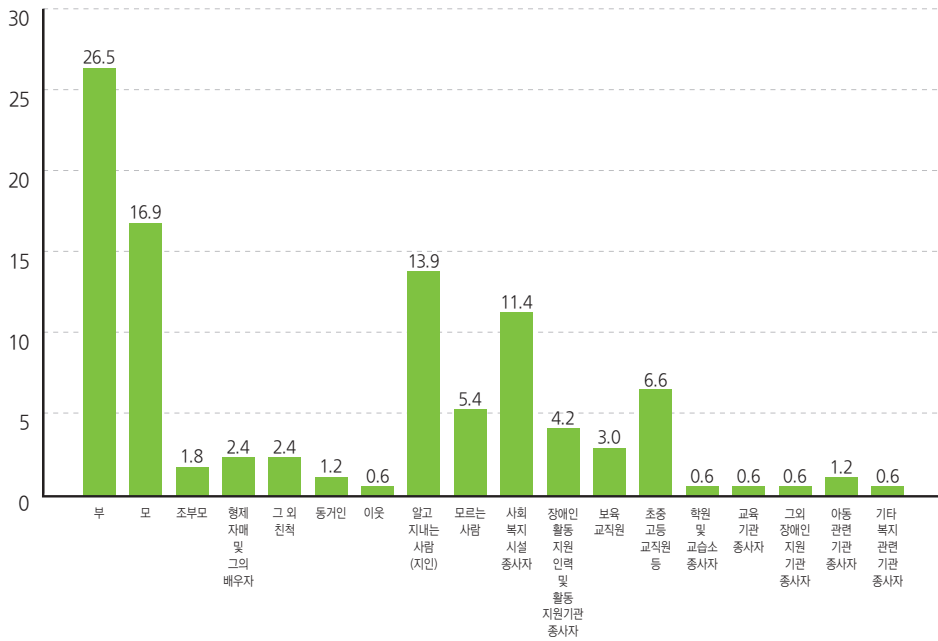
[표 6-27]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 관계                    |                        | 건수  | 비율    |
|-----------------------|------------------------|-----|-------|
| 가족 및 친인척              | 부                      | 44  | 26.5  |
|                       | 모                      | 28  | 16.9  |
|                       | 조부모                    | 3   | 1.8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4   | 2.4   |
|                       | 그 외 친척                 | 4   | 2.4   |
|                       | 소계                     | 83  | 50.0  |
| 타인                    | 동거인                    | 2   | 1.2   |
|                       | 이웃                     | 1   | 0.6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23  | 13.9  |
|                       | 모르는 사람                 | 9   | 5.4   |
|                       | 소계                     | 35  | 21.1  |
| 신고의무자인<br>기관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19  | 11.4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7   | 4.2   |
|                       | 보육교직원                  | 5   | 3.0   |
|                       | 초·중·고 교직원 등            | 11  | 6.6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1   | 0.6   |
|                       | 소계                     | 43  | 25.9  |
| 신고의무자가 아닌<br>유관기관 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1   | 0.6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1   | 0.6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2   | 1.2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1   | 0.6   |
|                       | 소계                     | 5   | 3.0   |
| 계                     |                        | 166 | 100.0 |

[그림 6-14]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



##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 1) 학대 발생장소

장애아동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5.2%(7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기관 · 기타장소 각각 11.4%(19건), 장애인거주시설 10.8%(18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8.4%(14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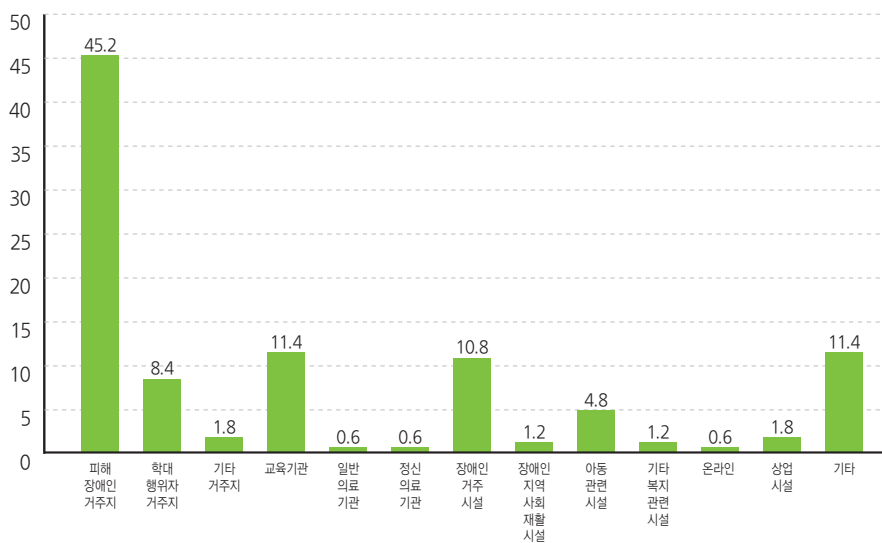
[표 6-28]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 발생장소        |             | 건수  | 비율    |
|-------------|-------------|-----|-------|
| 피해장애인 거주지   |             | 75  | 45.2  |
| 학대행위자 거주지   |             | 14  | 8.4   |
| 기타 거주지      |             | 3   | 1.8   |
| 교육기관        |             | 19  | 11.4  |
| 일반 의료기관     |             | 1   | 0.6   |
| 정신 의료기관     |             | 1   | 0.6   |
| 장애인<br>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18  | 10.8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2   | 1.2   |
|             | 소계          | 20  | 12.0  |
| 아동관련시설      |             | 8   | 4.8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2   | 1.2   |
| 온라인         |             | 1   | 0.6   |
| 상업시설        |             | 3   | 1.8   |
| 기타          |             | 19  | 11.4  |
| 계           |             | 166 | 100.0 |

[그림 6-15]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단위: %)



##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장애아동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51.2%(85건)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은 1년 이내(69.3%)로 나타났다. 그러나 3년 이상 학대를 경험한 경우도 12.0%(20건)에 이르고, 학대의 발생빈도는 10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31.3%(52건)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고 학대상황을 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장애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학대 근절을 위한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장애아동 학대 대응 인프라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표 6-29]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 구분       |           | 발생빈도  |      |        |      |        |     |       |      |      |      |     |       |
|----------|-----------|-------|------|--------|------|--------|-----|-------|------|------|------|-----|-------|
|          |           | 거의 매일 |      | 10회 이상 |      | 10회 미만 |     | 5회 미만 |      | 1~2회 |      | 계   |       |
| 지속<br>기간 | 3개월 미만    | —     | —    | 2      | 1.2  | 2      | 1.2 | 16    | 9.6  | 65   | 39.2 | 85  | 51.2  |
|          | 3~6개월 미만  | 4     | 2.4  | 5      | 3.0  | 6      | 3.6 | 5     | 3.0  | —    | —    | 20  | 12.0  |
|          | 6~12개월 미만 | 1     | 0.6  | 4      | 2.4  | 3      | 1.8 | 2     | 1.2  | —    | —    | 10  | 6.0   |
|          | 1~3년 미만   | 9     | 5.4  | 13     | 7.8  | 3      | 1.8 | 5     | 3.0  | 1    | 0.6  | 31  | 18.7  |
|          | 3~5년 미만   | 4     | 2.4  | 5      | 3.0  | 1      | 0.6 | 5     | 3.0  | —    | —    | 15  | 9.0   |
|          | 5~10년 미만  | 1     | 0.6  | 3      | 1.8  | —      | —   | —     | —    | —    | —    | 4   | 2.4   |
|          | 10년 이상    | 1     | 0.6  | —      | —    | —      | —   | —     | —    | —    | —    | 1   | 0.6   |
| 계        |           | 20    | 12.0 | 32     | 19.3 | 15     | 9.0 | 33    | 19.9 | 66   | 39.8 | 166 | 100.0 |

##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 1)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장애아동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4.0%(73건)로 가장 많았고, 중복 학대 22.3%(37건), 정서적 학대 13.9%(23건), 성적 학대 12.0%(20건), 방임 7.8%(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장애아동 학대유형이 신체적 학대(30.1%) - 정서적 학대(24.1%) - 성적 학대(15.8%) - 방임 · 중복 학대(15.0%) 순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021년의 장애아동 학대유형이 전체적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체적 학대는 전년도(40건)에 비해 82.5% 증가하였고, 중복 학대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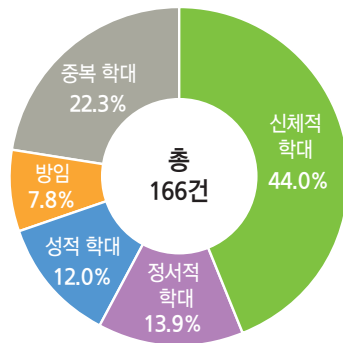
사례 수에 큰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은 중복 학대(48.3%), 정서적 학대(25.3%), 신체적 학대(12.3%), 방임(8.9%), 성적 학대(2.2%) 순으로 나타나 장애아동 학대와는 다른 학대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6-30]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 학대유형   | 건수  | 비율    |
|--------|-----|-------|
| 신체적 학대 | 73  | 44.0  |
| 정서적 학대 | 23  | 13.9  |
| 성적 학대  | 20  | 12.0  |
| 경제적 착취 | —   | —     |
| 유기     | —   | —     |
| 방임     | 13  | 7.8   |
| 중복 학대  | 37  | 22.3  |
| 계      | 166 | 100.0 |

[그림 6-16]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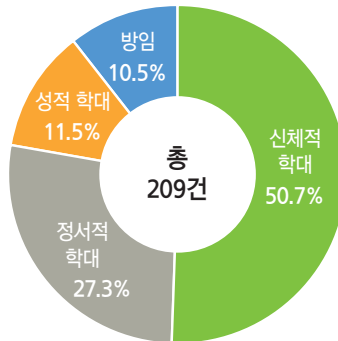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 총 166건 중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209건이다. 신체적 학대가 50.7%(106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27.3%(57건), 성적 학대가 11.5%(24건), 방임이 10.5%(2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1]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 학대유형   | 건수  | 비율    |
|--------|-----|-------|
| 신체적 학대 | 106 | 50.7  |
| 정서적 학대 | 57  | 27.3  |
| 성적 학대  | 24  | 11.5  |
| 경제적 착취 | —   | —     |
| 유기     | —   | —     |
| 방임     | 22  | 10.5  |
| 계      | 209 | 100.0 |

[그림 6-17]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아동 학대유형에서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 총 209건을 기준으로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피해 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피해 장애아동은 성적 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45.3%p 높았고, 정서적 학대는 26.3%p, 방임은 18.2%p 높았다. 성적 학대는 여성이 83.3%로 남성에 비해 약 5.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방임 |       | 계   |       |
|----|--------|-------|--------|-------|-------|-------|----|-------|-----|-------|
| 남성 | 77     | 72.6  | 36     | 63.2  | 4     | 16.7  | 13 | 59.1  | 130 | 62.2  |
| 여성 | 29     | 27.4  | 21     | 36.8  | 20    | 83.3  | 9  | 40.9  | 79  | 37.8  |
| 계  | 106    | 100.0 | 57     | 100.0 | 24    | 100.0 | 22 | 100.0 | 209 | 100.0 |

###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피해 장애아동은 만 13~15세, 만 10~12세 연령에서 모든 학대유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학대는 학령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 가정의 발굴과 장애아동이 스스로 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2021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초·중·고 교직원 등'에서 '초·중·고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어, 누구든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빠른 발견과 개입을 기대해본다.

[표 6-33]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방임 |       | 계   |       |
|--------|--------|-------|--------|-------|-------|-------|----|-------|-----|-------|
| 0~2세   | 1      | 0.9   | —      | —     | 1     | 4.2   | —  | —     | 2   | 1.0   |
| 3~6세   | 14     | 13.2  | 6      | 10.5  | —     | —     | 2  | 9.1   | 22  | 10.5  |
| 7~9세   | 25     | 23.6  | 10     | 17.5  | 1     | 4.2   | 5  | 22.7  | 41  | 19.6  |
| 10~12세 | 27     | 25.5  | 13     | 22.8  | 9     | 37.5  | 5  | 22.7  | 54  | 25.8  |
| 13~15세 | 24     | 22.6  | 17     | 29.8  | 8     | 33.3  | 7  | 31.8  | 56  | 26.8  |
| 16~17세 | 15     | 14.2  | 11     | 19.3  | 5     | 20.8  | 3  | 13.6  | 34  | 16.3  |
| 계      | 106    | 100.0 | 57     | 100.0 | 24    | 100.0 | 22 | 100.0 | 209 | 100.0 |

###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순이며, 세부 학대행위자별로 보면 부(父), 모(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초·중·고 교직원 등의 순이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50.9%)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父)·모(母)(47.2%)가 가장 많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2.3%)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각각 42.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父)·모(母)(36.8%)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5.8%), 초·중·고 교직원(12.3%)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의 경우 타인(58.3%)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모르는 사람(29.2%),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부(父)·모(母)(20.8%), 그 외 친척(12.5%) 등의 순이었다. 방임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63.6%)이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보면 부(父)·모(母)(59.1%)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1.8%) 등의 순이었다.

[표 6-3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 구분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방임 |       | 계   |       |
|--------------------------|---------------------------|--------|-------|--------|-------|-------|-------|----|-------|-----|-------|
| 가족<br>및<br>친인척           | 부                         | 33     | 31.1  | 12     | 21.1  | 3     | 12.5  | 6  | 27.3  | 54  | 25.8  |
|                          | 모                         | 17     | 16.0  | 9      | 15.8  | 2     | 8.3   | 7  | 31.8  | 35  | 16.7  |
|                          | 조부모                       | 2      | 1.9   | 1      | 1.8   | —     | —     | —  | —     | 3   | 1.4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0.9   | 1      | 1.8   | 2     | 8.3   | 1  | 4.5   | 5   | 2.4   |
|                          | 그 외 친척                    | 1      | 0.9   | 1      | 1.8   | 3     | 12.5  | —  | —     | 5   | 2.4   |
|                          | 소계                        | 54     | 50.9  | 24     | 42.1  | 10    | 41.7  | 14 | 63.6  | 102 | 48.8  |
| 타인                       | 동거인                       | —      | —     | —      | —     | 2     | 8.3   | —  | —     | 2   | 1.0   |
|                          | 이웃                        | —      | —     | 1      | 1.8   | —     | —     | —  | —     | 1   | 0.5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15     | 14.2  | 5      | 8.8   | 5     | 20.8  | —  | —     | 25  | 12.0  |
|                          | 모르는 사람                    | 1      | 0.9   | 2      | 3.5   | 7     | 29.2  | —  | —     | 10  | 4.8   |
|                          | 소계                        | 16     | 15.1  | 8      | 14.0  | 14    | 58.3  | —  | —     | 38  | 18.2  |
| 신고의무자인<br>기관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13     | 12.3  | 9      | 15.8  | —     | —     | 7  | 31.8  | 29  | 13.9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br>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5      | 4.7   | 2      | 3.5   | —     | —     | 1  | 4.5   | 8   | 3.8   |
|                          | 보육교직원                     | 5      | 4.7   | 5      | 8.8   | —     | —     | —  | —     | 10  | 4.8   |
|                          | 초·중·고 교직원 등               | 7      | 6.6   | 7      | 12.3  | —     | —     | —  | —     | 14  | 6.7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1      | 0.9   | 1      | 1.8   | —     | —     | —  | —     | 2   | 1.0   |
|                          | 소계                        | 31     | 29.2  | 24     | 42.1  | —     | —     | 8  | 36.4  | 63  | 30.1  |
| 신고의무자가<br>아닌 유관기관<br>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1      | 0.9   | —      | —     | —     | —     | —  | —     | 1   | 0.5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1      | 0.9   | —      | —     | —     | —     | —  | —     | 1   | 0.5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2      | 1.9   | —      | —     | —     | —     | —  | —     | 2   | 1.0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1      | 0.9   | 1      | 1.8   | —     | —     | —  | —     | 2   | 1.0   |
|                          | 소계                        | 5      | 4.7   | 1      | 1.8   | —     | —     | —  | —     | 6   | 2.9   |
| 계                        |                           | 106    | 100.0 | 57     | 100.0 | 24    | 100.0 | 22 | 100.0 | 209 | 100.0 |

##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 1) 응급조치

장애아동 학대사례 총 166건 중 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우는 16건(9.6%)이었다. 이중 쉼터를 이용한 사례는 14건(87.5%), 거주시설 1건(6.3%), 기타 1건(6.3%)이었다.

[표 6-35]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단위: 건, %)

| 쉼터   | 거주시설 | 의료기관 | 기타  | 계     |
|------|------|------|-----|-------|
| 14   | 1    | —    | 1   | 16    |
| 87.5 | 6.3  | —    | 6.3 | 100.0 |

###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피해 장애아동의 회복 지원은 총 1,618회 실시하였다. 상담지원이 801회(49.5%)로 가장 많았고, 기타지원 279회(17.2%), 사법지원 261회(16.1%), 복지지원 92회(5.7%), 거주지원 88회(5.4%)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기타지원에는 학교생활을 위한 통학 지원, 교육기관과의 협의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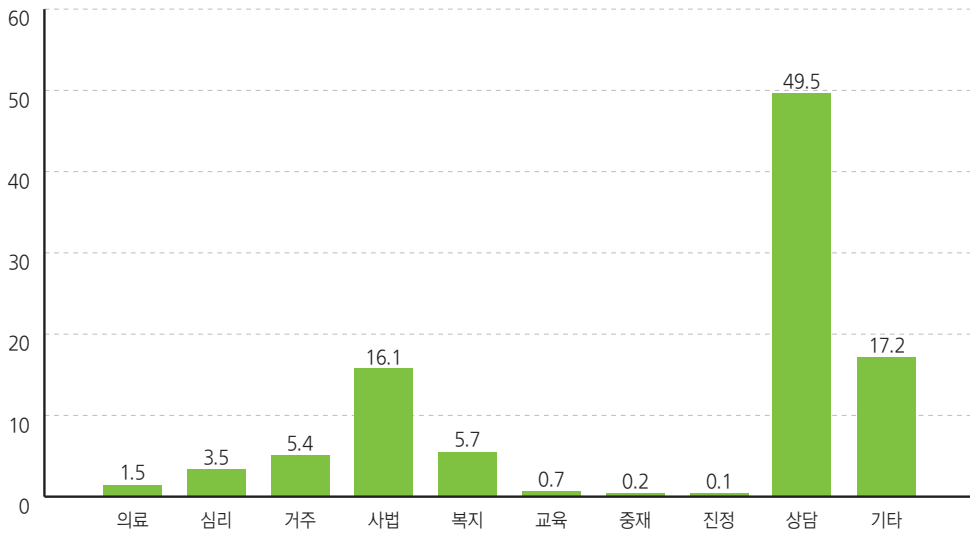
[표 6-36]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단위: 회, %)

| 의료  | 심리  | 거주  | 사법   | 복지  | 교육  | 중재  | 진정  | 상담   | 기타   | 계     |
|-----|-----|-----|------|-----|-----|-----|-----|------|------|-------|
| 24  | 56  | 88  | 261  | 92  | 12  | 3   | 2   | 801  | 279  | 1,618 |
| 1.5 | 3.5 | 5.4 | 16.1 | 5.7 | 0.7 | 0.2 | 0.1 | 49.5 | 17.2 | 100.0 |

[그림 6-18]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단위: %)



피해 장애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법지원은 총 261회 실시하였다. 절차지원이 122회(46.7%)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지원 100회(38.3%), 수사의뢰 · 법률상담 각각 17회(6.5%)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6-37]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 고발  | 고소<br>대리 | 수사<br>의뢰 | 법률<br>상담 | 절차<br>지원 | 소송<br>구조 | 후견인<br>선임 | 노동청<br>진정 | 기타   | 계     |
|-----|----------|----------|----------|----------|----------|-----------|-----------|------|-------|
| 4   | 1        | 17       | 17       | 122      | —        | —         | —         | 100  | 261   |
| 1.5 | 0.4      | 6.5      | 6.5      | 46.7     | —        | —         | —         | 38.3 | 100.0 |

### 3. 노동력 착취사례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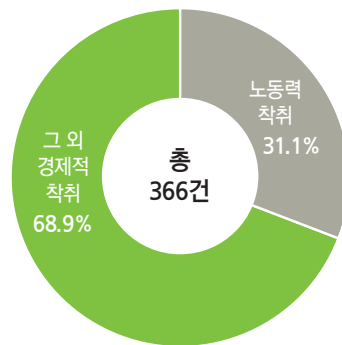
2021년 노동력 착취는 114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1,124건 대비 10.1%이었으며, 경제적 착취 366건 중 31.1%가 노동력 착취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전체 학대사례 1,008건 중 노동력 착취사례 88건)와 비교하면 29.6% 증가하였다.

[표 6-38] 노동력 착취 발생

(단위: 건, %)

| 경제적착취     |            |     | 경제적 착취사례 중<br>노동력 착취 | 전체 장애인학대사례<br>중 노동력 착취 |
|-----------|------------|-----|----------------------|------------------------|
| 노동력 착취 포함 | 노동력 착취 미포함 | 계   |                      |                        |
| 114       | 252        | 366 | 31.1                 | 10.1                   |

[그림 6-19] 노동력 착취 발생



## 가. 피해장애인

### 1) 성별 및 연령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9.3%(79명), 여성이 30.7%(35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연령은 30대가 27.2%(31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6.3%(30명), 20대가 21.1%(24명)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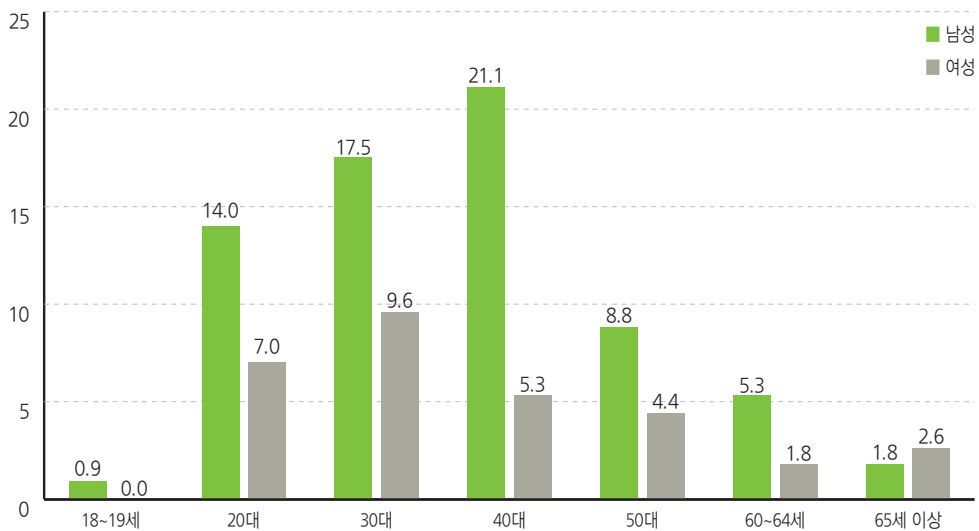
[표 6-3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 구분 | 18~19세 |     | 20대<br>(20~29세) |      | 30대<br>(30~39세) |      | 40대<br>(40~49세) |      | 50대<br>(50~59세) |      | 60~64세 |     | 65세 이상 |     | 계   |       |
|----|--------|-----|-----------------|------|-----------------|------|-----------------|------|-----------------|------|--------|-----|--------|-----|-----|-------|
| 남성 | 1      | 0.9 | 16              | 14.0 | 20              | 17.5 | 24              | 21.1 | 10              | 8.8  | 6      | 5.3 | 2      | 1.8 | 79  | 69.3  |
| 여성 | —      | —   | 8               | 7.0  | 11              | 9.6  | 6               | 5.3  | 5               | 4.4  | 2      | 1.8 | 3      | 2.6 | 35  | 30.7  |
| 계  | 1      | 0.9 | 24              | 21.1 | 31              | 27.2 | 30              | 26.3 | 15              | 13.2 | 8      | 7.0 | 5      | 4.4 | 114 | 100.0 |

[그림 6-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 2)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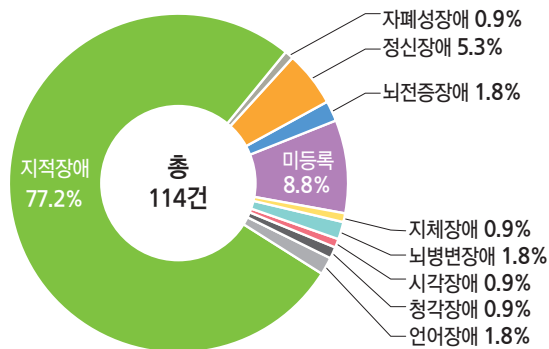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77.2%(8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미등록 8.8%(10건), 정신장애 5.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장애유형과 비교하면 지적장애 피해자 비율(59.1%)은 18.1%p 증가했다.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가 전체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83.3%로 피해자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정신적 장애인 64.8%) 비율 보다 18.5%p 높았다.

[표 6-4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sup>7)</sup>

(단위: 건, %)

| 장애유형  | 건수  | 비율    |
|-------|-----|-------|
| 지체장애  | 1   | 0.9   |
| 뇌병변장애 | 2   | 1.8   |
| 시각장애  | 1   | 0.9   |
| 청각장애  | 1   | 0.9   |
| 언어장애  | 2   | 1.8   |
| 지적장애  | 88  | 77.2  |
| 자폐성장애 | 1   | 0.9   |
| 정신장애  | 6   | 5.3   |
| 뇌전증장애 | 2   | 1.8   |
| 미등록   | 10  | 8.8   |
| 계     | 114 | 100.0 |

[그림 6-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7)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주장애유형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부장애유형은 지체장애 2건, 신장장애 1건, 뇌전증장애 1건으로 나타났다.

### 3) 거주유형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가 92.1%(105건)이며, 시설은 7.9%(9건)로 나타났다. 재가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피해는 2019년 58.5%(55건), 2020년 85.2%(75건)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6-4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 재가  |      | 시설 |     | 계   |       |
|-----|------|----|-----|-----|-------|
| 105 | 92.1 | 9  | 7.9 | 114 | 100.0 |

###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5.3%(63건)로 가장 많았다. 비수급자가 42.1%(48건), 차상위수급자가 2.6%(3건)이었다. 전년도(37.5%, 33건)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았다.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학대사례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56.7%)보다 1.4%p 낮았다.

[표 6-4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수급자 |     | 비수급자 |      | 계   |       |
|---------|------|--------|-----|------|------|-----|-------|
| 63      | 55.3 | 3      | 2.6 | 48   | 42.1 | 114 | 100.0 |



##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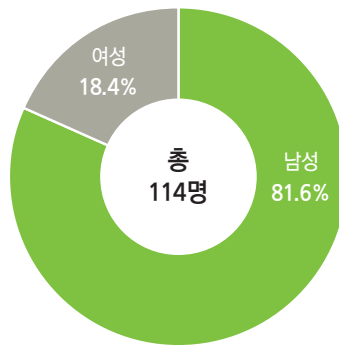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남성이 81.6%(93명), 여성이 18.4%(21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단위: 명, %)

| 남성 |      | 여성 |      | 계   |       |
|----|------|----|------|-----|-------|
| 93 | 81.6 | 21 | 18.4 | 114 | 100.0 |

[그림 6-2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 2) 연령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50대가 50.9%(58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15.8%(18명), 40대 9.6%(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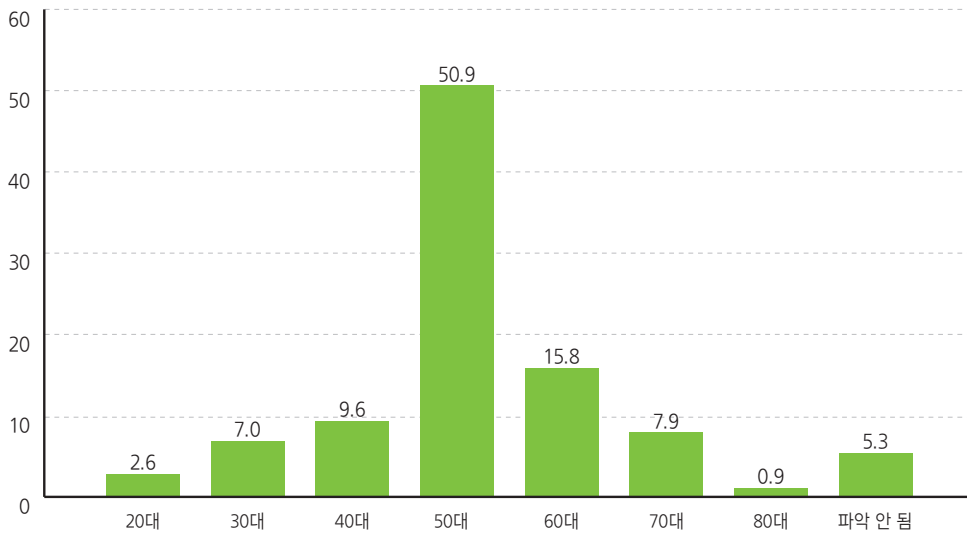
[표 6-4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명, %)

| 연령          | 건수  | 비율    |
|-------------|-----|-------|
| 20대(20~29세) | 3   | 2.6   |
| 30대(30~39세) | 8   | 7.0   |
| 40대(40~49세) | 11  | 9.6   |
| 50대(50~59세) | 58  | 50.9  |
| 60대(60~69세) | 18  | 15.8  |
| 70대(70~79세) | 9   | 7.9   |
| 80대(80~89세) | 1   | 0.9   |
| 파악 안 됨      | 6   | 5.3   |
| 계           | 114 | 100.0 |

[그림 6-2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



###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노동력 착취의 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49.1%(56건)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39.5%(45건), 가족 및 친인척 8.8%(10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8%(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9.1%(56건)로 가장 많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7.5%(20건), 고용주 15.8%(1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동력 착취는 피해장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서도 치료와 각종 프로그램을 이유로 부당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도(7건) 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가 약 8.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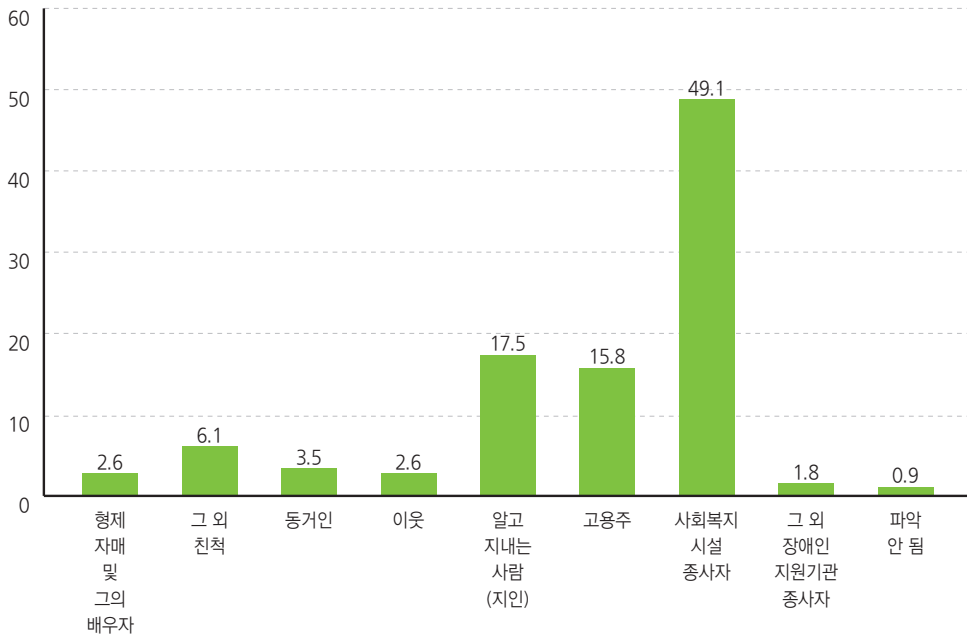
[표 6-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

| 관계                    |                 | 건수  | 비율    |
|-----------------------|-----------------|-----|-------|
| 가족 및 친인척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2.6   |
|                       | 그 외 친척          | 7   | 6.1   |
|                       | 소계              | 10  | 8.8   |
| 타인                    | 동거인             | 4   | 3.5   |
|                       | 이웃              | 3   | 2.6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20  | 17.5  |
|                       | 고용주             | 18  | 15.8  |
|                       | 소계              | 45  | 39.5  |
| 신고의무자인<br>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56  | 49.1  |
|                       | 소계              | 56  | 49.1  |
| 신고의무자가 아닌<br>유관기관 종사자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2   | 1.8   |
|                       | 소계              | 2   | 1.8   |
| 파악 안 됨                |                 | 1   | 0.9   |
| 계                     |                 | 114 | 100.0 |

[그림 6-24]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



##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49건(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에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직장(일하는 곳) 15.8%(18건), 피해장애인 거주지 14.9%(17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7.9%(9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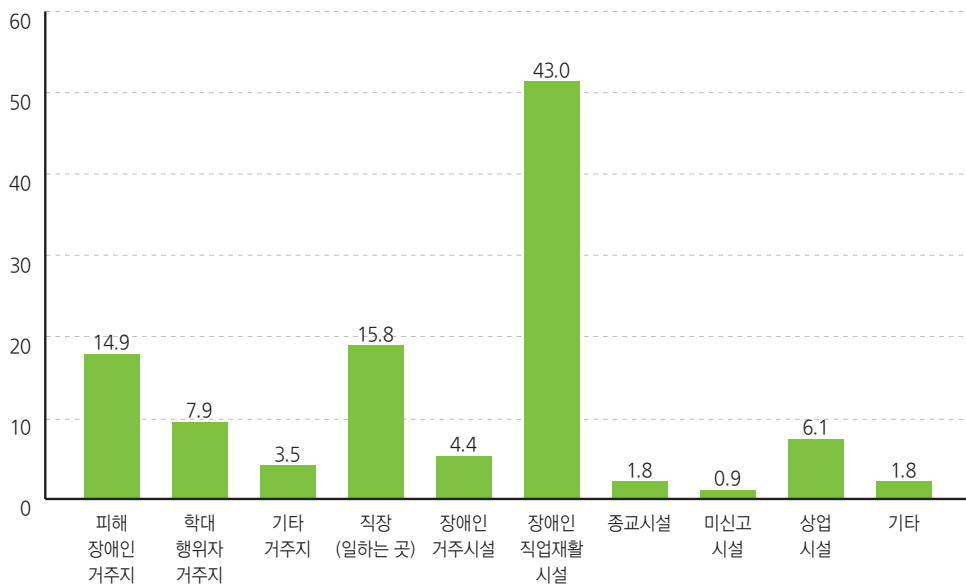
[표 6-4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건, %)

| 발생장소        |           | 건수  | 비율    |
|-------------|-----------|-----|-------|
| 피해장애인 거주지   |           | 17  | 14.9  |
| 학대행위자 거주지   |           | 9   | 7.9   |
| 기타 거주지      |           | 4   | 3.5   |
| 직장(일하는 곳)   |           | 18  | 15.8  |
| 장애인<br>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5   | 4.4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49  | 43.0  |
|             | 소계        | 54  | 47.4  |
| 종교시설        |           | 2   | 1.8   |
| 미신고시설       |           | 1   | 0.9   |
| 상업시설        |           | 7   | 6.1   |
| 기타          |           | 2   | 1.8   |
| 계           |           | 114 | 100.0 |

[그림 6-25]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



##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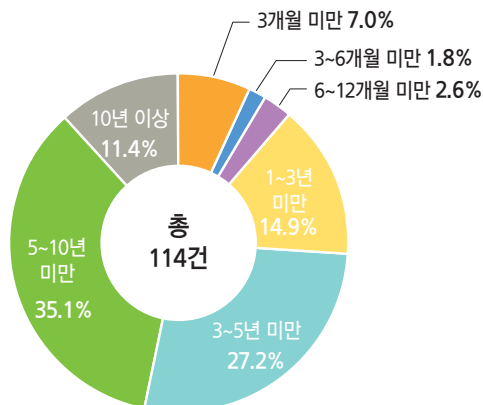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는 73.7%(84건)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는 46.5%(53건)로 나타났는데 전체 학대사례의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사례(17.3%, 194건)와 비교하면 29.2%p 높다. 피해장애인은 노동력 착취에 대해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다른 학대유형보다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표 6-4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단위: 건, %)

| 지속기간      | 건수  | 비율    |
|-----------|-----|-------|
| 3개월 미만    | 8   | 7.0   |
| 3~6개월 미만  | 2   | 1.8   |
| 6~12개월 미만 | 3   | 2.6   |
| 1~3년 미만   | 17  | 14.9  |
| 3~5년 미만   | 31  | 27.2  |
| 5~10년 미만  | 40  | 35.1  |
| 10년 이상    | 13  | 11.4  |
| 계         | 114 | 100.0 |

[그림 6-26]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 1) 응급조치

노동력 착취사례 총 114건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우는 13건이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쉼터를 이용한 경우 8건, 거주시설 2건, 기타 장소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6-4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 쉼터   | 거주시설 | 의료기관 | 기타   | 계     |
|------|------|------|------|-------|
| 8    | 2    | 1    | 2    | 13    |
| 61.5 | 15.4 | 7.7  | 15.4 | 100.0 |

##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93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상담지원이 56.0%(612회)로 가장 많았으며, 사법지원 21.3%(233회), 복지지원 10.4%(114회), 거주지원 5.4%(59회)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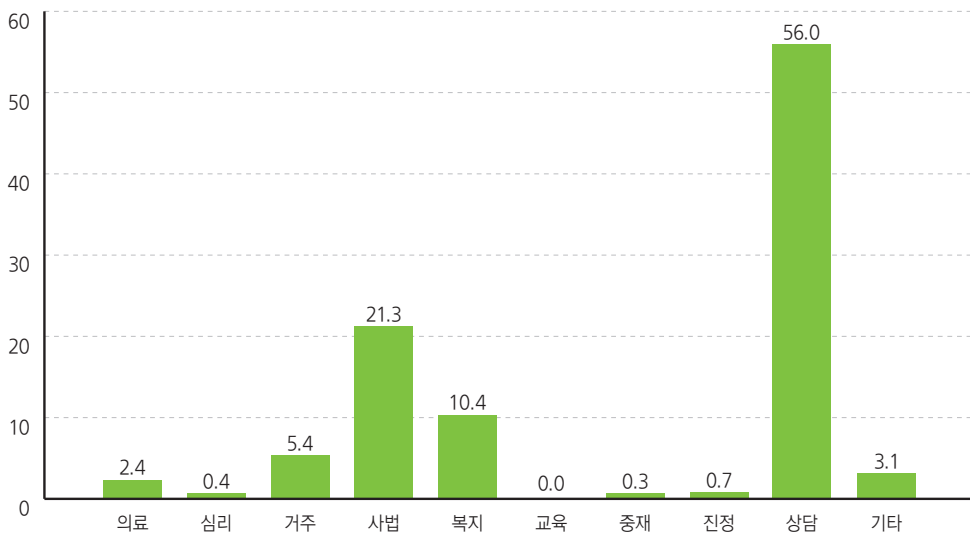
[표 6-4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 의료  | 심리  | 거주  | 사법   | 복지   | 교육 | 중재  | 진정  | 상담   | 기타  | 계     |
|-----|-----|-----|------|------|----|-----|-----|------|-----|-------|
| 26  | 4   | 59  | 233  | 114  | —  | 3   | 8   | 612  | 34  | 1,093 |
| 2.4 | 0.4 | 5.4 | 21.3 | 10.4 | —  | 0.3 | 0.7 | 56.0 | 3.1 | 100.0 |

[그림 6-2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



노동력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지원은 총 233회 실시하였다. 이중 절차지원 27.9%(65회), 법률상담 5.2%(12회), 고발 3.9%(9회), 수사의뢰 · 소송구조 각각 2.1%(5회) 등을 실시하였다.

[표 6-5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 고발  | 고소<br>대리 | 수사<br>의뢰 | 법률<br>상담 | 절차<br>지원 | 소송<br>구조 | 후견인<br>선임 | 노동청<br>진정 | 기타   | 계     |
|-----|----------|----------|----------|----------|----------|-----------|-----------|------|-------|
| 9   | 1        | 5        | 12       | 65       | 5        | 1         | 3         | 132  | 233   |
| 3.9 | 0.4      | 2.1      | 5.2      | 27.9     | 2.1      | 0.4       | 1.3       | 56.7 | 100.0 |



##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란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에서 접수된 학대신고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학대로 판단한 사례이다.

2020년 12월말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539개로 총 33,071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관, 한국수어 통역센터 등)은 1,519개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1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720개이다.

###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2021년 전체 학대사례의 27.2%(306건)이다. 이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46.7%(143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3%(62건), 미신고시설 9.2%(28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8.2%(25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2%(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전체 학대사례의 26.5%(267건))와 비교하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14.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관련시설, 미신고시설, 기타 복지관련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증가했다.

[표 6-5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 시설유형        |             | 건수  | 비율    |
|-------------|-------------|-----|-------|
| 교육기관        |             | 25  | 8.2   |
| 장애인<br>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143 | 46.7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16  | 5.2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62  | 20.3  |
|             | 소계          | 221 | 72.2  |
| 보호시설(쉼터)    |             | 2   | 0.7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5   | 1.6   |
| 정신재활시설      |             | 1   | 0.3   |
| 아동관련시설      |             | 11  | 3.6   |
| 노인관련시설      |             | 5   | 1.6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8   | 2.6   |
| 미신고시설       |             | 28  | 9.2   |
| 계           |             | 306 | 100.0 |

##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시도별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3.0%(10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7.0(52건), 충북 11.1%(34건), 강원 5.9%(18건), 전남 4.9%(15건), 경북 4.6%(14건) 등의 순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기(29건), 충북(23건), 전남(15건)이 크게 늘었으며, 서울(73건)과 전북(27건)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들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경기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1건), 충북(18건), 전남(15건), 경북(13건) 등의 순이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과 거주 장애인 수는 경기도(316개, 6,580명)가 가장 많고, 서울(265개, 3,910명), 경남(96개, 2,108명), 경북(93개, 2,901명) 등의 순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서울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6건이다. 2020년 12월말 기준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 수는 경기도(145개, 3,832명), 서울(138개, 4,226명), 경남(56개, 1,237명) 등의 순이다.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학대는 경기(6건), 충북(4건) 등의 순이었고, 미신고시설은 경기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6-5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 구분 |      | 교육<br>기관 |     | 장애인<br>거주시설 |      | 장애인<br>지역사회<br>재활시설 |     | 장애인<br>직업<br>재활시설 |      | 보호시설<br>(쉼터) |     | 그 외<br>장애인<br>지원기관 |     | 정신<br>재활시설 |     | 기타<br>복지관련<br>시설 |     | 미신고<br>시설 |     | 계   |       |
|----|------|----------|-----|-------------|------|---------------------|-----|-------------------|------|--------------|-----|--------------------|-----|------------|-----|------------------|-----|-----------|-----|-----|-------|
| 서울 |      | —        | —   | 21          | 6.9  | —                   | —   | 30                | 9.8  | —            | —   | —                  | —   | —          | —   | 1                | 0.3 | —         | —   | 52  | 17.0  |
| 부산 |      | 2        | 0.7 | 4           | 1.3  | 2                   | 0.7 | —                 | —    | —            | —   | —                  | —   | —          | —   | 1                | 0.3 | —         | —   | 9   | 2.9   |
| 대구 |      | 2        | 0.7 | 4           | 1.3  | —                   | —   | —                 | —    | —            | —   | —                  | —   | 1          | 0.3 | —                | —   | —         | —   | 7   | 2.3   |
| 인천 |      | 3        | 1.0 | 2           | 0.7  | 1                   | 0.3 | —                 | —    | —            | —   | —                  | —   | —          | —   | 4                | 1.3 | 1         | 0.3 | 11  | 3.6   |
| 광주 |      | 1        | 0.3 | 4           | 1.3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6   | 2.0   |
| 대전 |      | 1        | 0.3 | 1           | 0.3  | 3                   | 1.0 | 1                 | 0.3  | —            | —   | —                  | —   | —          | —   | —                | —   | —         | —   | 6   | 2.0   |
| 울산 |      | 3        | 1.0 | —           | —    | 1                   | 0.3 | —                 | —    | —            | —   | 1                  | 0.3 | —          | —   | —                | —   | —         | —   | 5   | 1.6   |
| 세종 |      | —        | —   | 10          | 3.3  | 1                   | 0.3 | —                 | —    | —            | —   | —                  | —   | —          | —   | 1                | 0.3 | —         | —   | 12  | 3.9   |
| 경기 | 경기   | 2        | 0.7 | 5           | 1.6  | 4                   | 1.3 | 5                 | 1.6  | —            | —   | 1                  | 0.3 | —          | —   | 6                | 2.0 | 18        | 5.9 | 41  | 13.4  |
|    | 경기북부 | 4        | 1.3 | 28          | 9.2  | —                   | —   | 21                | 6.9  | —            | —   | 1                  | 0.3 | —          | —   | 3                | 1.0 | 3         | 1.0 | 60  | 19.6  |
|    | 소계   | 6        | 2.0 | 33          | 10.8 | 4                   | 1.3 | 26                | 8.5  | —            | —   | 2                  | 0.7 | —          | —   | 9                | 2.9 | 21        | 6.9 | 101 | 33.0  |
| 강원 |      | —        | —   | 12          | 3.9  | —                   | —   | —                 | —    | —            | —   | —                  | —   | —          | —   | 1                | 0.3 | 5         | 1.6 | 18  | 5.9   |
| 충북 |      | 4        | 1.3 | 18          | 5.9  | 1                   | 0.3 | 4                 | 1.3  | 1            | 0.3 | 2                  | 0.7 | —          | —   | 4                | 1.3 | —         | —   | 34  | 11.1  |
| 충남 |      | 1        | 0.3 | —           | —    | —                   | —   | 1                 | 0.3  | —            | —   | —                  | —   | —          | —   | 1                | 0.3 | —         | —   | 3   | 1.0   |
| 전북 |      | 1        | 0.3 | 3           | 1.0  | —                   | —   | —                 | —    | —            | —   | —                  | —   | —          | —   | 1                | 0.3 | 1         | 0.3 | 6   | 2.0   |
| 전남 |      | —        | —   | 15          |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4.9   |
| 경북 |      | 1        | 0.3 | 13          | 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4.6   |
| 경남 |      | —        | —   | 1           | 0.3  | 2                   | 0.7 | —                 | —    | —            | —   | —                  | —   | —          | —   | 1                | 0.3 | —         | —   | 4   | 1.3   |
| 제주 |      | —        | —   | 2           | 0.7  | —                   | —   | —                 | —    | 1            | 0.3 | —                  | —   | —          | —   | —                | —   | —         | —   | 3   | 1.0   |
| 계  |      | 25       | 8.2 | 143         | 46.7 | 16                  | 5.2 | 63                | 20.3 | 2            | 0.7 | 5                  | 1.6 | 1          | 0.3 | 24               | 7.8 | 28        | 9.2 | 306 | 100.0 |

## 나.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 1) 성별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68.6%(210명), 여성이 31.4%(96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2배 많았다.

[표 6-5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 구분 | 교육 기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 보호시설 (쉼터)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     | 정신 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 시설 |     | 미신고 시설 |     | 계   |       |
|----|-------|-----|----------|------|---------------|-----|-------------|------|-----------|-----|--------------|-----|---------|-----|------------|-----|--------|-----|-----|-------|
| 남성 | 20    | 6.5 | 101      | 33.0 | 12            | 3.9 | 43          | 14.1 | -         | -   | 2            | 0.7 | -       | -   | 15         | 4.9 | 17     | 5.6 | 210 | 68.6  |
| 여성 | 5     | 1.6 | 42       | 13.7 | 4             | 1.3 | 19          | 6.2  | 2         | 0.7 | 3            | 1.0 | 1       | 0.3 | 9          | 2.9 | 11     | 3.6 | 96  | 31.4  |
| 계  | 25    | 8.1 | 143      | 46.7 | 16            | 5.2 | 62          | 20.3 | 2         | 0.7 | 5            | 1.6 | 1       | 0.3 | 24         | 7.8 | 28     | 9.1 | 306 | 100.0 |

### 2) 연령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30대가 21.9%(6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20.6%(63명), 40대 18.6%(57명), 만 19세 이하 18.3%(56명) 등의 순이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30대 11.8%(36명), 40대 10.8%(33명), 20대 9.8%(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역시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은 만 17세 이하 장애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신고시설은 50대, 기타 복지관련시설은 만 17세 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표 6-5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 구분          | 교육 기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 보호시설 (쉼터)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     | 정신 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 시설 |     | 미신고 시설 |     | 계   |       |
|-------------|-------|-----|----------|------|---------------|-----|-------------|------|-----------|-----|--------------|-----|---------|-----|------------|-----|--------|-----|-----|-------|
| 17세 이하      | 19    | 6.2 | 18       | 5.9  | 2             | 0.7 | -           | -    | -         | -   | -            | -   | -       | -   | 10         | 3.3 | -      | -   | 49  | 16.0  |
| 18~19세      | 3     | 1.0 | 2        | 0.7  | -             | -   | -           | -    | -         | -   | -            | -   | -       | -   | 2          | 0.7 | -      | -   | 7   | 2.3   |
| 20대(20~29세) | 2     | 0.7 | 30       | 9.8  | 10            | 3.3 | 13          | 4.2  | -         | -   | 1            | 0.3 | 1       | 0.3 | 2          | 0.7 | 4      | 1.3 | 63  | 20.6  |
| 30대(30~39세) | 1     | 0.3 | 36       | 11.8 | 3             | 1.0 | 20          | 6.5  | 2         | 0.7 | 1            | 0.3 | -       | -   | -          | -   | 4      | 1.3 | 67  | 21.9  |
| 40대(40~49세) | -     | -   | 33       | 10.8 | -             | -   | 19          | 6.2  | -         | -   | -            | -   | -       | -   | -          | -   | 5      | 1.6 | 57  | 18.6  |
| 50대(50~59세) | -     | -   | 14       | 4.6  | -             | -   | 8           | 2.6  | -         | -   | 3            | 1.0 | -       | -   | 7          | 2.3 | 7      | 2.3 | 39  | 12.7  |
| 60~64세      | -     | -   | 6        | 2.0  | 1             | 0.3 | 1           | 0.3  | -         | -   | -            | -   | -       | -   | 1          | 0.3 | 2      | 0.7 | 11  | 3.6   |
| 65세 이상      | -     | -   | 4        | 1.3  | -             | -   | 1           | 0.3  | -         | -   | -            | -   | -       | -   | 2          | 0.7 | 6      | 2.0 | 13  | 4.2   |
| 계           | 25    | 8.2 | 143      | 46.7 | 16            | 5.2 | 62          | 20.3 | 2         | 0.7 | 5            | 1.6 | 1       | 0.3 | 24         | 7.8 | 28     | 9.2 | 306 | 100.0 |

### 3) 장애유형 및 정도

집단이용시설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75.8%(2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5.6%(17건), 뇌병변장애 3.9%(12건),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정신장애 각각 3.6%(11건) 등의 순이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의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표 6-5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 구분    | 교육 기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 보호시설 (쉼터) |     | 그 외 장애인 자원기관 |     | 정신 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 시설 |     | 미신고 시설 |     | 계   |       |
|-------|-------|-----|----------|------|---------------|-----|-------------|------|-----------|-----|--------------|-----|---------|-----|------------|-----|--------|-----|-----|-------|
| 지체장애  | 2     | 0.7 | 2        | 0.7  | -             | -   | 1           | 0.3  | 1         | 0.3 | -            | -   | -       | -   | 2          | 0.7 | 3      | 1.0 | 11  | 3.6   |
| 뇌병변장애 | 1     | 0.3 | 7        | 2.3  | -             | -   | 1           | 0.3  | -         | -   | -            | -   | -       | -   | 2          | 0.7 | 1      | 0.3 | 12  | 3.9   |
| 시각장애  | -     | -   | 8        | 2.6  | -             | -   | 1           | 0.3  | -         | -   | -            | -   | -       | -   | 1          | 0.3 | 1      | 0.3 | 11  | 3.6   |
| 청각장애  | -     | -   | -        | -    | 1             | 0.3 | -           | -    | -         | -   | 1            | 0.3 | -       | -   | 1          | 0.3 | -      | -   | 3   | 1.0   |
| 언어장애  | -     | -   | 2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0.7   |
| 지적장애  | 16    | 5.2 | 120      | 39.2 | 10            | 3.3 | 55          | 18.0 | 1         | 0.3 | 4            | 1.3 | -       | -   | 8          | 2.6 | 18     | 5.9 | 232 | 75.8  |
| 자폐성장애 | 5     | 1.6 | 3        | 1.0  | 5             | 1.6 | 1           | 0.3  | -         | -   | -            | -   | -       | -   | 3          | 1.0 | -      | -   | 17  | 5.6   |
| 정신장애  | -     | -   | 1        | 0.3  | -             | -   | 1           | 0.3  | -         | -   | -            | -   | 1       | 0.3 | 4          | 1.3 | 4      | 1.3 | 11  | 3.6   |
| 뇌전증장애 | -     | -   | -        | -    | -             |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미등록   | 1     | 0.3 | -        | -    | -             | -   | 1           | 0.3  | -         | -   | -            | -   | -       | -   | 3          | 1.0 | 1      | 0.3 | 6   | 2.0   |
| 계     | 25    | 8.2 | 143      | 46.7 | 16            | 5.2 | 62          | 20.3 | 2         | 0.7 | 5            | 1.6 | 1       | 0.3 | 24         | 7.8 | 28     | 9.2 | 306 | 100.0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97.3%(292건)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2.7%(8건)이었다.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었다.

[표 6-5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 구분                     | 교육 기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 보호시설 (쉼터) |     | 그 외 장애인 자원기관 |     | 정신 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 시설 |     | 미신고 시설 |     | 계   |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 24    | 8.0 | 142      | 47.3 | 16            | 5.3 | 59          | 19.7 | 1         | 0.3 | 5            | 1.7 | 1       | 0.3 | 18         | 6.0 | 26     | 8.7 | 292 | 97.3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 | -     | -   | 1        | 0.3  | -             | -   | 2           | 0.7  | 1         | 0.3 | -            | -   | -       | -   | 3          | 1.0 | 1      | 0.3 | 8   | 2.7   |
| 계                      | 24    | 8.0 | 143      | 47.7 | 16            | 5.3 | 61          | 20.3 | 2         | 0.7 | 5            | 1.7 | 1       | 0.3 | 21         | 7.0 | 27     | 9.0 | 300 | 100.0 |

##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신고의무자(44.1%, 135건)보다 비신고의무자(55.9%, 171건)에 의한 신고율이 높았다.

신고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7.1%(83건)로 가장 많이 신고했다. 다음으로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5.5%(78건), 타인 13.4%(41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2.7%(39건), 부모 5.2%(16건) 등의 순이다. 반면 집단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2건(0.7%)에 불과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높았으며, 교육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복지관련시설 등에서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1.6%),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14.1%) 등의 순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신고의무자인 타인(9.5%), 미신고시설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6.5%), 교육기관은 부(父)·모(母)(3.6%), 기타 복지관련시설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2.0%)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표 6-57]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 구분                         |                            | 교육<br>기관                        |       | 장애인<br>거주시설 |      | 장애인<br>지역사회<br>재활시설 |     | 장애인<br>직업<br>재활시설 |     | 보호시설<br>(쉼터) |     | 그 외<br>장애인<br>지원기관 |     | 정신<br>재활시설 |     | 기타<br>복지관련<br>시설 |     | 미신고<br>시설 |     | 계   |      |       |
|----------------------------|----------------------------|---------------------------------|-------|-------------|------|---------------------|-----|-------------------|-----|--------------|-----|--------------------|-----|------------|-----|------------------|-----|-----------|-----|-----|------|-------|
| 신<br>고<br>의<br>무<br>자      | 사회복지<br>전담공무원              | -                               | -     | 9           | 2.9  | 3                   | 1.0 | 1                 | 0.3 | -            | -   | -                  | -   | -          | -   | 6                | 2.0 | 20        | 6.5 | 39  | 12.7 |       |
|                            | 사회복지시설<br>종사자              | -                               | -     | 66          | 21.6 | 8                   | 2.6 | 4                 | 1.3 | -            | -   | 2                  | 0.7 | 1          | 0.3 | 2                | 0.7 | -         | -   | 83  | 27.1 |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br>및 지원기관 종사자    | 1                               | 0.3   | -           |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3         | 1.0 | 5   | 1.6  |       |
|                            | 의료인 및<br>의료기관의 장           | -                               |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   | 2   | 0.7  |       |
|                            | 초·중·고<br>교직원 등             | 6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2.0  |       |
|                            | 소계                         | 7                               | 2.3   | 76          | 24.8 | 12                  | 3.9 | 5                 | 1.6 | -            | -   | 2                  | 0.7 | 1          | 0.3 | 9                | 2.9 | 23        | 7.5 | 135 | 44.1 |       |
| 비<br>신<br>고<br>의<br>무<br>자 | 본인                         |                                 | -     | -           | 1    | 0.3                 | -   | -                 | -   | -            | 1   | 0.3                | -   | -          | -   | -                | -   | -         | -   | 2   | 0.7  |       |
|                            | 가<br>족<br>및<br>친<br>인<br>척 | 부모                              | 11    | 3.6         | -    | -                   | 1   | 0.3               | -   | -            | -   | -                  | -   | -          | -   | -                | 4   | 1.3       | -   | -   | 16   | 5.2   |
|                            |                            | 형제자매 및<br>그의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                | -   | -         | 1   | 0.3 | 2    | 0.7   |
|                            |                            | 그 외 친척                          | 1     | 0.3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0.7   |
|                            |                            | 소계                              | 12    | 3.9         | 1    | 0.3                 | 1   | 0.3               | -   | -            | -   | -                  | 1   | 0.3        | -   | -                | 4   | 1.3       | 1   | 0.3 | 20   | 6.5   |
|                            |                            | 유<br>관<br>기<br>관<br>종<br>사<br>자 | 일반공무원 | -           | -    | 6                   | 2.0 | 1                 | 0.3 | 1            | 0.3 | 1                  | 0.3 | -          | -   | -                | -   | 2         | 0.7 | -   | -    | 11    |
|                            | 경찰공무원                      |                                 | 3     | 1.0         | 7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3.3   |
|                            | 그 외 장애인<br>지원기관 종사자        |                                 | -     | -           | 43   | 14.1                | -   | -                 | 27  | 8.8          | -   | -                  | 1   | 0.3        | -   | -                | 3   | 1.0       | 4   | 1.3 | 78   | 25.5  |
|                            | 노인관련기관<br>종사자              |                                 | -     |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아동관련기관<br>종사자              |                                 | 1     | 0.3         | 1    | 0.3                 | -   | -                 | -   | -            | -   | -                  | -   | -          | -   | -                | 4   | 1.3       | -   | -   | 6    | 2.0   |
|                            | 기타 복지관련<br>기관 종사자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소계                         |                                 | 5     | 1.6         | 58   | 19.0                | 1   | 0.3               | 28  | 9.2          | 1   | 0.3                | 1   | 0.3        | -   | -                | 9   | 2.9       | 4   | 1.3 | 107  | 35.0  |
|                            | 타인                         |                                 | 1     | 0.3         | 6    | 2.0                 | 2   | 0.7               | 29  | 9.5          | -   | -                  | 1   | 0.3        | -   | -                | 2   | 0.7       | -   | -   | 41   | 13.4  |
|                            | 파악 안 됨                     |                                 | -     |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소계                         |                                 | 18    | 5.9         | 67   | 21.9                | 4   | 1.3               | 57  | 18.6         | 2   | 0.7                | 3   | 1.0        | -   | -                | 15  | 4.9       | 5   | 1.6 | 171  | 55.9  |
|                            | 계                          |                                 | 25    | 8.2         | 143  | 46.7                | 16  | 5.2               | 62  | 20.3         | 2   | 0.7                | 5   | 1.6        | 1   | 0.3              | 24  | 7.8       | 28  | 9.2 | 306  | 100.0 |

## 라.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집단이용시설의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69.0%(21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거인 9.2%(28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8.5%(26건), 초·중·고 교직원 4.2%(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9.6%), 미신고시설은 동거인(6.2%), 교육기관은 초·중·고 교직원 (4.2%), 기타 복지관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0%)에 의한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8]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 구분                  |                          | 교육기관 |     | 장애인거주시설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보호시설(쉼터)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정신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미신고시설 |     | 계   |       |
|---------------------|--------------------------|------|-----|---------|------|-------------|-----|-----------|------|----------|-----|-------------|-----|--------|-----|-----------|-----|-------|-----|-----|-------|
| 가족 및 친인척            | 모                        | -    | -   | -       |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소계                       | -    | -   | -       |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타인                  | 동거인                      | -    | -   | 7       | 2.3  | -           | -   | -         | -    | -        | -   | -           | -   | -      | -   | 2         | 0.7 | 19    | 6.2 | 28  | 9.2   |
|                     | 이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   | 1   | 0.3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7    | 2.3 | 1       | 0.3  | 4           | 1.3 | 1         | 0.3  | 1        | 0.3 | -           | -   | 1      | 0.3 | 3         | 1.0 | 8     | 2.6 | 26  | 8.5   |
|                     | 고용주                      | -    | -   | -       | -    | -           | -   | 1         | 0.3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모르는 사람                   | 2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   | 3   | 1.0   |
|                     | 소계                       | 9    | 2.9 | 8       | 2.6  | 4           | 1.3 | 2         | 0.7  | 1        | 0.3 | -           | -   | 1      | 0.3 | 7         | 2.3 | 27    | 8.8 | 59  | 19.3  |
|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 135     | 44.1 | 9           | 2.9 | 60        | 19.6 | -        | -   | -           | -   | -      | -   | 6         | 2.0 | 1     | 0.3 | 211 | 69.0  |
|                     |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 -    | -   | -       | -    | 2           | 0.7 | -         | -    | -        | -   | 1           | 0.3 | -      | -   | -         | -   | -     | -   | 3   | 1.0   |
|                     | 보육교직원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3 | -     | -   | 5   | 1.6   |
|                     | 초·중·고 교직원 등              | 13   | 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4.2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 -    | -   | -       | -    | -           | -   | -         | -    | 1        | 0.3 | -           | -   | -      | -   | -         | -   | -     | -   | 1   | 0.3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3 | -     | -   | 4   | 1.3   |
|                     | 소계                       | 14   | 4.6 | 135     | 44.1 | 11          | 3.6 | 60        | 19.6 | 1        | 0.3 | 1           | 0.3 | -      | -   | 14        | 4.6 | 1     | 0.3 | 237 | 77.5  |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그 외 장애인지원 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4           | 1.3 | -      | -   | 1         | 0.3 | -     | -   | 5   | 1.6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1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   | 2   | 0.7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0.3 | -     | -   | 1   | 0.3   |
|                     | 소계                       | 2    | 0.7 | -       | -    | -           | -   | -         | -    | -        | -   | 4           | 1.3 | -      | -   | 3         | 1.0 | -     | -   | 9   | 2.9   |
| 계                   |                          | 25   | 8.2 | 143     | 46.7 | 16          | 5.2 | 62        | 20.3 | 2        | 0.7 | 5           | 1.6 | 1      | 0.3 | 24        | 7.8 | 28    | 9.2 | 306 | 100.0 |

##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의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30.9%(95건)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 17.6%(54건), 3~5년 미만 13.1%(40건), 5~10년 미만 11.8%(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대부분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신고시설의 경우 피해장애인이 3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1년 미만의 사례가 많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미신고시설은 3년 이상인 사례가 많았다. 반면 교육기관과 기타 복지관련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1년 미만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9]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단위: 건, %)

| 구분        | 교육기관 |     | 장애인거주시설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보호시설(쉼터)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정신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미신고시설 |     | 계   |       |
|-----------|------|-----|---------|------|-------------|-----|-----------|------|----------|-----|-------------|-----|--------|-----|-----------|-----|-------|-----|-----|-------|
| 3개월 미만    | 17   | 5.6 | 50      | 16.3 | 9           | 2.9 | 2         | 0.7  | -        | -   | 3           | 1.0 | 1      | 0.3 | 11        | 3.6 | 2     | 0.7 | 95  | 31.0  |
| 3~6개월 미만  | 6    | 2.0 | 12      | 3.9  | 2           | 0.7 | 4         | 1.3  | -        | -   | -           | -   | -      | -   | 4         | 1.3 | -     | -   | 28  | 9.2   |
| 6~12개월 미만 | 2    | 0.7 | 17      | 5.6  | 2           | 0.7 | -         | -    | 1        | 0.3 | 1           | 0.3 | -      | -   | 2         | 0.7 | -     | -   | 25  | 8.2   |
| 1~3년 미만   | -    | -   | 32      | 10.4 | 3           | 1.0 | 7         | 2.3  | 1        | 0.3 | -           | -   | -      | -   | 6         | 2.0 | 5     | 1.6 | 54  | 17.6  |
| 3~5년 미만   | -    | -   | 17      | 5.6  | -           | -   | 20        | 6.5  | -        | -   | -           | -   | -      | -   | 1         | 0.3 | 2     | 0.7 | 40  | 13.1  |
| 5~10년 미만  | -    | -   | 3       | 1.0  | -           | -   | 29        | 9.5  | -        | -   | 1           | 0.3 | -      | -   | -         | -   | 3     | 1.0 | 36  | 11.8  |
| 10년 이상    | -    | -   | 12      | 3.9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5.2 | 28  | 9.2   |
| 계         | 25   | 8.2 | 143     | 46.7 | 16          | 5.2 | 62        | 20.3 | 2        | 0.7 | 5           | 1.6 | 1      | 0.3 | 24        | 7.8 | 28    | 9.2 | 306 | 100.0 |

## 바.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가 24.2%(74건)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23.5%(72건), 신체적 학대 21.9%(67건), 정서적 학대 13.7%(42건), 방임 9.2%(28건), 성적 학대 7.5%(23건)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의 신체적 학대(27.4%) - 경제적 착취(24.9%) - 중복 학대(20.8%) - 정서적 학대(11.0%) - 성적 학대(10.1%) - 방임(5.8%)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



집단이용시설의 학대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중복 학대 27.3%(39건), 신체적 학대 24.5%(35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제적 착취 58.1%(36건), 중복 학대 24.2%(15건) 등의 순이었다. 미신고시설은 경제적 착취가 75.0%(21건), 교육기관은 신체적 학대가 44.0%(11건)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복지관련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중복 학대가 각각 29.2%(7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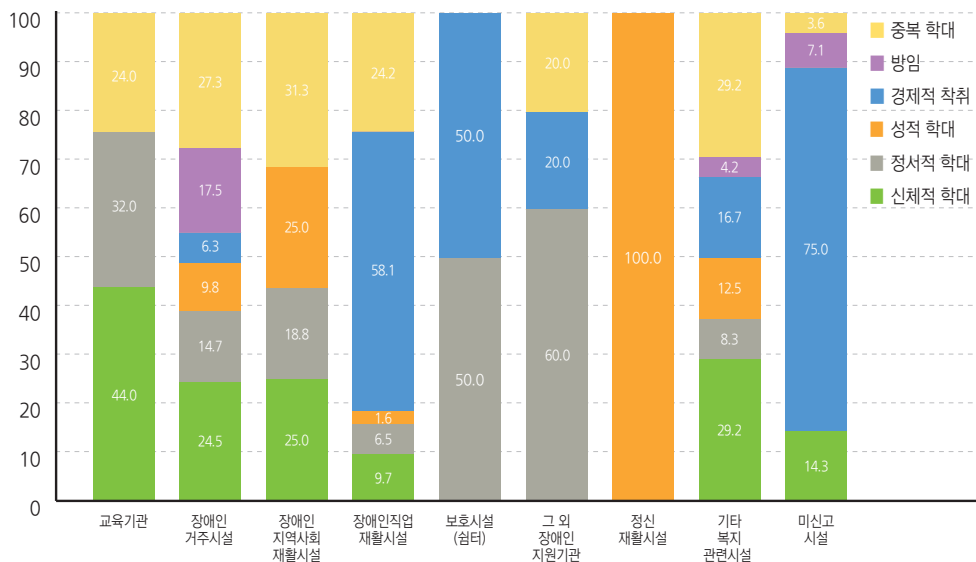
[표 6-6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 구분     | 교육 기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 보호시설 (쉼터)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       | 정신 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 시설 |       | 미신고 시설 |       | 계   |       |
|--------|-------|-------|----------|-------|---------------|-------|-------------|-------|-----------|-------|--------------|-------|---------|-------|------------|-------|--------|-------|-----|-------|
| 신체적 학대 | 11    | 44.0  | 35       | 24.5  | 4             | 25.0  | 6           | 9.7   | -         | -     | -            | -     | -       | -     | 7          | 29.2  | 4      | 14.3  | 67  | 21.9  |
| 정서적 학대 | 8     | 32.0  | 21       | 14.7  | 3             | 18.8  | 4           | 6.5   | 1         | 50.0  | 3            | 60.0  | -       | -     | 2          | 8.3   | -      | -     | 42  | 13.7  |
| 성적 학대  | -     | -     | 14       | 9.8   | 4             | 25.0  | 1           | 1.6   | -         | -     | -            | -     | 1       | 100.0 | 3          | 12.5  | -      | -     | 23  | 7.5   |
| 경제적 착취 | -     | -     | 9        | 6.3   | -             | -     | 36          | 58.1  | 1         | 50.0  | 1            | 20.0  | -       | -     | 4          | 16.7  | 21     | 75.0  | 72  | 23.5  |
| 유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임     | -     | -     | 25       | 17.5  | -             | -     | -           | -     | -         | -     | -            | -     | -       | -     | 1          | 4.2   | 2      | 7.1   | 28  | 9.2   |
| 중복 학대  | 6     | 24.0  | 39       | 27.3  | 5             | 31.3  | 15          | 24.2  | -         | -     | 1            | 20.0  | -       | -     | 7          | 29.2  | 1      | 3.6   | 74  | 24.2  |
| 계      | 25    | 100.0 | 143      | 100.0 | 16            | 100.0 | 62          | 100.0 | 2         | 100.0 | 5            | 100.0 | 1       | 100.0 | 24         | 100.0 | 28     | 100.0 | 306 | 100.0 |

[그림 6-2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총 306건 중 피해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398건이다.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119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6.6%(106건), 경제적 착취 22.1%(88건), 방임 14.8%(59건), 성적 학대 6.5%(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학대유형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신체적 학대가 32.8%(65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8.3%(56건), 방임 27.3%(54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제적 착취 62.0%(49건), 정서적 학대 22.8%(18건) 순이며, 교육기관은 신체적 학대 54.8%(17건), 정서적 학대 45.2%(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복지관련시설은 신체적 학대 41.9%(13건), 미신고시설은 경제적 착취 75.9%(22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신체적 학대 42.9%(9건)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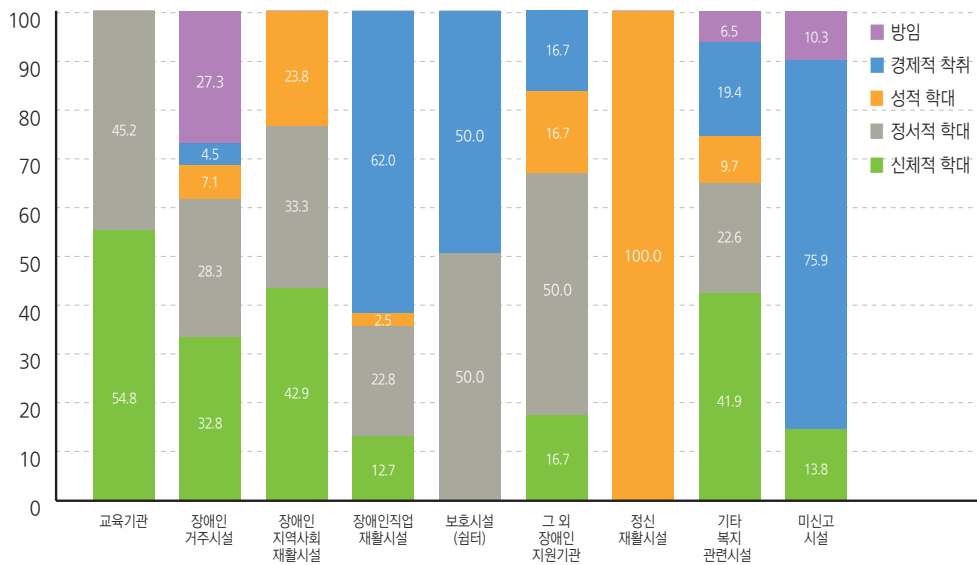
[표 6-61]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 구분     | 교육 기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 보호시설 (쉼터)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       | 정신 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 시설 |       | 미신고 시설 |       | 계   |       |
|--------|-------|-------|----------|-------|---------------|-------|-------------|-------|-----------|-------|--------------|-------|---------|-------|------------|-------|--------|-------|-----|-------|
| 신체적 학대 | 17    | 54.8  | 65       | 32.8  | 9             | 42.9  | 10          | 12.7  | -         | -     | 1            | 16.7  | -       | -     | 13         | 41.9  | 4      | 13.8  | 119 | 29.9  |
| 정서적 학대 | 14    | 45.2  | 56       | 28.3  | 7             | 33.3  | 18          | 22.8  | 1         | 50.0  | 3            | 50.0  | -       | -     | 7          | 22.6  | -      | -     | 106 | 26.6  |
| 성적 학대  | -     | -     | 14       | 7.1   | 5             | 23.8  | 2           | 2.5   | -         | -     | 1            | 16.7  | 1       | 100.0 | 3          | 9.7   | -      | -     | 26  | 6.5   |
| 경제적 착취 | -     | -     | 9        | 4.5   | -             | -     | 49          | 62.0  | 1         | 50.0  | 1            | 16.7  | -       | -     | 6          | 19.4  | 22     | 75.9  | 88  | 22.1  |
| 유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임     | -     | -     | 54       | 27.3  | -             | -     | -           | -     | -         | -     | -            | -     | -       | -     | 2          | 6.5   | 3      | 10.3  | 59  | 14.8  |
| 계      | 31    | 100.0 | 198      | 100.0 | 21            | 100.0 | 79          | 100.0 | 2         | 100.0 | 6            | 100.0 | 1       | 100.0 | 31         | 100.0 | 29     | 100.0 | 398 | 100.0 |

[그림 6-2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



## 사.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다수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46.7%, 143건)과 미신고시설(9.2%, 28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2021년도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미신고시설 포함)은 총 37개 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보면 전년도(중증장애인거주시설 47.7%)와 다르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39.8%(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4.0%(41건), 미신고시설 16.4%(28건), 공동생활가정 13.5%(23건), 단기거주시설 6.4%(11건) 순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규모별로 보면 전년도(31인~100인 미만 시설, 52.9%)와 다르게 30인 이하 시설이 74.9%(128건)로 가장 많았고, 31인~100인 미만 시설이 15.8%(27건), 100인 이상 시설이 9.4%(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별 장애인학대 발생 역시 30인 이하 시설(66건)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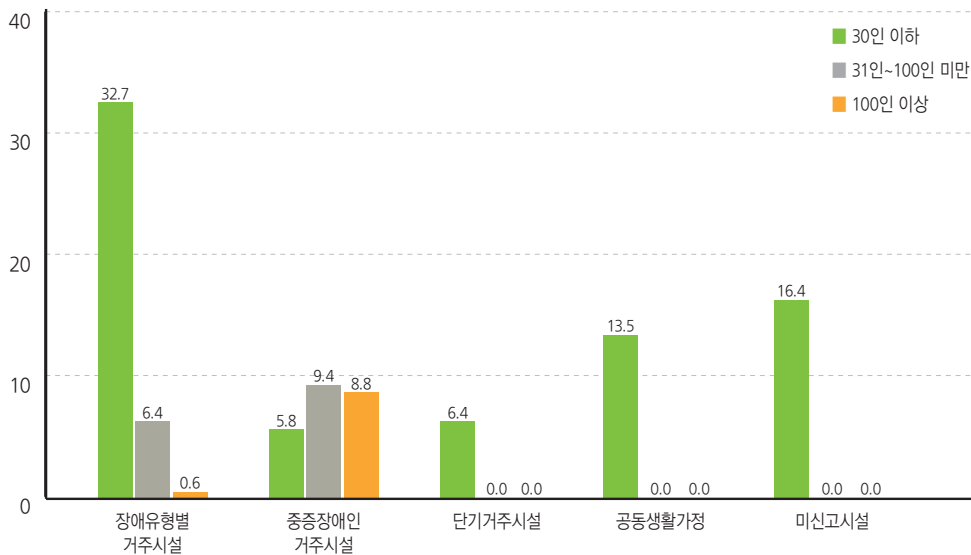
[표 6-62]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 구분            |       | 30인 이하 |      | 31인~100인 미만 |      | 100인 이상 |     | 계   |       |
|---------------|-------|--------|------|-------------|------|---------|-----|-----|-------|
| 장애유형별<br>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 6      | 3.5  | 2           | 1.2  | —       | —   | 8   | 4.7   |
|               | 시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청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지적장애인 | 50     | 29.2 | 9           | 5.3  | 1       | 0.6 | 60  | 35.1  |
|               | 소계    | 56     | 32.7 | 11          | 6.4  | 1       | 0.6 | 68  | 39.8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 10     | 5.8  | 16          | 9.4  | 15      | 8.8 | 41  | 24.0  |
| 단기거주시설        |       | 11     | 6.4  | —           | —    | —       | —   | 11  | 6.4   |
| 공동생활가정        |       | 23     | 13.5 | —           | —    | —       | —   | 23  | 13.5  |
| 계             |       | 100    | 58.5 | 27          | 15.8 | 16      | 9.4 | 143 | 83.6  |
| 미신고시설         |       | 28     | 16.4 | —           | —    | —       | —   | 28  | 16.4  |
| 총계            |       | 128    | 74.9 | 27          | 15.8 | 16      | 9.4 | 171 | 100.0 |

[그림 6-30]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



##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직영 및 위탁)와 민간(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개인)으로 구분된다.

2021년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는 민간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72.0%(103건)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시설 25.2%(36건), 기타법인시설 2.8%(4건)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회복지법인(126건)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사례 수는 18.3% 감소했으나, 개인(20건)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사례 수는 80.0% 증가했다.

[표 6-6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 구분            |       | 사회복지법인 |      | 기타법인 |     | 개인 |      | 계   |       |
|---------------|-------|--------|------|------|-----|----|------|-----|-------|
| 장애유형별<br>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 2      | 1.4  | —    | —   | 6  | 4.2  | 8   | 5.6   |
|               | 시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청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지적장애인 | 52     | 36.4 | 3    | 2.1 | 5  | 3.5  | 60  | 42.0  |
|               | 소계    | 54     | 37.8 | 3    | 2.1 | 11 | 7.7  | 68  | 47.6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 41     | 28.7 | —    | —   | —  | —    | 41  | 28.7  |
| 단기거주시설        |       | 4      | 2.8  | 1    | 0.7 | 6  | 4.2  | 11  | 7.7   |
| 공동생활가정        |       | 4      | 2.8  | —    | —   | 19 | 13.3 | 23  | 16.1  |
| 총계            |       | 103    | 72.0 | 4    | 2.8 | 36 | 25.2 | 143 | 100.0 |

###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미신고시설 포함)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71건이다. 이중 학대피해 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227건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 방임 - 정서적 학대 - 경제적 착취 -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 경제적 착취 - 성적 학대)과 비교하면 2021년에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이 37.7%(2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36.2%(25건)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55.4%(31건)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21.4%(12건)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57.1%(8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2.9%(6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는 미신고시설이 71.0%(22건)로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6.1%(5건) 순이었다. 방임은 지적장애인거주시설 38.6%(22건), 공동생활가정 36.8%(2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모든 학대유형에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4]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 구분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방임 |       | 계   |       |
|---------------|-------|--------|-------|--------|-------|-------|-------|--------|-------|----|-------|-----|-------|
| 장애유형별<br>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 2      | 2.9   | -      | -     | -     | -     | -      | -     | 6  | 10.5  | 8   | 3.5   |
|               | 시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장애인 | 26     | 37.7  | 31     | 55.4  | 8     | 57.1  | 5      | 16.1  | 22 | 38.6  | 92  | 40.5  |
|               | 소계    | 28     | 40.6  | 31     | 55.4  | 8     | 57.1  | 5      | 16.1  | 28 | 49.1  | 100 | 44.1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 25     | 36.2  | 7      | 12.5  | 6     | 42.9  | 3      | 9.7   | 4  | 7.0   | 45  | 19.8  |
| 단기거주시설        |       | 9      | 13.0  | 6      | 10.7  | -     | -     | -      | -     | 1  | 1.8   | 16  | 7.0   |
| 공동생활가정        |       | 3      | 4.3   | 12     | 21.4  | -     | -     | 1      | 3.2   | 21 | 36.8  | 37  | 16.3  |
| 계             |       | 65     | 94.2  | 56     | 100.0 | 14    | 100.0 | 9      | 29.0  | 54 | 94.7  | 198 | 87.2  |
| 미신고시설         |       | 4      | 5.8   | -      | -     | -     | -     | 22     | 71.0  | 3  | 5.3   | 29  | 12.8  |
| 총계            |       | 69     | 100.0 | 56     | 100.0 | 14    | 100.0 | 31     | 100.0 | 57 | 100.0 | 227 | 100.0 |

## 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 1) 응급조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는 총 306건이며, 이중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14건(4.6%)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응급조치는 쉼터 8건, 거주시설 4건, 기타 2건 순이었다.

[표 6-6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단위: 건, %)

| 구분   | 교육 기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 보호시설 (쉼터)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   | 정신 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 시설 |   | 미신고 시설 |      | 계  |       |
|------|-------|---|----------|------|---------------|---|-------------|---|-----------|---|--------------|---|---------|---|------------|---|--------|------|----|-------|
| 쉼터   | -     | - | 8        | 5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57.1  |
| 거주시설 | -     | - | 4        | 2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28.6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4.3 | 2  | 14.3  |
| 계    | -     | - | 12       | 85.7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4.3 | 14 | 100.0 |

##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1,55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상담지원이 56.6%(877회)로 가장 많았으며, 사법지원 25.6%(397회), 기타지원 4.5%(70회), 심리지원 4.4%(68회), 거주·복지지원 각각 3.6%(56회)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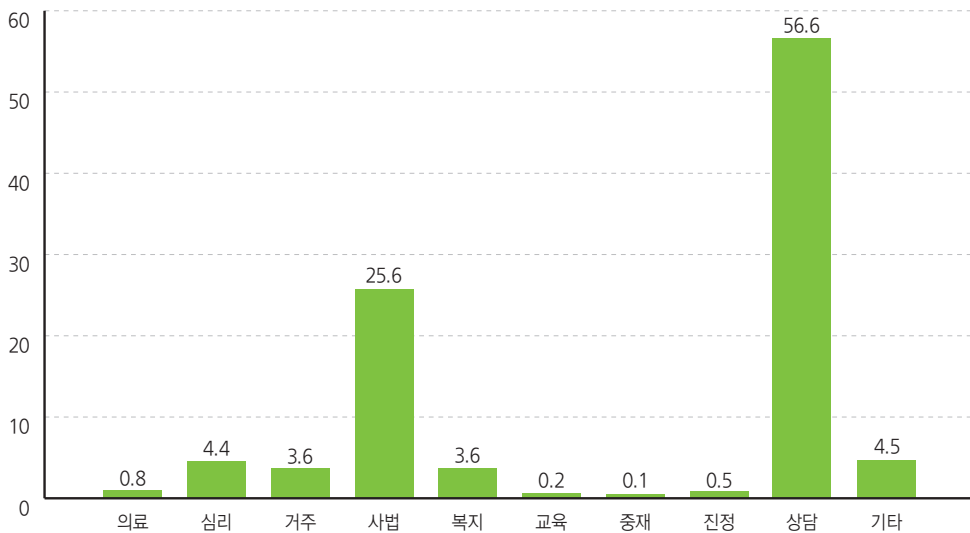
[표 6-6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 의료  | 심리  | 거주  | 사법   | 복지  | 교육  | 중재  | 진정  | 상담   | 기타  | 계     |
|-----|-----|-----|------|-----|-----|-----|-----|------|-----|-------|
| 13  | 68  | 56  | 397  | 56  | 3   | 2   | 8   | 877  | 70  | 1,550 |
| 0.8 | 4.4 | 3.6 | 25.6 | 3.6 | 0.2 | 0.1 | 0.5 | 56.6 | 4.5 | 100.0 |

[그림 6-3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은 총 397회 실시하였다. 기타를 제외하면 절차지원이 26.4%(105회)로 가장 많았고, 법률상담 6.0%(24회), 수사의뢰 2.8%(11회), 노동청 진정 0.8%(3회)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6-67]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 구분     | 교육 기관 |       | 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       | 보호시설 (쉼터)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   | 정신 재활시설 |   | 기타 복지관련 시설 |       | 미신고 시설 |       | 계   |       |
|--------|-------|-------|----------|-------|---------------|-------|-------------|-------|-----------|-------|--------------|---|---------|---|------------|-------|--------|-------|-----|-------|
| 고소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의뢰   | -     | -     | 11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2.8   |
| 법률상담   | 12    | 26.7  | 9        | 4.1   | 3             | 6.1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6.0   |
| 절차지원   | 6     | 13.3  | 34       | 15.3  | 23            | 46.9  | 8           | 36.4  | -         | -     | -            | - | -       | - | 17         | 94.4  | 17     | 45.9  | 105 | 26.4  |
| 소송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견인 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청 진정 | -     | -     | -        | -     | 1             | 2.0   | -           | -     | -         | -     | -            | - | -       | - | -          | -     | 2      | 5.4   | 3   | 0.8   |
| 기타     | 27    | 60.0  | 146      | 65.8  | 20            | 40.8  | 8           | 36.4  | 3         | 75.0  | -            | - | -       | - | 1          | 5.6   | 14     | 37.8  | 219 | 55.2  |
| 계      | 45    | 100.0 | 222      | 100.0 | 49            | 100.0 | 22          | 100.0 | 4         | 100.0 | -            | - | -       | - | 18         | 100.0 | 37     | 100.0 | 397 | 100.0 |



# 7

##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

1. 연도별 신고접수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4. 연도별 학대행위자
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7.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8.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9.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
10.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



## 제7장

##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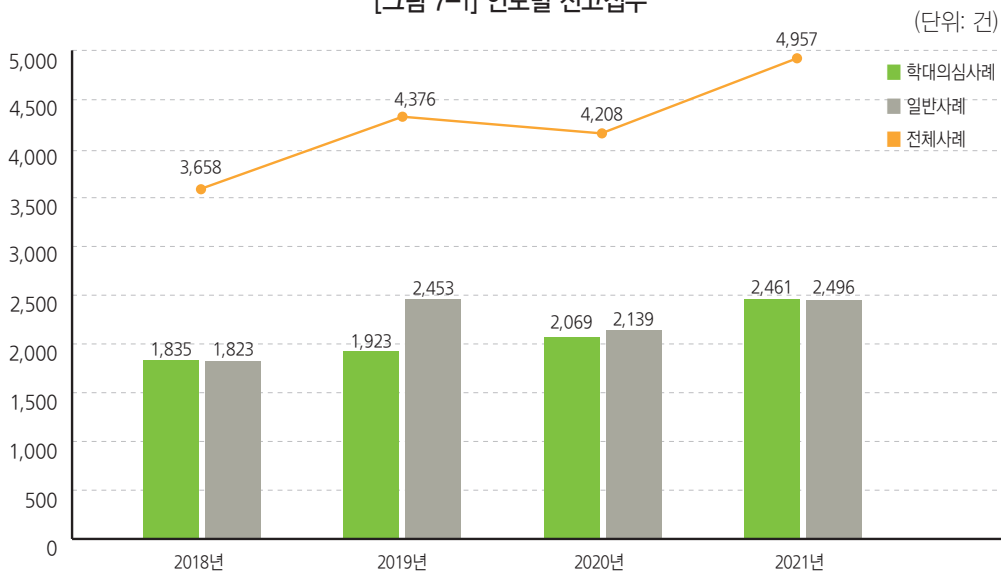
본 장은 지난 4개년의 장애인학대 현황 지표 중 주요 항목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 1. 연도별 신고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1월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고, 그해 하반기에 17개 시·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신고 및 대응, 피해자 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1년 전체신고 건수는 35.5%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단위: 건, %)

| 구분    | 학대의심사례 |      | 증감율  | 일반사례  |      | 증감율   | 계     |       | 증감율  |
|-------|--------|------|------|-------|------|-------|-------|-------|------|
| 2018년 | 1,835  | 50.2 | —    | 1,823 | 49.8 | —     | 3,658 | 100.0 | —    |
| 2019년 | 1,923  | 43.9 | 4.8  | 2,453 | 56.1 | 34.6  | 4,376 | 100.0 | 19.6 |
| 2020년 | 2,069  | 49.2 | 7.6  | 2,139 | 50.8 | ▲12.8 | 4,208 | 100.0 | ▲3.8 |
| 2021년 | 2,461  | 49.6 | 18.9 | 2,496 | 50.4 | 16.7  | 4,957 | 100.0 | 17.8 |

##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신고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19년을 제외하고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018년을 제외하고 매해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2018년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7-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 구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신<br>고<br>의<br>무<br>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421   | 22.9 | 308   | 16.0 | 185   | 8.9  | 195   | 7.9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253   | 13.8 | 371   | 19.3 | 329   | 15.9 | 359   | 14.6 |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 —     | —    | —     | —    | —     | —    | 3     | 0.1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40    | 2.2  | 35    | 1.8  | 57    | 2.8  | 85    | 3.5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7     | 0.4  | 11    | 0.6  | 13    | 0.6  | 7     | 0.3  |
|                       | 의료기사                    | —     | —    | 1     | 0.1  | 1     | 0.0  | —     | —    |
|                       |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     | —    |
|                       | 구급대의 대원                 | —     | —    | —     | —    | 1     | 0.0  | —     |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4     | 0.2  | 3     | 0.2  | 9     | 0.4  | 6     | 0.2  |
|                       | 보육교직원                   | —     | —    | 2     | 0.1  | 4     | 0.2  | 3     | 0.1  |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1     | 0.1  | 1     | 0.1  | —     | —    | 1     | 0.0  |
|                       | 초·중·고 교직원 등             | 33    | 1.8  | 41    | 2.1  | 69    | 3.3  | 57    | 2.3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1     | 0.1  |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19    | 1.0  | 35    | 1.8  | 30    | 1.4  | 30    | 1.2  |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1     | 0.1  | 3     | 0.2  | —     | —    | 1     | 0.0  |
|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12    | 0.7  | 27    | 1.4  | 21    | 1.0  | 15    | 0.6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1     | 0.1  | 4     | 0.2  | —     |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2     | 0.1  | —     | —    |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2     | 0.1  | —     | —    | —     | —    | 5     | 0.2  |

| 구분       |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신고 의무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4     | 0.2   | 6     | 0.3   | 2     | 0.1   | 1     | 0.0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1     | 0.0   | 1     | 0.0   |
|          | 장기요양요원          |                 | 4     | 0.2   | 9     | 0.5   | 4     | 0.2   | 2     | 0.1   |
|          | 소계              |                 | 802   | 43.7  | 858   | 44.6  | 728   | 35.2  | 771   | 31.3  |
| 비 신고 의무자 | 본인              |                 | 194   | 10.6  | 162   | 8.4   | 274   | 13.2  | 325   | 13.2  |
|          | 가족 및 친인척        | 배우자             | 248   | 13.5  | 247   | 12.8  | 9     | 0.4   | 7     | 0.3   |
|          |                 | 부모              |       |       |       |       | 26    | 1.3   | 144   | 5.9   |
|          |                 | 자녀              |       |       |       |       | 97    | 4.7   | 25    | 1.0   |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       |       | 63    | 3.0   | 71    | 2.9   |
|          |                 | 그 외 친척          |       |       |       |       | 43    | 2.1   | 53    | 2.2   |
|          | 유관 기관 종사자       | 일반공무원           | 408   | 22.2  | 379   | 19.7  | 50    | 2.4   | 108   | 4.4   |
|          |                 | 경찰공무원           |       |       |       |       | 141   | 6.8   | 248   | 10.1  |
|          |                 | 공공기관 종사자        |       |       |       |       | 20    | 1.0   | 11    | 0.4   |
|          |                 | 교육기관 종사자        |       |       |       |       | 16    | 0.8   | 8     | 0.3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 6     | 0.3   | 3     | 0.1   |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       |       |       | 294   | 14.2  | 316   | 12.8  |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       |       | 16    | 0.8   | 10    | 0.4   |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36    | 1.7   | 22    | 0.9   |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       |       | 50    | 2.4   | 57    | 2.3   |
|          | 타인              |                 | 176   | 9.6   | 273   | 14.2  | 192   | 9.3   | 256   | 10.4  |
|          | 파악 안 됨          |                 | 7     | 0.4   | 4     | 0.2   | 8     | 0.4   | 26    | 1.1   |
|          | 소계              |                 | 1,033 | 56.3  | 1,065 | 55.4  | 1,341 | 64.8  | 1,690 | 68.7  |
|          | 계               |                 | 1,835 | 100.0 | 1,923 | 100.0 | 2,069 | 100.0 | 2,461 | 100.0 |



###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학대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가 피해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피해자는 평균 5.9%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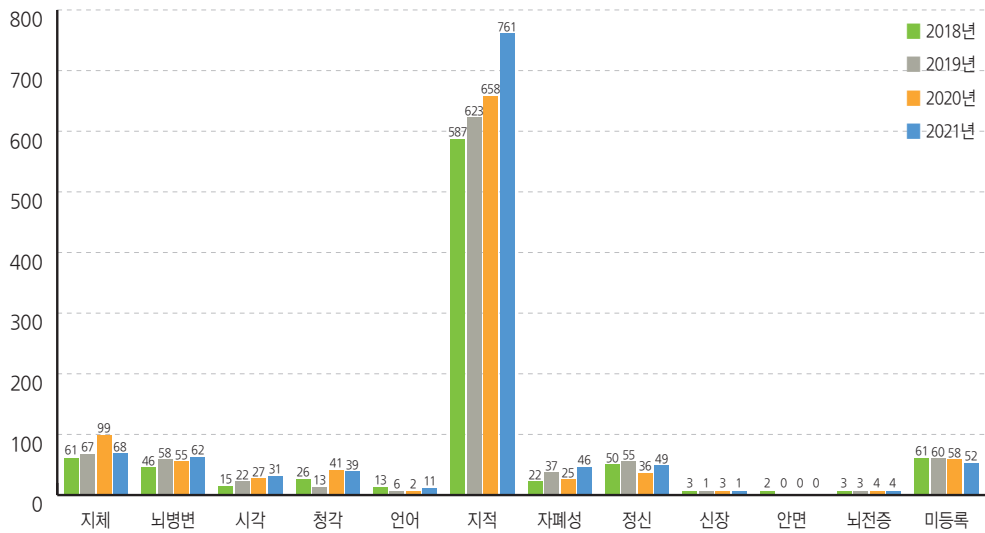
[표 7-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 장애유형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지체장애    | 61    | 6.9   | 67    | 7.1   | 99    | 9.8   | 68    | 6.0   |
| 뇌병변장애   | 46    | 5.2   | 58    | 6.1   | 55    | 5.5   | 62    | 5.5   |
| 시각장애    | 15    | 1.7   | 22    | 2.3   | 27    | 2.7   | 31    | 2.8   |
| 청각장애    | 26    | 2.9   | 13    | 1.4   | 41    | 4.1   | 39    | 3.5   |
| 언어장애    | 13    | 1.5   | 6     | 0.6   | 2     | 0.2   | 11    | 1.0   |
| 지적장애    | 587   | 66.0  | 623   | 65.9  | 658   | 65.3  | 761   | 67.7  |
| 자폐성장애   | 22    | 2.5   | 37    | 3.9   | 25    | 2.5   | 46    | 4.1   |
| 정신장애    | 50    | 5.6   | 55    | 5.8   | 36    | 3.6   | 49    | 4.4   |
| 신장장애    | 3     | 0.3   | 1     | 0.1   | 3     | 0.3   | 1     | 0.1   |
|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 —     |
| 안면장애    | 2     | 0.2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
| 뇌전증장애   | 3     | 0.3   | 3     | 0.3   | 4     | 0.4   | 4     | 0.4   |
| 미등록     | 61    | 6.9   | 60    | 6.3   | 58    | 5.8   | 52    | 4.6   |
| 계       | 889   | 100.0 | 945   | 100.0 | 1,008 | 100.0 | 1,124 | 100.0 |

[그림 7-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4. 연도별 학대행위자

학대피해 장애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 중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50.2% 증가하였다. 타인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종사자에 의한 장애인학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학대행위자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3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에 의한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152.7% 증가하여 학대행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보육 및 교육, 복지서비스 등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책임이 커지면서 부모 및 배우자 등에 의한 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7-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 관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가족 및 친인척 | 배우자           | 52    | 5.8  | 40    | 4.2  | 63    | 6.3  | 78    | 6.9  |
|          | 부             | 115   | 12.9 | 113   | 12.0 | 90    | 8.9  | 134   | 11.9 |
|          | 모             |       |      |       |      | 66    | 6.5  | 70    | 6.2  |
|          | 조부모           | 7     | 0.8  | 4     | 0.4  | 3     | 0.3  | 7     | 0.6  |
|          | 자녀            | 13    | 1.5  | 13    | 1.4  | 23    | 2.3  | 22    | 2.0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53    | 6.0  | 42    | 4.4  | 54    | 5.4  | 50    | 4.4  |
|          | 그 외 친척        | 31    | 3.5  | 41    | 4.3  | 32    | 3.2  | 46    | 4.1  |
|          | 소계            | 271   | 30.5 | 253   | 26.8 | 331   | 32.8 | 407   | 36.2 |
| 타인       | 동거인           | 26    | 2.9  | 44    | 4.7  | 49    | 4.9  | 69    | 6.1  |
|          | 이웃            | 45    | 5.1  | 36    | 3.8  | 38    | 3.8  | 29    | 2.6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93    | 10.5 | 173   | 18.3 | 203   | 20.1 | 235   | 20.9 |
|          | 고용주           | 58    | 6.5  | 48    | 5.1  | 62    | 6.2  | 33    | 2.9  |
|          | 모르는 사람        | 42    | 4.7  | 64    | 6.8  | 68    | 6.7  | 66    | 5.9  |
|          | 소계            | 264   | 29.7 | 365   | 38.6 | 420   | 41.7 | 432   | 38.4 |

| 관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신고<br>의무자인<br>기관<br>종사자         | 장애인거주시설                   | 205   | 23.1  | 198   | 21.0  | 157   | 15.6  | 137   | 12.2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74    | 8.3   | 69    | 7.3   | 17    | 1.7   | 15    | 1.3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       | 6     | 0.6   | 58    | 5.2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       | —     | —     | 1     | 0.1   |
|                                 | 그 외 사회복지시설                | —     | —     | —     | —     | 15    | 1.5   | 5     | 0.4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br>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70    | 7.9   | 54    | 5.7   | 17    | 1.7   | 17    | 1.5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9     | 0.9   | 1     | 0.1   |
|                                 | 보육교직원                     |       |       |       |       | 2     | 0.2   | 5     | 0.4   |
|                                 | 초·중·고 교직원 등               |       |       |       |       | 13    | 1.3   | 13    | 1.2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       | —     | —     | 1     | 0.1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       |       |       |       | —     | —     | 1     | 0.1   |
|                                 | 장기요양요원                    |       |       |       |       | 1     | 0.1   | 4     | 0.4   |
|                                 | 소계                        |       |       |       |       | 237   | 23.5  | 258   | 23.0  |
| 신고<br>의무자가<br>아닌<br>유관기관<br>종사자 | 경찰공무원                     |       |       |       |       | 1     | 0.1   | —     | —     |
|                                 | 교육기관 종사자                  |       |       |       |       | 11    | 1.1   | 2     | 0.2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 1     | 0.1   | 1     | 0.1   |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       |       |       | 1     | 0.1   | 12    | 1.1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2     | 0.2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1     | 0.1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3     | 0.3   |
|                                 | 소계                        | 349   | 39.3  | 321   | 34.0  | 14    | 1.4   | 21    | 1.9   |
| 본인                              |                           | —     | —     | —     | —     | 2     | 0.2   | 1     | 0.1   |
| 파악 안 됨                          |                           | 5     | 0.6   | 6     | 0.6   | 4     | 0.4   | 5     | 0.4   |
| 계                               |                           | 889   | 100.0 | 945   | 100.0 | 1,008 | 100.0 | 1,124 | 100.0 |

## 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던 교육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건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표 7-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 발생장소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피해장애인 거주지   |             | 311   | 35.0  | 310   | 32.8  | 394   | 39.1  | 462   | 41.1  |
| 학대행위자 거주지   |             | 70    | 7.9   | 79    | 8.4   | 93    | 9.2   | 107   | 9.5   |
| 기타 거주지      |             | —     | —     | —     | —     | 9     | 0.9   | 23    | 2.0   |
| 직장(일하는 곳)   |             | 109   | 12.3  | 76    | 8.0   | 99    | 9.8   | 58    | 5.2   |
| 교육기관        |             | 38    | 4.3   | 41    | 4.3   | 30    | 3.0   | 25    | 2.2   |
| 일반 의료기관     |             | 21    | 2.4   | 30    | 3.2   | 4     | 0.4   | 6     | 0.5   |
| 정신 의료기관     |             |       |       |       |       | 9     | 0.9   | 4     | 0.4   |
| 장애인<br>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195   | 21.9  | 204   | 21.6  | 150   | 14.9  | 143   | 12.7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50    | 5.6   | 73    | 7.7   | 19    | 1.9   | 16    | 1.4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       | 7     | 0.7   | 62    | 5.5   |
|             | 소계          |       | 245   | 27.6  | 277   | 29.3  | 176   | 17.5  | 221   |
| 보호시설(쉼터)    |             | 30    | 3.4   | 22    | 2.3   | 1     | 0.1   | 2     | 0.2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       |       |       | 20    | 2.0   | 5     | 0.4   |
| 정신요양시설      |             |       |       |       |       | 2     | 0.2   | 1     | 0.1   |
| 아동관련시설      |             |       |       |       |       | 1     | 0.1   | 11    | 1.0   |
| 노인관련시설      |             |       |       |       |       | 4     | 0.4   | 5     | 0.4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       |       |       | 2     | 0.2   | 8     | 0.7   |
| 종교시설        |             | 7     | 0.8   | 11    | 1.2   | 11    | 1.1   | 3     | 0.3   |
| 미신고시설       |             | —     | —     | 18    | 1.9   | 22    | 2.2   | 28    | 2.5   |
| 온라인         |             | —     | —     | —     | —     | 5     | 0.5   | 15    | 1.3   |
| 상업시설        |             | —     | —     | 51    | 5.4   | 61    | 6.1   | 56    | 5.0   |
| 기타          |             | 53    | 6.0   | 18    | 1.9   | 56    | 5.6   | 83    | 7.4   |
| 파악 안 됨      |             | 5     | 0.6   | 12    | 1.3   | 9     | 0.9   | 1     | 0.1   |
| 계           |             | 889   | 100.0 | 945   | 100.0 | 1,008 | 100.0 | 1,124 | 100.0 |

## 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 가.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 학대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유기의 경우 2019년 이후 발생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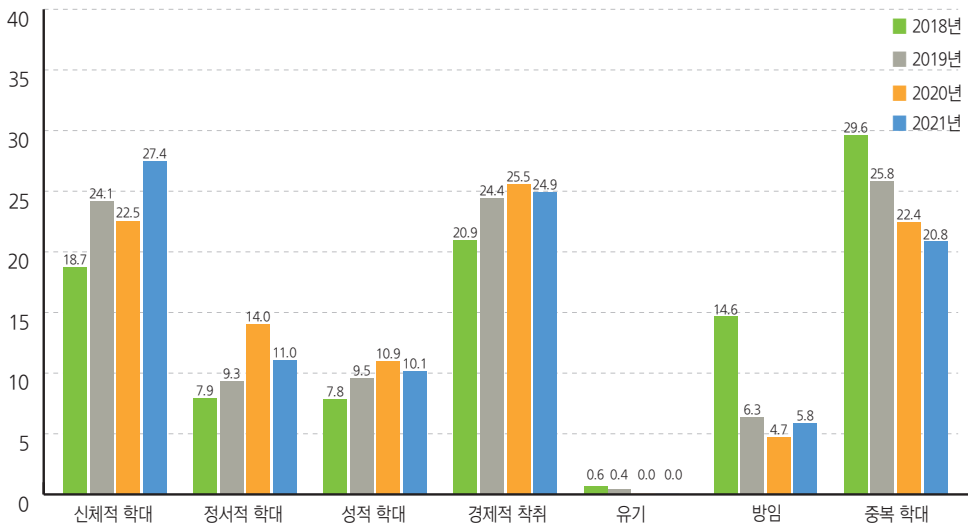
[표 7-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 학대유형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신체적 학대 | 166   | 18.7  | 228   | 24.1  | 227   | 22.5  | 308   | 27.4  |
| 정서적 학대 | 70    | 7.9   | 88    | 9.3   | 141   | 14.0  | 124   | 11.0  |
| 성적 학대  | 69    | 7.8   | 90    | 9.5   | 110   | 10.9  | 113   | 10.1  |
| 경제적 착취 | 186   | 20.9  | 231   | 24.4  | 257   | 25.5  | 280   | 24.9  |
| 유기     | 5     | 0.6   | 4     | 0.4   | —     | —     | —     | —     |
| 방임     | 130   | 14.6  | 60    | 6.3   | 47    | 4.7   | 65    | 5.8   |
| 중복 학대  | 263   | 29.6  | 244   | 25.8  | 226   | 22.4  | 234   | 20.8  |
| 계      | 889   | 100.0 | 945   | 100.0 | 1,008 | 100.0 | 1,124 | 100.0 |

[그림 7-3]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 나.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한 학대유형과 비교하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 착취와 성적 학대는 일정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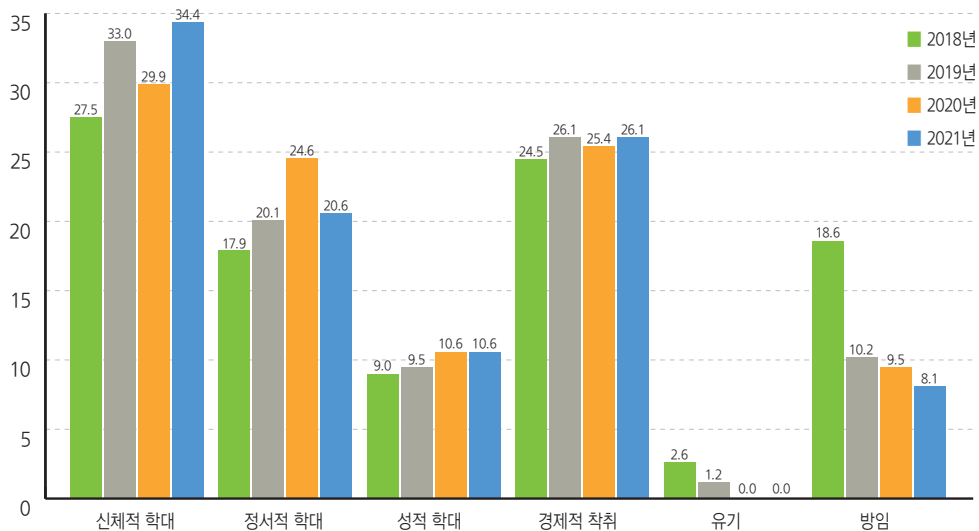
[표 7-7]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 학대유형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신체적 학대 | 339   | 27.5  | 415   | 33.0  | 378   | 29.9  | 482   | 34.4  |
| 정서적 학대 | 221   | 17.9  | 253   | 20.1  | 311   | 24.6  | 289   | 20.6  |
| 성적 학대  | 111   | 9.0   | 119   | 9.5   | 134   | 10.6  | 149   | 10.6  |
| 경제적 착취 | 302   | 24.5  | 328   | 26.1  | 321   | 25.4  | 366   | 26.1  |
| 유기     | 32    | 2.6   | 15    | 1.2   | —     | —     | —     | —     |
| 방임     | 229   | 18.6  | 128   | 10.2  | 120   | 9.5   | 114   | 8.1   |
| 계      | 1,234 | 100.0 | 1,258 | 100.0 | 1,264 | 100.0 | 1,400 | 100.0 |

[그림 7-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



## 7.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가.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발달장애인 학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학대 고 위험집단이다.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구에서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발달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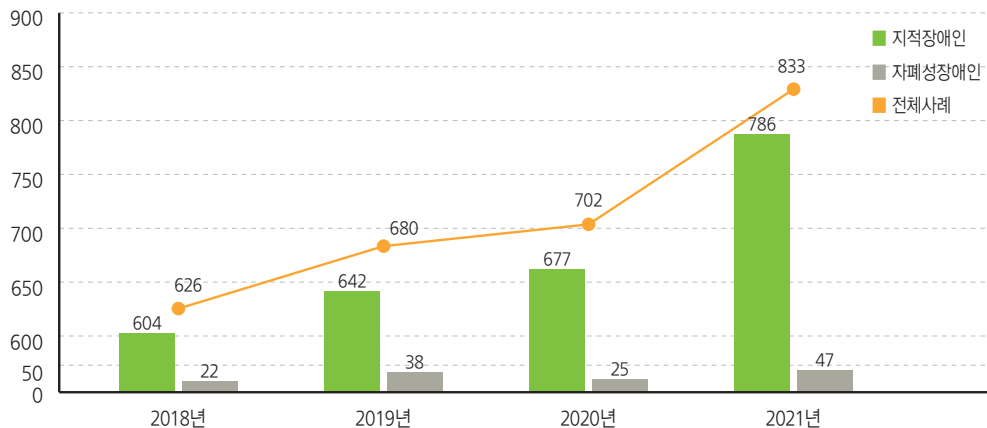
[표 7-8]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단위: 건, %)

| 구분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계   | 증감율  |
|-------|-------|--------|-----|------|
| 2018년 | 604   | 22     | 626 | -    |
| 2019년 | 642   | 38     | 680 | 8.6  |
| 2020년 | 677   | 25     | 702 | 3.2  |
| 2021년 | 786   | 47     | 833 | 18.7 |

[그림 7-5]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단위: 건)





## 나.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은 2018년 중복 학대, 2019년 신체적 학대, 2020년 경제적 착취, 2021년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는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과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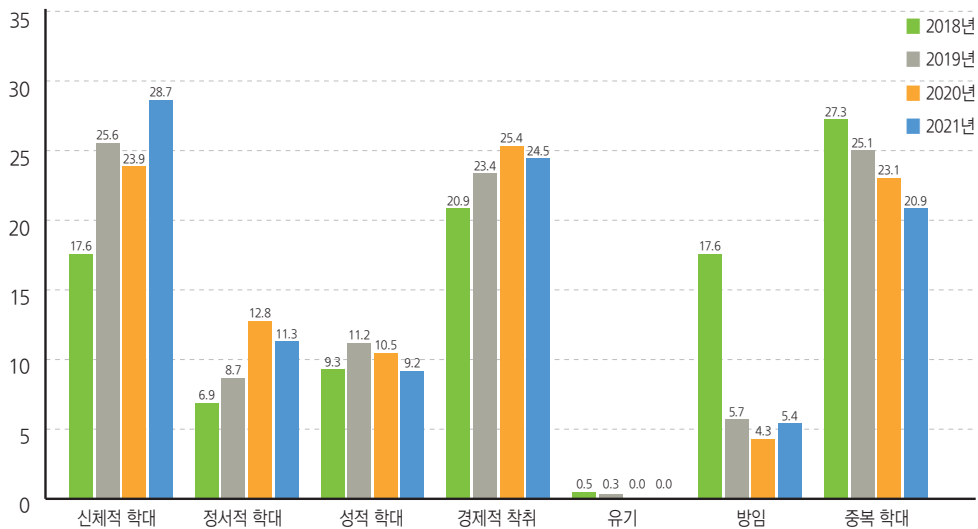
[표 7-9]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중복 학대 |      | 계   |       |
|-------|--------|------|--------|------|-------|------|--------|------|----|-----|-----|------|-------|------|-----|-------|
| 2018년 | 110    | 17.6 | 43     | 6.9  | 58    | 9.3  | 131    | 20.9 | 3  | 0.5 | 110 | 17.6 | 171   | 27.3 | 626 | 100.0 |
| 2019년 | 174    | 25.6 | 59     | 8.7  | 76    | 11.2 | 159    | 23.4 | 2  | 0.3 | 39  | 5.7  | 171   | 25.1 | 680 | 100.0 |
| 2020년 | 168    | 23.9 | 90     | 12.8 | 74    | 10.5 | 178    | 25.4 | —  | —   | 30  | 4.3  | 162   | 23.1 | 702 | 100.0 |
| 2021년 | 239    | 28.7 | 94     | 11.3 | 77    | 9.2  | 204    | 24.5 | —  | —   | 45  | 5.4  | 174   | 20.9 | 833 | 100.0 |

[그림 7-6]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 8.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 가.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현황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2020년부터 집계했으며 2021년은 전년도보다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20년       | 2021년       |
|------------------|-------------|-------------|
| 장애아동 학대사례 건수     | 133         | 166         |
|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대비 비율 | 13.2(1,008) | 14.8(1,124) |
| 증감율              | -           | 24.8        |

### 나.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장애아동 학대유형은 2년 연속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착취와 유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 7-11]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중복 학대 |      | 계   |       |
|-------|--------|------|--------|------|-------|------|--------|---|----|---|----|------|-------|------|-----|-------|
| 2020년 | 40     | 30.1 | 32     | 24.1 | 21    | 15.8 | -      | - | -  | - | 20 | 15.0 | 20    | 15.0 | 133 | 100.0 |
| 2021년 | 73     | 44.0 | 23     | 13.9 | 20    | 12.0 | -      | - | -  | - | 13 | 7.8  | 37    | 22.3 | 166 | 100.0 |

## 9.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를 2018~2019년에는 ‘교육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상별 복지시설(노인, 아동, 정신장애인 등)인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미신고시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등 복지시설별로 분류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가.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발생현황

집단이용시설 내 장애인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 19로 교육·복지서비스 기관 등의 이용제한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소폭 상승하였다. 집단이용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12]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발생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교육기관        | 38    | 12.1  | 41    | 11.5  | 30    | 11.2  | 25    | 8.2   |
| 정신 의료기관     | —     | —     | —     | —     | 9     | 3.4   | —     | —     |
| 장애인거주시설     | 195   | 62.3  | 204   | 57.0  | 150   | 56.2  | 143   | 46.7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50    | 16.0  | 73    | 20.4  | 19    | 7.1   | 16    | 5.2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       | 7     | 2.6   | 62    | 20.3  |
| 보호시설(쉼터)    | 30    | 9.6   | 22    | 6.1   | 1     | 0.4   | 2     | 0.7   |
|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       |       |       |       | 20    | 7.5   | 5     | 1.6   |
| 정신요양시설      |       |       |       |       | 2     | 0.7   | 1     | 0.3   |
| 아동관련시설      |       |       |       |       | 1     | 0.4   | 11    | 3.6   |
| 노인관련시설      |       |       |       |       | 4     | 1.5   | 5     | 1.6   |
| 기타 복지관련시설   |       |       |       |       | 2     | 0.7   | 8     | 2.6   |
| 미신고시설       | —     | —     | 18    | 5.0   | 22    | 8.2   | 28    | 9.2   |
| 계           | 313   | 100.0 | 358   | 100.0 | 267   | 100.0 | 306   | 100.0 |

### 나.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유형에서는 중복 학대가 4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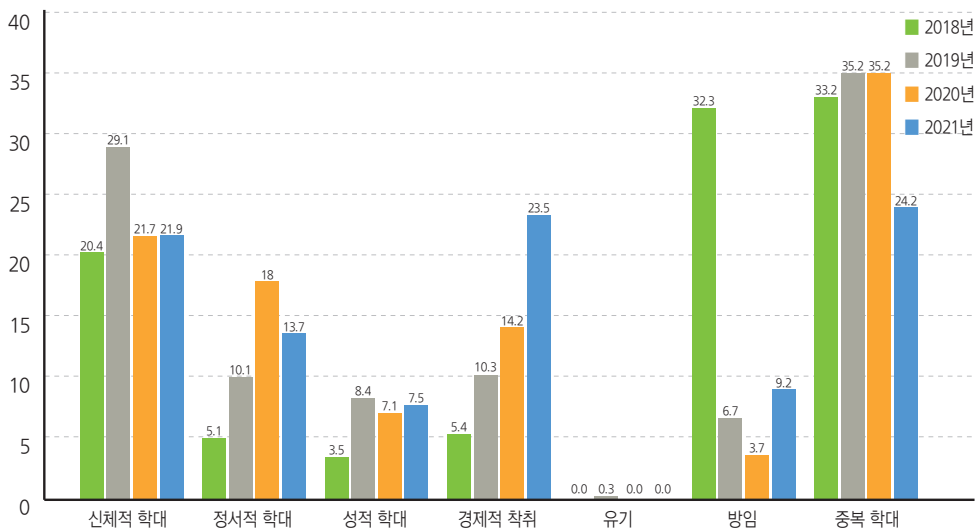
[표 7-13]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 구분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      | 중복 학대 |      | 계   |       |
|-------|--------|------|--------|------|-------|-----|--------|------|----|-----|-----|------|-------|------|-----|-------|
| 2018년 | 64     | 20.4 | 16     | 5.1  | 11    | 3.5 | 17     | 5.4  | —  | —   | 101 | 32.3 | 104   | 33.2 | 313 | 100.0 |
| 2019년 | 104    | 29.1 | 36     | 10.1 | 30    | 8.4 | 37     | 10.3 | 1  | 0.3 | 24  | 6.7  | 126   | 35.2 | 358 | 100.0 |
| 2020년 | 58     | 21.7 | 48     | 18.0 | 19    | 7.1 | 38     | 14.2 | —  | —   | 10  | 3.7  | 94    | 35.2 | 267 | 100.0 |
| 2021년 | 67     | 21.9 | 42     | 13.7 | 23    | 7.5 | 72     | 23.5 | —  | —   | 28  | 9.2  | 74    | 24.2 | 306 | 100.0 |

[그림 7-7]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 10.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

노동력 착취사례는 2019년부터 집계했으며 2021년은 전년도보다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연도별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노동력 착취사례 건수      | 94       | 88         | 114         |
|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대비 비율 | 9.9(945) | 8.7(1,008) | 10.1(1,124) |
| 증감율              | —        | ▲6.4       | 29.5        |



# 부록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목적으로 2017. 1. 1.부터 설치·운영되는 법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사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구분          | 주요 업무                                                                                                                                                                                                                                                                                                                                                                                            |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li> <li>·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li> <li>·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li> <li>·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li> </ul> |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li> <li>·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li> <li>·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li> <li>·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li> <li>·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li> </ul>                                                                |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2022. 8. 31. 기준, 19개)

| 기관명           | 전화           | 주소                                                     |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2-6951-1790 |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br>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
|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2-3453-9527 | (06278)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br>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1-715-8295 |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
|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3-716-8295 | (41242)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                  |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2-425-0900 |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층                   |
|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62-716-1633 | (61960)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
|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2-631-5667 | (34541)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                         |
|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2-260-8295 | (44669)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                        |
|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4-905-8295 | (30150) 세종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                     |
|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1-287-1134 | (16639)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br>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 |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1-851-1007 | (11813)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
|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33-264-8296 | (24390)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                        |
|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3-287-8295 | (28797)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br>라데팡스타워 303호   |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1-551-8295 | (311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br>천안법조플라자 301호           |
|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63-227-8295 |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1-10,<br>경희궁빌딩 5층             |
|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61-285-8298 | (58615)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                        |
|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4-282-8295 | (37662)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
|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5-603-8295 |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                  |
|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64-900-9695 | (63217) 제주 제주시 청굴로5길 21, 1층                            |



##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                                                                   |
|------|-------------------------------------------------------------------|
| 인쇄일  | 2022년 9월                                                          |
| 발행일  | 2022년 9월                                                          |
| 발행인  | 보건복지부 장관                                                          |
| 편집인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은종균                                                |
| 편집위원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br>김정혜, 이미현, 전화준                                      |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br>(044-202-3312)<br>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br>(02-6951-1790) |
| 인쇄   | 블루애드(02-6082-7076)                                                |